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Enhancing the Community Social Services Innovation Project based on the Analysis of US Block Grant Programs

박세경 강혜규 최현수 최은영 김은정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 계약한(2008. 9. 3) "포괄보조금 세부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08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 용 하

목 차

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제2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와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 고찰	18
제1절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18
1. 보조금 유형별 특성 ···································	
제2절 미국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의 특성	34
1. 지방재정과 사회서비스 재정의 일반적 특성 ···································	
제3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	47
제1절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47
1. 연방정부의 관리운영 개요	47
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포괄보조금	52
제2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74
1. North Carolina 주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75
2.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85

제4장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편의 과제 ···································	.09
제1절 한국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쟁점1	09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구조1	10
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변화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1:	24
제2절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1	28
참고문헌1	.35
부록1	40
[부록 1] DHHS의 50대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 목록	
[부록 2]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의 결산보고 작성 지침 SSBG Instruction for Reporting Form	
[부록 3]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적용 서비스 유형의 사업정의 SSBG Uniform Definition of Services	
[부록 4] North Carolina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계약서 Social Service Block Grant Contract	
[부록 5] North Carolina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회계감사 자료수집 양식 Form SF-SAC: Data Collection Form for Reporting on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Fulton County Human Service Grant Application Diskette	
[부록 7]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분기별 성과보고 양식 Fulton County Human Service Department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orm	
[부록 8]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서 평가도구 Fulton County: Grant Proposal Scoring Tool	

표목차

<표 1- 1>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분담 현황 10
<표 2- 1> 미국 연방보조금(grants-in-aid) 유형별 특성24
<표 2-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현황(2005/06) ······· 36
<표 2- 4> 주정부 자체예산의 세입구조(2006)···································
<표 2- 5> 미국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증가율(1985~1995) ······· 39
<표 3- 1> 연방정부 보조금 전달의 기본구조····································
<표 3- 2> 연방정부-주정부 간 포괄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목록50
<표 3- 3> SSBG, TANF 이전금 포함 전체 SSBG 사업 지출규모의 변동추이 54
<표 3- 4>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지원 가능 사회서비스 유형55
<표 3- 5> 사회서비스 유형별 SSBG 지출 구성(2006)55
<표 3- 6> PSSF의 의무보조금, 임의재량보조금 및 사전 승인된 연도별 예산규모 72
<표 3- 7> NC주정부에 할당된 연방 포괄보조금 규모 및 구성82
<표 3- 8> 수급자격별 SSBG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83
<표 3- 9> 2007년 Georgia주 및 미국 보조금 종류 및 현황86
<표 3-10> 연방보조금 대비 GA주정부의 SSBG, CCBG, CSBG, CCDBG 할당규모 ···· 88
<표 3-11> 사회서비스보조금 프로그램(Human Service Grant Program) 지원 사업영역 … 97
<표 3-12>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신청시 제출 서류목록99
<표 3-13>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신청디스켓 구성100
<표 3-14>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집행 일정표103
<표 3-15>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분기별 보고서 확인사항 106
<표 3-16> 사회서비스보조금(HSG) 6개 사업영역별 성과평가 지표 107

<亞 4- 1>	중앙정부와 지방예산의 변화 추이
<班 4- 2>	세입재원별·연도별 지방예산 규모(2008) ······ 111
<亞 4- 3>	지방교부세 내역 112
<亞 4- 4>	지방세출예산의 세입구조 현황(2008) 113
<亞 4- 5>	연도별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 추이('03~'07) 113
<班 4- 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지자체별 분포114
<亞 4- 7>	지방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재원 구성(2008) 115
<班 4- 8>	보건복지예산의 증가율 및 정부예산대비 비중 추이116
<亞 4- 9>	최근 5년간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118
<班 4-10>	사회서비스 예산 현황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
<亞 4-1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04~'06) 121
<班 4-12>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원천 125
<班 4-13>	주요 사회복지급여의 지방비 부담 현황126

그림목차

[그림	2-1]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공 사회복지지출 분담 추이
[그림	2-2]	연방보조금 중 포괄보조금의 비중변화(1966~2005)41
[그림	3-1]	연방보건복지부(DHHS)의 의무보조금과 임의재량 보조금 규모 비교 ··· 50
[그림	3-2]	주정부의 SSBG 관련 보고의무(Reporting Duty) 55
[그림	3-3]	SSBG보고양식(OMB No.0970-0234 Post-expenditure Reporting Form) ········ 56
[그림	3-4]	노스캐롤라이나 연령대별 인구 추계 2000-203075
[그림	3-5]	빈곤선 이하 인구가 많은 NC 지역분포
[그림	3-6]	NC주정부 보건복지부(NC-DHHS) 조직도79
[그림	3-7]	Fulton County 정부조직도 ·····9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기존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급체계는 중앙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 방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일률적 예 산배분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수요에 부합되는 유연한 예 산집행이 매우 제한된 구조로 고착되어 있음
 - 한편, 복지국가(welfare state)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복지혼합(welfare mix)에 기초하고, 지방화와 분권화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국고 보조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으로 이양되고,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도입되었음
 - 보조금 방식을 이용한 중앙집권적 사회복지 공급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방의 사회복지 기능과 복지관련 재원마 련의 책임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교부세제도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이 가운데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

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간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경감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재정지원금은 지급재정의 용도제한 여부에 따라 조건부보조금(specific grants)과 무조건보조금(general grants)으로 구분
- ※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여부에 따라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s, percentage grants)과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s, lump-sum grants)로 구분
-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정부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2005년도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당시의 재원은 내국세 수입의 0.83%로 책정되었음
- □ 2005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의 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복지 재정부담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논란과함께,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서비스 공급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다양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 2004년 7월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르면 당시 보건복지부(현 보건 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고보조로 진행되던 138개 사업 가운데 48.5%를 차지 하는 67개 사업(금액기준 5,959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문 재정증가율을 감당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재원의 규모를 2005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 재정지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 부문 지방정부 이양재원의 규모와 재정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적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 사업을 중심으로 이양재원의 규모, 이양사업의 유형분류 및 수요산정 방식 및 재원교부 체계의 개편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11%p 증가시켜 0.94%로 상향조정하였음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통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 등의 개선노력을 전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규모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이양 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급증하는 복지재정지출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표 1-1>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분담 현황

(단위: 억원, %)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사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분권교부세 (%)	6,107	5,531	6,955	7,734
七七里十小 (%)	(47.2)	(32.9)	(36.2)	(34.4)
지 방 비 (%)	6,844	11,289	12,246	14,747
ハる FI (%)	(52.8)	(67.1)	(63.8)	(65.6)
전 체	12,951	16,820	19,201	22,481

주: 괄호() 안은 전체 사회복지 부문 지방이양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감사원, 2008.

-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분권교부세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평균 증가율은 8.6%와 비교하여, 지방이양 사업의 세출증가율은 평균 17.2%에 이르고 특히, 67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세출 증가율은 20.5%에 이르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경비 분담률은 이양 전과 비교하여 2004년47.2%에서 2007년에는 34.4%로 12.8%p 감소한 반면,
- 지방비의 부담률은 2004년 52.9%에서 65.6%로 12.7%p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분권화, 지방화의 성패는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 복지정책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활성화 정책으로 구체화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좌우됨
 -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화가 보다 탄력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분담 수준이 관건이 됨
 -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수준, 기존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격차 및 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한 인식도 등에 따라 지역별 서비스 제공수준의 현격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의 한계를 수용하고, '09년도에 일 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 분권교부세제도의 범위 안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역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동 분야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요하게 부각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복지재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요구됨
 -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적극적 참여가 그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이 국고보조금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어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 '07년부터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지역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시행 중이며, 동 사업의 재원은 지역사회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한 중앙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 프로그램 단위로 예 산을 배분하고 있음
- □ 국민의 서비스 욕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 특성 및 내용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부족 등으로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발생할 수 있음(권오성 외, 2005)
- 원칙적으로 지방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은 해당 정책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지방 고유사업인지 또는 국가 및 상위정부의 위임사무의 여부, 그리고 정책효과의 편익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가 또는 기타 지역으로 파급되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포괄보조금제
 도는 보조금 용도가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조건부보조금
 으로 구분함
- 그러나 지정용도의 범위가 대체로 포괄적이고 용도의 제한 또한 엄격하게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조건보조금의 성격을 가짐
- 특정 정책영역이나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포괄보조금은 지방정부에 대한 배분 공식이 임의적이고, 실질적으로 무조건 보조금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효율성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사회서비스 부문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갖고 자체재량과 책임적 사업운용을 기대할 수 있음(이재원 외, 2003)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와 욕구가 높은 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가능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런 중앙-지방간의 사회서비스 관련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의 틀을 분권화 추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통해 사회복지의 실천,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소규모 보조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성 과를 제고하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야기되는 재정압박을 경감시 킬 수 있을 것임
-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권한과 그 운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도록 설계된 지방분권화 전략은 사회서비스는 물론 전체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 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집행해왔던 일반적 관행에 비 추어보면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수요와 지방정부의 부담능력 편차를 고려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 며, 지방정부의 재정확보 및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그리고 기존의 복지인 프라 격차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음
 - 아울러 분권지향의 정부개혁 로드맵에 근거하여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간영역의 확대, 그리고 공공부문내 경쟁촉진과 성과중심의 지향은 재정운용 체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보건복지 정책관련 보조금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등 3단계 구성으로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실질적 문제인식뿐 만 아니라
 -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서 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재원의 확보의 문제가 선 결되어야 과제라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할 것임
 - 보조금 지원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의 심화되는 한편, 보조금 교부결정 방법 등의 경직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

획적 재정운영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본 연구가 출발하였음

- 이에 따라 재정분권의 과제로 지방 사회복지사업의 재정분담 부담 해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배 분의 기본 틀을 지방분권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앙정부가 포괄적 기능 및 용도를 제시하여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배분하고, 그 용도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의 선택을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기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함
- 한편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오히려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의 영세적 특성, 개별화 원칙 등을 고려할 때,
-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논의를 심층적으로 전개해볼 필요성은 자명한 것으로 판단됨

2. 연구목적

- □ 앞서 논의된 본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부문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포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 주요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및 운영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과정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최근의 정책여건을 감안한 동향을 파악하도록 함
 -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포괄보조금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행정자료 및 문헌자료의 심층적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세부사업 지침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셋째,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적용 사례에 대한 입체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을 견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주요 연구내용
- □ 전술된 연구목적으로부터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음
 - 첫째,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 정책동향 진단
 - 포괄보조금제도의 약사(略史)를 통한 제도도입의 배경과 법적근거 고찰
 -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의 특성 파악
 - 사회서비스 부문 재정운영 관련 포괄보조금제도의 영향과 성과 논의
 - 둘째,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포괄보조금제도 현황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s Block Grant
 - 아동발달 포괄보조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 가족안전·안정 포괄보조금: 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Block Grant
 - 요보호가족지원 보조금: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 정부간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및 실제적용 사례 분석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 North Carolina 주정부 및 Fulton County(GA) 사례분석

- 셋째,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의 한국적 함의
- 분권화·지방화를 견지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발전방향 제시

2.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한 사례조사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연구진행 과정에서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음
 - 문헌연구
 -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발전경로 고찰
 - 포괄보조금제도 발전경로의 탐색 및 법적근거 고찰
 - 제도운영의 기반이 되는 정책여건 진단 및 최근 동향 파악
 - 미국 포괄보조금 유형별 제도전반에 대한 이해와 성격규명
 - 사용용도의 제한여부에 따른 제도분석
 -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제도분석
 - 한국 복지재정 분권화를 위한 보조금제도 개편논의의 진행과정 검토
 - 현행 국고보조금제도 및 지방교부세제도와 복지재정의 쟁점파악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행정자료 및 2차 자료의 분석
 - 미국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제도 적용사례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 사회서비스 관련 포괄보조금 운영사례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
 의 역할 범위 등에 관한 사례조사(Case Study)
 - North Carolina 주정부 사례
 -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 사례

- 미국 현지전문가 및 포괄보조금 집행·운영 담당자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학계전문가 및 지방재정 담당 공무원,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관련 의견 수렴

제2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와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 고찰

- □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포괄보조금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 내 사회서비스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특성 바탕으로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부분적 권한이양(partial devolution)의 정책도구로 간주되는 포괄보조 금이 미국 내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과정과 지난 40년간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 포괄보조금제도가 미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갖는 기능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보조금 제도에 관한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 포괄보조금 형성을 둘러싼 약사(略史)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재정과 보조금의 유형, 포괄보조금의 비중과 특성 등을 고찰하고자 함

제1절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이해

1. 보조금 유형별 특성1)

□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공급을 분담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방식인, 정부 간 보조금 유형에 대한 고찰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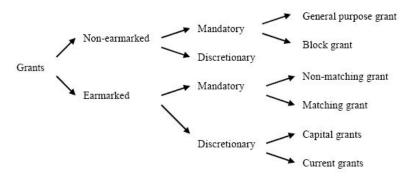
¹⁾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강혜규·김형용·박세경 외, 2007) 중 '제4장 사회서비스 공급과 재정지원 유형(최은영 집 필)'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다.

- 한국의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르면,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 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경비"로 정의되어 있음
- 따라서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하여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 체에 교부하게 되는 것임
- 한편「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 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을 국고보조율 혹은 기준보조율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포괄 권위형(the inclusive-authority model) 관계는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존재하 지 않음
- 대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거의 독립적이며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분리 권위형(the separated-authority model),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중첩 권위형(the overlapping-authority model) 관계 등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중첩 권위형은 정부간의 재정적 상호협조가 강조되고 재정원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조금은 재화의 특성과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고려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간 보조금은 다음의 5가지 목적을 갖고 있음(정병열 2000)
- 지역간 외부성: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역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에 적절

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혹은 부족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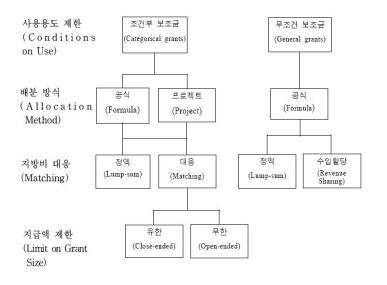
-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인구구조 및 산업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 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
- 이는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을 갖는 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조건 부 보조금 보다는 무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함
-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지방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지방정부 재원 조달능력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재원조달능력이 높은 중앙정부가 재원의 일부 를 지방정부에 이전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중앙정부에서 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공공재가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특정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가능함
-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정지역의 희생이나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보조금을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OECD(2006)와 Fisher(1996)의 분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분류하는 기준은 사용용도의 제한 여부, 보조금 지급방식, 보조금의 지출 목적과 보조 대상 경비의 성격,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시행방식 등에 따라 구분됨
 - 사용용도의 제한 여부에 따른 보조금은 '무조건부' 보조금과 '조건부'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1] OECD(2006)의 보조금 분류



자료: OECD(2006)

[그림 2-2] Fisher(1996)의 보조금 분류



자료: Fisher(1996), 임성일 외(2004)에서 재인용.

- 무조건부 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중 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보조금
- 조건부 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지방정부의 지출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이고, 지급방 식에 따라 다시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세분
-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라서 '정액보조금'과 '정률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액보조금(비대응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지출재원을 조달하느냐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는 보조금
 - 정률보조금(대응 보조금)은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비율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전제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조금의 지급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개방형'과 '폐쇄 형'으로 세분되는데, 개방형보조금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이 증가할수 록 보조금 지급액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폐쇄형보조금은 정해진 비율만큼 지급하되 지급한도가 제한
- 보조금의 지출 목적과 보조 대상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으로 분류하기도 함
 -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할 사업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재원
 -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집행해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와 재정운영의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전달하는 경비
 - 보조금은 국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교부하는 경비

- ※ 한국에서의 국고보조금은 상기된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구별 없이 모 두 국고보조금의 영역 내에서 분류되면서 그 성격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이용한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시행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으로 구분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직접보 조금으로 분류
- 민간 또는 타 공급주체에 지원하여 사업이 수행되도록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간접교부금으로 간주
- 보조금의 사용용도 제한 여부, 지급방식 및 지급액 상한여부 등 3가지 주요 기 준을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무조건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주민(소비 자)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소비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개별 소비재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는데, 무조건부 보조금의 일부가 조세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와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임
- 조건부 정액 보조금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조건부과가 제약이 되느냐 아니 냐에 따라 달라짐
 - 일반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특정 공공재 공급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공공재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함
- 무조건부 보조금처럼 감세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 소비량은 증 가해도 개별 소비재 소비량은 증가하지 않음
- 조건부 정률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해 줌에 따라 주민의 공공재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규모에 대응하여(matched)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늘어나므로 이 경우에 지방정부는 징세노력을 강화할 수 있어서 주민입장에서는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보조금 지급의 목적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간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구매력을 이전시키는 것이라면 무조건부 보조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지원목적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특정 공공재만의 공급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면 조건부 정액보조금(비 대응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정부(state government) 또는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 에 대해 그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괄적 경비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교부하는 재원 중에서 지출의 용도를 지정하여 전달하는 재원을 국고보조금 (grants-in-aid)으로 규정함
 - 미국의 연방보조금(grants-in-aid)은 크게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과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 구분되고, 조건부보조금은 다시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와 포뮬라방식 보조금(formula grants)으로 분류됨(표 2-1 참조)
 - 보조금 집행대상의 선별정도, 대상사업의 포괄 범위와 교부목적의 특수성,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것임

<표 2-1> 미국 연방보조금(grants-in-aid) 유형별 특성

종류	지급대상 선별정도	사업범위 (Program Scope)	지급대상 선정기준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			
사업보조금(project grants)	낮음	특정사업·특정 <u>프로</u> 그램	정책적 판단
포뮬라방식 보조금(formula-type grants)	낮음	특정사업·특정 <u>프로</u> 그램	시행령·시행규칙
포괄보조금(block grants)	중간	광범위	시행령·시행규칙
일반교부금(general revenue sharing)	높음	광범위와 정부기능	시행령·시행규칙

자료: Salamon (2002).

- 조건부 보조금의 경우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에 따르는 필요조건을 부가하여 교부하는데, 세목을 지정하거나 구체적 사업목표량을 지정함
- 반면,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규정하고 보조 금으로 충당되는 세목, 사업 목표량, 지방비 분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함
- 따라서 원칙상 포괄보조금은 조건부보조금 방식에서 초래될 수 있는 중앙집 권화의 우려와 사업의 우선순위 왜곡 등에 따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 안적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2.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법적근거

-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관련 재정분담의 특성을 살피는데 미국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이끌어낸 배경을 우선 살펴보았음
 - 미국은 국가가 성립하고 나서 주를 획정한 것이 아니라, 주가 모여서 연방 국가를 만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남유진 2005),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정부형태인 한국과 상당한 상이성을 지님2)
 - 미국 연방정부 체제(federal system)는 13개 주가 합의하여 연방정부를 창설한 것인 만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 연방헌법 역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각기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³⁾ 주 정부는 독자적인 헌법과 삼권분립체제를 갖추는 완전한 정부

^{2) 2002}년 현재 미국은 총 87,900개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정부와 50개의 주정부를 제외하면 총 87,849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다. 이 중 38,971개가 일반 행정 목적의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는 다시 3,034개의 카운티 정부와 19,431의 시정부 및 16,506의 타운쉽 정부로 구분된다.

³⁾ 수정헌법 제 10조: 헌법이 미합중국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주에 대하여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게 유보된다.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주 정부는 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권한 이외에도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조폐와 조세의 부과·징수, 외교, 통상 규제, 군대양성 및 지원, 우편업무 등은 연방정부가 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규정됨
- 반면, 일반 사회복지와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은 주 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집 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 한편,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에 근거를 둔 정부형태가 아니므로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4) 주 정부의 통제권 하에 있어서 언제든지 설립이나 폐쇄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즉, 지방정부의 존치근거는 주 헌법에 근거하며, 일반적으로 주 헌법에서는 경찰, 소방, 보건 등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설립 및 활동의 근거는 헌장(charter)을 제정하여 구체화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상호 독립성을 지닌 관계인 반면, 주 정부 와 지방정부는 주종관계가 명확한 단일 정부체제로 간주할 수 있음
- 미국의 연방주의는 시기적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왔는데, 이원적 연방주의→협력적 연방주의→우선적 연방주의→신 연방주의 등의 4시기를 거쳤다는 주장에따르면, 각 시기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남유진·함성득 1999, 남유진 2005에서 재인용)
- 이원적 연방주의(dual federalism, 헌법제정~1932년) 시기는 헌법 제정 시부터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 등장까지를 일컫는데,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독자적인 권력과 책임을 지고 있었고, 연방정부가 제한된 기능을 수행했던 반면 주 정부는 고도의 독립성을 유지했음

⁴⁾ 미국 연방헌법에는 시정부(city governments)나 카운티 정부(county governments) 등 지방정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협력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 1932∼1960년) 시기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극도의 재정적 곤란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형성되었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에 정책공조가 급격 히 늘어난 시기로 평가됨
 - 이 시기동안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고,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고령자 부조, 아동 원조, 고용안전 등에까지 연방정부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된 시기였음
 - 특히, 1933년에 입법된 연방긴급지원법(Federal Emergency Relief Act, FERA)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범주적 보조금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음(강혜규 외 2006)
- 우선적 연방주의(cooptive federalism, 1960~1980년) 시기는 연방정부가 종전에 주 정부에 귀속되었던 권한까지 흡수하여 상대적으로 우선적 위치에 섰던 시 기로서, 강력한 연방정부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하위 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매우 컸음
- 신 연방주의(New Federalism, 1980년대 이후) 시기는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함께 시작되었는데 연방정부의 권력을 다시 주 정부로 환원시키는 시기로서,항목별 조건부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제도가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통폐합되는 것으로 관계 변화가 극명히 드러났음
 - 이 시기는 과거와 비교하여 주 정부와 지방정부에 훨씬 의존하는 재정이전 체계를 제시했으며, 연방정부의 지출과 통제 및 규제가 급감한 시기였음
- 이러한 재정상의 변화로, 연방보조금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했 던 비율이 1980년 각각 26%와 17.7%에서 1990년에는 18%(8%p 감소)와 6.4%(11.3% 감소)로 현격히 감소되는 변화가 나타났음
- □ 미국 공공부조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모두 연방보조금 제도에 의해 만들어 졌고, 이 밖에도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른 주요 서비스가 보조금 제공을 통해 공급되었음

- 연방정부로부터 주 또는 지방정부로 현금이 지원된 것은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방보조금이 갖는 사회복지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은 뉴딜시대(New Deal Era)에 와서 비로소 널리 인식되었음(길버트·테렐 2005)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며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는 뉴딜(New Deal)정책을 실시하였음
 -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기회를 늘리고, 경제와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노동자들의 최소 퇴직연금을 보장하고, 주(州)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음
 - 루즈벨트 대통령의 최소 수준의 경제적 보장에 대한 공약은 Social Security Act of 1935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 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공식화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국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장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자 하였던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그의 임기를 이어받은 존슨 대통령은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를 촉진시킴으로써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였음
- 존슨 대통령은 사회적 역량강화 및 경제적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뉴딜정책을 재설계하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을 추진하였고,
- 1964년 의회에 경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 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존슨 대통령이 1964년 의회에 제출한 경제보고서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100여 종류가 넘는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을 새롭게 신설하였음
- 그 결과 주 정부에 대한 연방전부의 지원은 1960년대 초 70억 달러 규모에서 1960년대 말까지 240억 달러로 증가되면서, "위대한 사회(Greaty Society)" 프로 그램은 인력, 프로그램, 재량권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권한을 급격히 확대시켰음

- 1966년에 승인된 Partnership for Health program과 1968년의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s하에서 만들어진 Safe Streets program은 첫 포괄 보조금으로서 민주당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음
- 이후 1972년 재임한 닉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이 갖는 잠재적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연방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사회복지 서비 스 공급의 재조직화를 추진하였음
- 존슨 대통령의 후임자인 보수진영의 닉슨 대통령은 정부역할 확대를 비난하며, the Family Assistance Plan을 통해 사회복지 구조를 재편성하였음
- 닉슨 대통령은 연방-주정부-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 영형태는 부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1961년 취임직후 연방 주의를 재구조화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를 추진하였음
 - 닉슨 행정부에 의해 제안된 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를 통해 현대의 포괄보조금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음
 - 1972년 10월 의회는 the State and Local Fiscal Assistance Act of 1972(Public Law 92-512)인 General Revenue Sharing을 승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닉슨대통령 의 제안을 수용하였음
 - 아울러 현금 지원의 사회서비스를 대상별(노인, 장애인, 빈곤 아동 및 성인 등)로 지원하도록 분리시키고 개개인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1972년까지 주(州)의 사회서비스에 대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1달러에 대해 3달 러를 매치하는 개방형 보조금을 제공, 매년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 금액이 백 만 달러가량씩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이에 대해 닉슨 대통령은 각 주(州)들이 인구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결정된 보 조금을 받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최대 25억 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음

=[참고: 포괄보조금 제도와 닉슨행정부] =

- 연방정부로부터 개별 주정부가 인구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결정된 보조금만을 받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최대 25억 달러로 제한하는 닉슨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한 의회는 the State and Local Fiscal Assistance Act of 1972(Public Law 92-512)인 General Revenue Sharing을 승인하였음
- 특별교부금(Special Revenue Sharing, SRS)과 함께 일반교부금(General Revenue Sharing, GRS) 제도는 포괄보조금의 출현을 이끌어낸 혁명적 개념으로 평가됨
- ** GRS는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전통에서 벗어나 조건없이 주정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음
- **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예산지출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움직임에 따른 것이었음
- 아울러 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의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주정부의 재량권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정책의 계획, 대상자 선정기준의 결정, 서비스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괄보조금 제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포드 행정부(Ford Administration)와 카터 행정부(Carter Administration) 시절 포괄 보조금 정책 내용의 변화가 이어졌는데, 포드 행정부 말기 무렵에 이르렀을 때, 의회는 3가지 커다란 새로운 포괄보조금을 만들어냈음
- 이 중 2가지(지역개발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와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 마지막 포괄보조금제도인 포괄적 취업지원 프로그램(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 program)은 1982년 종료되었으나, 유사한 형태의 직업 훈련 포괄보조금제도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음

- 카터대통령의 재임기간이었던 1980년에는 Social Service and Child Welfare Amendments(Public Law 96-272)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출 상한선을 30억16백만 달러로 증가시켰음
 - 이 법은 아동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별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을 폐지하고, 대신 Title XX of Social Security Act에 근거하여 주(州)의 일반교 부금(General Revenue Sharing)의 일부분인 2억 달러의 조건부 지출 요건 (categorical spending requirement)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 미국 내에서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49년이지만, 정책의 도구로서 도입된 것은 1966년 Partnership for Health Act를 통해서였고,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Omnibus Budget and Reconciliation Act(OBRA)를 기원으로 함
 - ※ 미국 최초의 포괄보조금은 1966년 의회에서 승인된 Partnership for Health Program과 1968년의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s하에서 만들어진 Safe Streets Program임.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연방 사회복지 전체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하였음
 - 레이건 행정부(Reagan Administration)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지방이양 정책을 계승하고, 레이건 포괄보조금 전개를 통해 공공정책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표하였음
 - 1981년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지방이양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였고, 포괄보조금 전개 등을 통해 공공정책 행정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공표함으로써 연방정부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였음
 -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85개의 보조금을 7개의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일부분으로서 의회는 77개의 조건부 보조금(categorical grants)을 9개의 포괄보조금으로 통합시킴

- 또한 레이건 행정부는 닉슨 행정부에 의해 촉진된 The Title XX General
 Revenue Social Services program과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Social Service Block Grant로 대체하였음
- OBRA법에 근거한 포괄보조금은 연방정부 지원의 약 17%를 구성하였으며, 닉슨 행정부의 포괄보조금과 달리, 레이건 행정부의 포괄보조금은 기존의 프 로그램보다 25퍼센트 가량 적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음
- 특히, OBRA법이 1981년 7월에 통과된 직후인 8월에 유례없는 대규모의 감세계획이 시행되고 국방예산이 증액됨으로써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연방재정 약화를 가져온 것은 정책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Jansson 2005)
- 이 시기에는 연방정부의 통제력 축소도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있는데(Walker 2001), 닉슨 행정부가 정부 간 의사소통의 원활, 행정 력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한 데 반해 레이건 행정부는 탈규제와 탈중앙화를 목표로 삼았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포괄보조금은 연방 전체 보조금에서 2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포괄보조금은 복지개혁으로 알려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 PRWORA)를 통해 대대적인 권한이양의 과정에서 제시된 Temporary Assistance for the Needy Families(TANF)라는 보조금임
- 기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matching)방식 보조금은 사라지고 일정한 액수의 포괄보조금이 주 정부에 지급되기 시작하였음
 - TANF 지원대상 규모의 제한이나 지원수준 등의 결정이 주 정부의 재량에 맡겨졌고, 연방정부의 행정적인 감독권은 크게 제한되었음
 - 높아진 재량 하에서 주 정부들이 선택한 운영방식 중에는 세부 서비스 프로 그램의 민영화,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대형 영리기업의 이용 등이 포함되었음(길버트·테렐 2005)

- TANF를 중심으로 복지개혁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아동보육 관련 포괄보조금 규모를 증가시켰고, 지방정부에서 TANF 재정의 일부를 보육을 비롯한 사회서 비스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용하였음
- 아울러 TANF 포괄보조금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상한이 없는 개방식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권리(entitlement) 프로그램에서 법적 권리가 사라지고 재정 규모에 서비스 공급수준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임
 - 1960~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포괄보조금은 주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거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기존에 있는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던 것에 반해,
- TANF 포괄보조금과 Food Assistance, Medicaid, Child Welfare 포괄보조금은 개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없애고 각 주에 고정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 지난 2001~2005년까지 미국에서는 포괄보조금과 관련한 12개의 새로운 법안50 이 제안되었었는데,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더라면 연방정부의 전체 재정이 전 중 61~63%의 비중을 갖는 매우 중요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 도구로 자리매김 하였을 것으로 분석됨(Finegold et al. 2004; Conlan and Posner 2008)
- 2009년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의 출현으로 미국내 사회복지 관련 포괄보조금제 도의 추진동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⁵⁾ Child Welfare(2004), Food Stamps(2004, 2005), Head Start(2004), Housing(2004 2005), Job Access and Reverse Commute(2004), Job Training(2004, 2005), Justice Assistance Grant(2004), Medicaid(2003), New Freedom Program (2004), Homeland Security(2001, 2002, 2003), Surface Transportation(2004), Community Development (2005) 등이다.

제2절 미국 사회서비스 관련 재정운영의 특성

1. 지방재정과 사회서비스 재정의 일반적 특성

가. 일반재정의 특성

- □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197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카터 대통령의 재임기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감소하였음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 정부는 판매세와 사용자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예산은 균형예산을 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던 반면, 연방정부는 소득세라는 강력하고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에따른 엄청난 세수 증대를 경험하였음
 -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연방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198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 일반교부세 배분프로그램(the general revenue sharing program)이 종료됨으로써 정부간 재원이전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일반교부세는 1972년 닉슨 행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된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음
 - 일반교부세는 1972년과 1981년 사이에 주 정부에 매년 약 60억 달러를 지급 하였고, 지방정부에는 1972년부터 1986년까지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을 조건 없이 지원하였음(강혜규 외 2006).
 - 이러한 연방주의의 흐름은 이양혁명(Devolution Revolution)으로 지칭되기도 하는데(Nathan 1992), 연방정부의 책임을 주 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연방정부 규모 와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재원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원은 상위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조세, 사용자 수수 료, 공공시설 수입, 보험신탁 수입 등으로 구성됨の(남유진 2005)
- 정부 간 이전(transfer) 세입의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94.9% 이전받고, 5.1%는 지방정부로부터 이전되고 있으며, 카우티 지방정부는 88.5%가 주 정부로부터 11.5%는 연방정부로부터 이전됨(표 2-3 참조)
 - 2006년 현재, 주 정부 전체 세입 중 1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세입이고(30.3%), 이 액수를 제외할 경우 일반판매세가 다음으로 비중이 높음(24%)
 -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의 이전세입의 비중은 최고 47.7%(미시시피 주)에서 최저 20.5%(델라웨어 주와 버지니아 주)까지 다양
- 조세세입으로서 주 정부는 일반 판매세와 개인소득세, 지방정부는 재산세가 주
 요 세입원이 되고 있으며, 세금 외 부과요금도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당히
 큰 수입원임(표 2-4 참조)
- 일반판매세는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세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데 2006년 현재 50개 주가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식품과 주택 및 약품 등에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함
- 개인소득세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7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비중이 약화되어서 전체 세입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주 정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연방보조금이 삭감 되는 시기에는 판매세나 소득세, 유류세 등을 인상하거나 서비스를 삭감하는 방향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됨

⁶⁾ 지난 50년간의 추이를 보면, 주 정부의 세입에서 판매세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연방보조금과 개인소득세 및 세외수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의 세입에서는 재산세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세외수입과 판매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www.census.gov).

-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재정안정기금(rainy day funds)인데,
 이는 세입과 세출 간에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음
- 내수경기의 호황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축적하여 기금을 늘리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2-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현황(2005/06)

(단위: 천달러)

					(- 1)
세입항목	주정부	지방정부	지출항목	주정부	지방정부
총예산	1,773,207,646	1,406,440,126	총지출	1,551,555,283	1,390,866,901
일반 회계	1,385,376,137	1,243,747,863	정부 간 이전 지출	428,924,716	12,914,837
정부 간 이전 회계	419,143,477	476,195,754	기능별 직접지출	1,122,630,567	1,377,952,064
연방정부 이전	397,597,199	54,636,121	교육서비스	202,897,438	535,566,689
주정부 이전	-	421,559,633	사회서비스		
지방정부 이전	21,546,278		공적부조	324,713,963	45,611,340
정부 자체세원	966,232,660	767,552,109	병원운영	44,320,081	66,135,001
세금	710,864,147	484,389,831	보건의료	32,994,197	38,115,394
재산세	11,793,847	347,315,253	고용지원	4,608,709	5,056
판매세	332,972,129	79,142,110	제대군인 지원	992,062	-
개인소득세	245,882,826	22,716,546	교통/운송	87,056,712	72,405,057
법인세	47,465,522	5,465,261	공공안전		
자동차세	19,015,122	1,504,683	경찰서	10,837,654	68,228,440
기타	53,734,701	28,245,978	소방서	-	34,166,638
부과요금	255,368,513	283,162,278	교도소	40,413,017	22,254,186
부과요금	137,400,590	197,440,271	보호관찰 등	8,622,294	5,032,472
기타 수입	117,967,923	85,722,007	환경 및 주택	32,694,024	131,435,956
공과금	15,816,052	109,449,200	정부 행정	46,813,938	64,520,725
주류판매소	5,429,820	947,326	부채에 대한 이자	37,808,472	47,851,808
공적보험신탁	366,585,637	52,295,737	기타	43,432,647	72,411,598
			공과금 지출	24,904,119	144,546,515
			주류 판매소 지출	4,338,258	889,904
			공적보험 지출	175,182,982	28,775,285

주: 중복된 정부 간 재정이전은 한번만 계상하였음.

자료: U.S. Census Bureau, Tax Foundation; http://www.taxfoundation.org

<표 2-4> 주정부 자체예산의 세입구조(2006)

		주정부 자체예산 중 비중 ¹⁾							
	지방-연방 이전 비율	재산세	판매세	개인 소득세	법인세	자체세원 계	세외소득		
미국 전체	30.3%	0.9%	24.0%	17.7 %	3.4%	51.3%	18.4%		
Alabama	37.4%	1.2%	20.9%	13.6%	2.8%	42.0%	20.6%		
Alaska	24.2%	0.6%	2.3%	0.0%	9.2%	27.9%	48.0%		
Arizona	35.0%	1.7%	30.0%	14.0%	3.8%	51.3%	13.7%		
Arkansas	31.3%	4.2%	26.9%	14.7%	2.7%	51.2%	17.5%		
California	28.5%	1.2%	21.2%	27.2%	5.5%	59.1%	12.4%		
Colorado	27.0%	0.0%	18.6%	24.3%	2.6%	48.7%	24.3%		
Connecticut	21.5%	0.0%	25.5%	29.7%	3.3%	62.3%	16.2%		
Delaware	20.5%	0.0%	7.2%	17.1%	5.0%	48.0%	31.5%		
Florida	30.1%	0.3%	41.4%	0.0%	3.6%	55.9%	14.1%		
Georgia	32.8%	0.2%	23.0%	24.9%	2.8%	52.6%	14.6%		
Hawaii	21.5%	0.0%	35.2%	18.1%	1.7%	57.5%	21.0%		
Idaho	30.7%	0.0%	24.5%	20.4%	3.3%	52.6%	16.7%		
Illinois	27.2%	0.1%	28.8%	17.5%	4.9%	57.1%	15.7%		
Indiana	24.6%	0.0%	25.6%	14.8%	3.5%	46.0%	29.4%		
Iowa	32.0%	0.0%	20.3%	18.0%	2.1%	45.5%	22.5%		
Kansas	29.0%	0.6%	25.6%	21.0%	3.3%	54.8%	16.2%		
Kentucky	31.8%	2.5%	23.2%	14.5%	5.0%	49.6%	18.6%		
Louisiana	39.6%	0.2%	23.2%	10.9%	2.2%	42.1%	18.3%		
Maine	34.1%	0.5%	22.0%	18.1%	2.5%	47.5%	18.4%		
Maryland	26.5%	2.2%	21.8%	23.4%	3.2%	55.7%	17.8%		
Massachusetts	24.1%	0.0%	16.3%	28.7%	5.1%	53.1%	22.8%		
Michigan	27.3%	4.9%	25.2%	13.5%	4.1%	51.6%	21.2%		
Minnesota	24.1%	2.3%	26.1%	24.8%	3.9%	62.6%	13.4%		
Mississippi	47.7%	0.3%	26.9%	8.6%	2.2%	41.0%	11.2%		
Missouri	35.5%	0.1%	20.9%	20.1%	1.5%	45.5%	19.0%		
Montana	37.0%	3.9%	10.4%	15.6%	3.1%	43.1%	19.9%		
Nebraska	30.7%	0.0%	23.1%	19.2%	3.3%	49.2%	20.0%		
Nevada	20.9%	1.7%	52.8%	0.0%	0.0%	65.0%	14.0%		
New Hampshire	33.1%	7.4%	13.7%	1.6%	10.5%	40.1%	26.8%		
New Jersey	24.5%	0.0%	22.6%	22.6%	5.4%	56.6%	18.9%		
New Mexico	31.8%	0.5%	19.7%	9.3%	3.1%	42.2%	26.0%		

New York	37.0%	0.0%	15.5%	24.9%	3.3%	46.5%	16.5%
North Carolina	33.2%	0.0%	21.5%	24.3%	3.4%	53.0%	13.8%
North Dakota	33.1%	0.0%	20.2%	7.5%	3.3%	44.2%	22.7%
Ohio	32.2%	0.1%	22.1%	19.2%	2.2%	47.9%	19.9%
Oklahoma	31.7%	0.0%	16.7%	16.9%	1.9%	48.1%	20.3%
Oregon	28.1%	0.1%	4.7%	32.8%	2.7%	46.0%	25.9%
Pennsylvania	27.7%	0.1%	24.9%	16.3%	3.8%	52.4%	19.9%
Rhode Island	34.7%	0.0%	22.6%	16.5%	2.7%	44.3%	21.1%
South Carolina	35.3%	0.1%	21.6%	14.0%	1.5%	39.9%	24.7%
South Dakota	38.9%	0.0%	30.1%	0.0%	1.9%	36.9%	24.2%
Tennessee	34.7%	0.0%	33.9%	0.8%	3.9%	45.0%	20.3%
Texas	34.4%	0.0%	33.9%	0.0%	0.0%	43.8%	21.8%
Utah	27.4%	0.0%	21.5%	19.3%	3.0%	46.3%	26.2%
Vermont	28.9%	18.5%	18.0%	12.2%	1.9%	54.0%	17.1%
Virginia	20.5%	0.1%	17.6%	27.8%	2.6%	52.7%	26.8%
Washington	26.4%	5.6%	44.1%	0.0%	0.0%	56.0%	17.6%
West Virginia	31.4%	0.0%	21.3%	12.6%	5.2%	44.4%	24.2%
Wisconsin	25.8%	0.4%	23.2%	23.0%	3.1%	53.7%	20.5%
Wyoming	41.0%	4.4%	15.3%	0.0%	0.0%	43.3%	15.6%

주: 공과금, 주류판매소 수입, 공적보험신탁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에 근거하였음.

자료: U.S. Census Bureau, Tax Foundation; http://www.taxfoundation.org

나. 사회서비스 재정의 특성

- □ 전반적으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3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GDP 증가분인 24%를 일정정도 초과하는 규모이지만 의료보장 부분의 증가율 69%를 감안하면, 여타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공공 재정지출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표 2-5>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기존 개별 프로그램 지원방식을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는 증가하는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경제적 지원과 가족지원 사회복지 서비스들에 대한 책임부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지만, 주정부의 재정지출도 연방정부 못지않게 증가해왔으며, 전체 구성에서 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의 재정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음
- 주정부의 경우, 교육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지만, 공공부조와 의료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의 재정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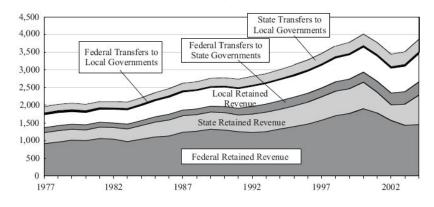
<표 2-5> 미국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증가율(1985~1995)

(단위: %)

	전체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
사회보장연금	18	13	40
소득부조	27	34	7
의료서비스	69	67	73
주거서비스	54	63	-10
사회서비스	23	5	49

자료: Salamon (2002) 『The Resilient Sector』, 박세경 외(2007) p.87에서 재인용.

[그림 2-1]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공 사회복지지출 분담 추이



자료: Tax Policy Center, Tot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enues 1997~2005, 2005.

-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다양하며, 법정지 출(mandatory spending)인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지출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은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대부분의 연방정부 재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Act, Tiltle IV),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예컨대 연방정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재정은 수급권 지원방식 프로그램 (entitlement programs)으로 주 정부의 매칭펀드를 요구하는데, 매칭펀드의 규모는 주정부 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50%~80% 수준에 이르고 있음

2. 사회서비스 재정으로서 포괄보조금의 영향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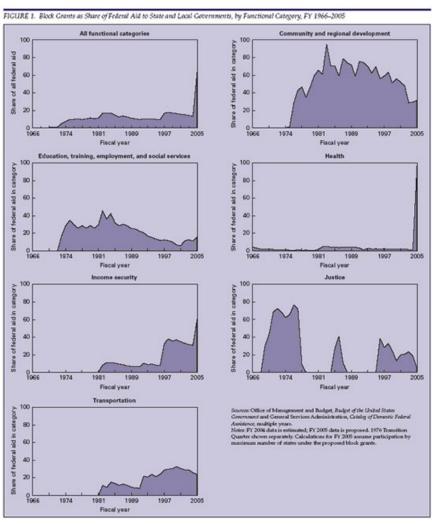
- □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성과를 둘러싼 평가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검토는 포괄보조금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기보다는 동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다른 정책과의 조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임
 - 기존의 매칭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생긴 여러 가지 변화 를 둘러싼 평가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 포괄보조금의 특성과 성과를 살펴보면,
 - 일반적으로 분권화가 다양한 장점7)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보조금 비중 증가와 더불어 진행된 미국의 분권화와 정부 간 재정이전의 감소는 공공 부조나 사회서비스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길버트·테렐 2005)

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고, 주민의 특수한 욕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작은 규모의 정부단위에서 실험적인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 사업 실패에 따른 여파가 적다는 점 등이다.

- 특히, 빈곤과 사회적 불안정 및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낮은 수준의 정부지원과 공급주체들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분권화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사회복지 권한의 분권화는 격차를 심화시 킬 우려가 있고, 소규모 정부단위에서는 오히려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변호하 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1966년에 2가지 유형의 포괄보조금이 도입될 당시만 해도 포괄보조금은 민주주 의적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구로 평가되었음(Finegold et al. 2004)
- 이에 따라 1971년에 지역사회개발 포괄보조금(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CDBG),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과 더 불어 Employment and Training Act(ETA) 등 새로운 포괄보조금의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금은 증가되었음
-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정책지향은 크게 바뀌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의 도래와 더불어 주 정부의 재량을 제고시 키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공공 지출을 현격히 삭감한 것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레이건 행정부의 포괄보조금은 25%의 예산삭감을 동시에 추진했 고(Finegold et al. 2004),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은 1981년 도입될 당시 29억 달러였던 것이 2007년도 현재 17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음(박 세경 외 2007).
- 80년대 이후 조건부 범주형 보조금의 폐지와 포괄보조금의 비중 증가에 따라, 미국 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율을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연방정부 공공 재 정지출은 미미한 수준으로만 상승하였음(표 2-5 참조)

□ 포괄보조금의 전체적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의료와 노령연금 분야에 기인한 것이고, 이 분야를 제외한 전 영역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사회서비스(고용훈련 포함)는 1981년을 기점으로 현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그림 2-2 참조)

[그림 2-2] 연방보조금 중 포괄보조금의 비중변화(1966~2005)



자료: www.urban.org

- 포괄보조금을 종합평가한 미국내 정책연구소 Urban Institute의 연구보고서는 포 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Finegold et al. 2004)
- 포괄보조금은 레이건 정부 시기부터 삭감되어 왔고, 특정목적으로 일부를 할당 하는 의무사항(set aside requirement)이 덧붙여지는 등의 추가 조치로 인해 주 정부의 유연성이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주 정부의 행정 책임성이 강화되었는지 의 여부도 불명확한 것으로 밝혀졌음
- 아울러 주 정부가 조건부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이미 행정적 역량을 갖추고 수 급자 및 서비스 공급자와 관계를 정립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포괄보조금제도 가 도입되었을 때 유연한 적응과 새로운 책임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CSBG)처럼 연방이 지역기관에 직접 공급하 던 방식이 주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뀐 경우, 주 정부는 연방정부 와 지역 서비스 공급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기위한 행정 절차를 만들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주 정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도 전에 직면하게 하였음
- TANF 포괄보조금의 도입 이후 수급자에게 미친 영향을 정책영역별로 다각적으 로 평가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급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정책대상 표적화(targeting)의 과정에서 주 정부가 지나친 유연성을 행사하면서 서비스의 필요와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에게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Finegold et al. 2004; Golden 2005)
- 한편, 포괄보조금제도가 사회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Brookings 연구소의 분 석도 상당히 비판적임(Waller, 2005)
- 1966년 존슨 행정부가 의료분야에서 시작한 포괄교부금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 면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을 약화시켜왔으며, 처음에 기 대되었던 장점인 유연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조건부 항목별 보조금이 일괄 포괄보조금으로 탈바꿈하면서 보조금은 절대 액수가 줄어들거나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축소되어 왔으며,
- 소비자의 욕구에 더 잘 반응한다는 장점을 살리지 못했음
- 또한 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과 관리감독에서 연방정부의 책임이 약화되면서
 프로그램의 기준과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 사회서비스 부문의 포괄보조금은 욕구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 비용에 맞게 배정되는 것도 아니며,
 - 주정부의 재정력 차이를 고려하지도 않는 매우 경직된 운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포괄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oversight)과 지원에 따른 조건부여(requirements)가 현저히 미약해 진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재정난에 직면한 주 정부가 자율성 혹은 유연성을 오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사료됨
- 더구나 공공부조 재인가(welfare re-authorization) 과정에서 제안된 super-waiver 방식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제 수혜자격 규정이나 표적화 기준, 공급자 기준 등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간의 광범위한 재원 이전(transfer)을 할 수 있게 되어, 하 위 프로그램별로 쇠락과 성장의 방향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미국의 복지역사에서 포괄보조금제도는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공공지출 삭감과 동시에 추진되는 양상을 보였음
 - 연방보조금에 대한 super-waiver 등의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를 일정수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해지고 있으며,
 - 프로그램 수행정보가 관리·축적되지 않아서 모니터링은 물론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있 다는 우려가 있음

- 다만 가장 최근에 운영되고 있는 TANF 포괄보조금제도 등에서는 이용자의 "수급권리"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의 목적이 재정여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감세정책 추진 및 탈규제라고 하는 세 가지 정책 선택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재정의 지속성 측 면에서 볼 때 많은 부작용을 낳는 정책조합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의 연방제도 하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 관계는, 한국의 단일정부 체계하의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체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서비스 수혜(이용)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entitlement)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포괄보조금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권리(entitlement)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나타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향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고 사회서비스의 운영관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괄보조금의 독자적인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미국의 경험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은 기능적 등가물은 아니지만,
- 이를테면 TANF 포괄보조금이 시행되면서 각 주 정부로 하여금 제도변경 이전 지출수준의 적어도 80%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MOE(Maintenance of Effort) 기준이 마련되어 요구되었던 점(Powers 2000)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산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권의 일정한 보장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 보다 적극적으로는 핵심서비스에 대한 특별지정(set-aside) 지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핵심적인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험에서 참고할 점은, 포괄보조금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긍정 적 효과가 가장 크게 확인된 주 정부는,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적·재정적 관리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주 정부라는 점(Finegold et al. 2004)을 명심해야 함
- 또한 기술적으로도 재정을 지원할 적절한 단위를 선택할 때 지방의 행정단위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길버트ㆍ테렐 2005)을 감안한다면,
- 포괄보조금의 시행 자체가 광역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 따라서 포괄보조금의 도입과 더불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광역 지자체의 행정·재정·분석·기획 측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추가로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임
 - 최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김재훈· 이재원, 2008)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음

제3장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

제1절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 1. 연방정부의 관리운영 개요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는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 부문의 범주적 보조금(categorial grants)을 중심으로 확대된 재정지원 체 계가 서비스의 중복, 비효율성, 과도한 행정비용, 공공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 에 대한 인식에 바탕하고 있음
 -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련 의사결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탈집중화, 분권화시킴으로써 연방정부는 사업추진의 행정 적, 재정적 지나친 확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 1981년 OBRA(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는 범주적 보조금에 의해 지원 되던 57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9개의 포괄보조금으로 통합하는 근거가 되었음
 - 9개의 포괄보조금에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Community Service Block Grant)이 포함되었음
- □ 포괄보조금의 집행은 연방 규제 법안(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의 96항 45 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Block Grant Regulations-Title 45, Part 96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다음 지침들을 따름
 - 포괄보조금 집행과정은 크게 사전과정(Pre-award Process)→사후과정(Post-award Process)→집행 완료후(After the Grant Process)의 단계로 구성되며, 회계감사는 별도의 순서 없이 필요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

- 사전과정에서는 보조금 신청과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핵심 과업이 되며, 사후과정에서 보조금 지출의 원인행위에 대한 검토와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가이루어짐
- 보조금 집행과 사업결과의 보고 이후에도 공공재정 투입에 따른 지속적인 책무성(accountability)의 검토 및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감사는 필요에 따라 언제나 진행될 수 있음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Circular A-133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지침과 개정된 Single Audit Act
 of 1984에 의해 회계감사를 실시함

<표 3-1> 연방정부 보조금 전달의 기본구조

단 계	주요 진행내용
사전관리 (Pre-award)	 보조금 지급 공고 보조금 신청 : SF 424 Series Awarding Agency Review Programmatic, Cost, Organizational Award : Funding, Time for Performance, Requirements
사후관리 (Post-award)	 Incurrence of Cost Payment Disbursement of Cash Documentation of Transactions Reporting: Financial Reports, Performance
집행이후 (After-the Grant)	 Close-out Continuing Accountability
수시	Audit and Audit ResolutionNon-federal Audit

- 포괄보조금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연방정부의 사업들은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에 의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PART는 정부 정책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사정도구임
- PART의 4대 사정평가(assessment rating)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성 및 사업설계의 타당성
- 프로그램의 장단기 목표에 따른 전략적 실천계획의 수립여부
- 재정운용, 행정비용, 프로그램 개선 노력 등 관리운영 방안
- 프로그램 효과성 및 책무성 분석(impacts and accountability)
- 대상 프로그램은 PART 평가를 통해 "효과적(Effective)", "대체로 효과적 (Moderately Effective)", "적절(Adequate)", 또는 "효과없음(Ineffective)"의 판정을 받게됨8)
 - 단.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성과지표과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 은 경우, "결과미제시(Results Not Demonstrated)"로 판정함

⁸⁾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s(PART)의 판정결과 등급구분

① Effective. This is the highest rating a program can achieve. Programs rated Effective set ambitious goals, achieve results, are well-managed and improve efficiency.

²⁾ Moderately Effective: In general, a program rated Moderately Effective has set ambitious goals and is well-managed. Moderately Effective programs likely need to improve their efficiency or address other problems in the programs' design or management in order to achieve better results.

³ Adequate: This rating describes a program that needs to set more ambitious goals, achieve better results, improve accountability or strengthen its management practices.

⁴ Ineffective: Programs receiving this rating are not using your tax dollars effectively. Ineffective programs have been unable to achieve results due to a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program's purpose or goals, poor management, or some other significant weakness.

⁽⁵⁾ Results Not Demonstrated: A rating of Results Not Demonstrated (RND) indicates that a program has not been able to develop acceptable performance goals or collect data to determine whether it is performing.

<표 3-2> 연방정부-주정부 간 포괄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목록

지침	적용
45 CFR Part 16	Procedures of the Departmental Grant Appeals Board
45 CFR Part 30	Claims Collection
45 CFR Part 76	Debarment and Suspension from Eligibility for Financial Assistance (Nonprocurement)
45 CFR Part 80	Nondiscrimination Under Programs Receiving Federal Assistance through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ffectuation of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5 CFR Part 81	Practice and Procedure for Hearings Under Part 80 of this Title
45 CFR Part 84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Programs and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45 CFR Part 86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in Education Programs and Activities Receiving or Benefiting from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45 CFR Part 87	Equal Treatment for Faith-Based Organizations
45 CFR Part 91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Age in HHS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45 CFR Part 93	New Restrictions on Lobbying
45 CFR Part 96	Block Grants
45 CFR Part 97	Consolidation of Grants to the Insular Areas
45 CFR Part 100	Intergovernmental Review of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rograms and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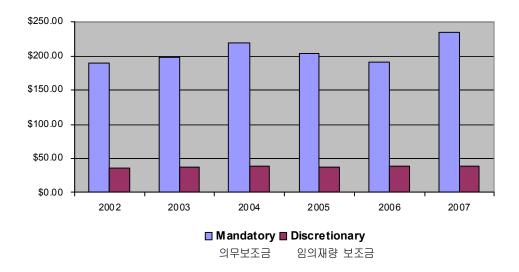
자료: http://www.acf.hhs.gov/programs/ocs/ssbg/grants/termsconditions.htm

- 2007년도를 기준으로 연방 보건복지부(DHHS)의 보조금 규모는 전체 연방정부 보조금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연방 보건복지부(DHHS) 보조금은 의무보조금 (mandatory grants)과 자유재량 보조금(discretionary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음9)
- 의무보조금(mandatory grants)의 경우 주정부가 제출하는 보조금 사용계획서의 법적 지급기준에 부합되거나 보조금 프로그램의 운영이 법에 근거할 경우 지 급하며, 전체 DHHS 보조금의 83.1%를 차지함

⁹⁾ 미국 연방 보건복지(DHHS)의 주요 보조금 유형을 [부록 1: DHHS의 50대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 목록]에 첨부하였다.

- 의무보조금은 다시 포괄보조금(block grants)과 일반보조금(general purpose grants)으 로 구분되며, 포괄보조금은 수급권(entitlement)의 규모가 한정된 유한보조금 (closed-ended grants)와 무한보조금(open ended grants)로 구분됨
- 자유재량 보조금(discretional grants)은 연방정부의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의 경쟁절차를 거쳐 재량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전체 DHHS 보조금 의 13.9%를 차지하였음
- 2007년도 전체 연방 DHHS의 보조금 2,331억 달러 가운데 포괄보조금의 규모는 293억 달러(12.6%) 정도였음
- 보조금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연방 DHHS의 보조금 중에 주요 포괄보조금은 TANF보조금, CCDBG,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너지 지원 보조금(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LIHEAP)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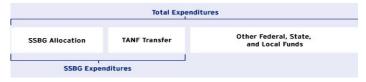
[그림 3-1] 연방보건복지부(DHHS)의 의무보조금과 임의재량 보조금 규모 비교



-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 한 반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충족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를 확보하였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해 정확한 모니터링이 강조되면서 성과관리 체계를 공 고화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포괄보조금을 소개하면서 연방정부의 포괄보조금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 2. 사회서비스 관련 주요 포괄보조금
- 가.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
 - 1) SSBG의 개요
- □ 보건복지부(DHHS) 산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소속 지역사회서비스실(Office of Community Services, OCS)에서 주관하고, OCS의 베정부지원국(Division of State Assistance)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짐
 -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SSBG 지원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복지의존성의 예방·축소·제거를 위한 전문적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성취·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둘째, 자기보호가 불가능한 성인 및 아동의 유기, 학대, 착취를 예방 및 치료하고 가족단위의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자활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함
 -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서비스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시설보호를 예방하고 감소시킴

- 넷째, 기존 시설보호를 대치하거나 다른 적절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요 보호 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연계를 보장하도록 함
-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이용되고 있는 SSBG는 연방정부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받은 포괄보조금(SSBG)과 빈곤가족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포괄보조금에서 이전된 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⁰⁾
- 더불어 주정부 규정의 규정에 따라 기타 포괄보조금 형태로부터 사회서비스 지출을 위한 보조금 이전이 가능한데, 2006년도의 경우, 모든 이전 보조금은 빈곤가족한시지원(TANF) 포괄보조금에서 이전되었음
 - 2006년도 SSBG 관련 총지원 규모는 1.826십억 달러이며, 이는 2002년과 비교 하여 약 4% 증가한 수준임
 - 2006년 2월, 부시 대통령은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를 승인함으로써 연방 회계연도(federal fiscal year, FFY) 2010년까지 TANF 보조금의 10%를 SSBG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11)
- TANF에서 이전된 SSBG는 빈곤선 200% 미만의 빈곤계층 가족과 아동을 대상 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만 사용될 수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전체 SSBG 지출의 66%가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SSBG 보조금이었고, 나머지 34%는 TANF 이전 보조금이었음

¹⁰⁾ SSBG 총규모는 연방정부의 SSBG 지원금과 TANF 이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¹¹⁾ 미국의 연방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차년도 9월 30일까지이다.

<표 3-3> SSBG 및 TANF 이전 보조금 포함 전체 SSBG 사업 지출규모의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연도	' 95	'00	'01	'02	'03	'04	'05	'06
SSBG 총지출	SSBG 예산 ¹⁾	2,721	1,774	1,714	1,692	1,686	1,625	1,826	1,817
	TANF 이전기금 ²⁾		1,021	948	955	806	880	944	933
	총액	2,721	2,795	2,662	2,647	2,492	2,505	2,770	2,750

- 주: 1)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 SSBG로 할당·지급되는 예산 규모임.
 - 2) TANF이전자금은 '97년부터 공식보고 하도록 규정됨

자료: Social Services Block Grant Annual Report, 각년도.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SSBG 보조금의 할당 기준이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SSBG 지출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州(\$305백만)였고,
- 이어서 뉴욕州(\$224백만), 플로리다州(\$160백만), 텍사스州(\$146백만), 오하이오 州(\$143백만), 일리노이州(\$114백만), 펜실베이니아州(\$104백만) 등의 지역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SSBG 지출을 보고하였음

2) SSBG의 관리운영

- □ 1993년에 발표된 SSBG 시행규칙에 따르면 SSBG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 서비스 유형은 '기타서비스'를 포함한 총 2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동 규정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제한적 규제 권한을 갖지는 않음
 - <표 3-4>는 SSBG 지원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는 29가지의 기본 사회서비스 유형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표 3-4>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지원 가능 사회서비스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
• 입양서비스	• 아동 위탁보호서비스	• 성인 보호서비스
(Adoption Services)	(Foster Care - Child)	(Protective Services - Adults)
 사례관리 	■ 의료서비스	• 아동 보호서비스
(Case Management)	(Health-related Services)	(Protective Services - Child)
급식	• 재가서비스	• 여가레저서비스
(Congregate Meal)	(Home-based Services)	(Recreation Services)
• 상담서비스	▪ 식사배달서비스	• 시설보호서비스
(Counseling Services)	(Home-delivered Meals)	(Residential Treatment)
• 성인 주간보호	• 주거지원서비스	• 장애인 특수서비스
(Day Care - Adults)	(Housing Services)	(Special Services - Disabled)
• 아동 주간보호	• 독립생활/전환기서비스	• 위기청소년 보호
(Day Care - Child)	(Transitional Living)	(Special Services - Youth at Risk)
■ 교육·훈련서비스	• 연계서비스	• 약물중독 서비스
(Education & Training Services)	(Information & Referral)	(Substance Abuse Services)
■ 고용서비스	▪ 법률서비스	교통・이동서비스
(Employment Services)	(Legal Services)	(Transportation)
• 가족계획서비스	■ 임신·부모서비스	■ 기타 서비스 (Other Services)
(Family Planning Services)	(Pregnancy & Parenting)	Other Services)
• 성인 위탁보호서비스	• 예방 개입서비스	총 29 유형
(Foster Care - Adults)	(Prevention & Intervention)	70 27 11 70

<표 3-5> 사회서비스 유형별 SSBG 지출 구성(2006)

서비스 유형	SSBG 구성비율
예방·개입서비스(Prevention & Intervention)	5%
관리행정 비용(Administrative Costs)	5%
재가서비스(Home-Based Services)	7%
사례관리(Case Management)	7%
성인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Adults)	7%
아동 주간보호서비스(Day Care-Children)	8%
아동 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Children)	11%
장애인 특수서비스(Special Services-Disabled)	14%
아동 위탁보호서비스(Foster Care Services-Children)	15%
그 외 서비스	21%

자료: SSBG Annual Report, 2006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연방정부가 각 주별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서비스 공급과정 을 관리·운영함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연방정부가 50개 주별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하고 있으며, 1년에 4번에 걸쳐 분기별로 연방에서 주정부로 지급함
- 각 주정부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내의 개별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급 방식은 표준화된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포뮬러 편딩(formula funding) 방식과 사업계획서(Request For Proposal, RFP) 방식으로 구분됨
-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SSBG를 할당받기 위하여 주정부는 각 회계연도별로 사전예산보고서의 제출 및 사업수행 결과와 결산보고서를 연방정부에 제출해야할 의무를 가짐
 -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각 회계연도별로 사전예산보고서(Pre-Expenditure Report) 를 제출하며 이것이 곧 포괄보조금 신청서를 대신함
 - 포괄보조금 운영에 대한 평가는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 제출한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서(Post-Expenditure Report, 또는 Annual Report)를 근거로 이루어짐

[그림 3-2] 주정부의 SSBG 관련 보고의무(Reporting Duty)

주정부 연방정부 Preexpenditure Report(매년 제출) - 서비스 유형 - 지원대상의 특성 - 대상자 선정기준 등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 회계연도 시작 30일전 제출해야 함 *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보고양식 없음 ☐ Administration for Postexpenditure Report (보고기간 6개월 이내 또는 Children and Families 차년도 Preexpenditure Report 제출 전) - 제공된 서비스 유형 ↓ DHHS - 지원자 규모(성인/아동) - 서비스 유형별 지출비용 * 양식: OMB No. 0970-0234 (그림 3-3 참조)

[그림 3-3] SSBG 보고양식 OMB No. 0970-0234 (Post-expenditure Reporting Form)

Part A. Estimated Expenditures and Proposed	OMB NO.: 0970-0234 EXPIRATION DATE: 07/31/2011					
STATE:	FISCAL YEAR:			REPORT PERIOD:		
Contact Person:	Phone Number:					
Title:	E-Mail Address:					
Agency:	Submission Date:					
				•		
	SSBG Expe	SSBG Expenditures Exp			Provision	Method
Service Supported with SSBG Expenditures	SSBG Allocation	Funds transferred into SSBG*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Total Expenditures	Public	Private
1 Adoption Services						
2 Case Management						
3 Congregate Meals						

4	Counseling Services			
5	Day CareAdults			
6	Day CareChildren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8	Employment Services			
9	Family Planning Services			
10	Foster Care ServicesAdults			
11	Foster Care ServicesChildren			
12	Health-Related Services			
13	Home-Based Services			
14	Home-Delivered Meals			
15	Housing Services			
16	Independent/Transitional Living Services			
17	Information & Referral			
18	Legal Services			
19	Pregnancy & Parenting			

20	Prevention & Intervention				
21	Protective ServicesAdults				
22	Protective ServicesChildren				
23	Recreation Services				
24	Residential Treatment				
25	Special ServicesDisabled				
26	Special ServicesYouth at Risk				
27	Substance Abuse Services				
28	Transportation				
29	Other Services***				
30	SUM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31	Administrative Costs				
0.0	SUM OF EXPENDITURES FOR SERVICES	AND			
32	ADMINISTRATIVE COSTS				
* From	which block grant(s) were these funds				

transferred?			
** Please list the sources of these funds:			
*** Please list other serivces:			

Part R Estimated Recipients				OMB NO.: 0970-0234 EXPIRATION DATE: 07/31/2011			
FISCAL YEAR:							
Service Supported with SSBG	Children	Adults					
* *		Adults Age 59	Adults Age 60	Adults of Unknown	Total Adults	Total	
Expenditures		Years & Younger	Years & Older	Age			
1 Adoption Services							
2 Case Management							
3 Congregate Meals							
4 Counseling Services							
5 Day CareAdults							

6	Day CareChildren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8	Employment Services			
9	Family Planning Services			
10	Foster Care ServicesAdults			
11	Foster Care ServicesChildren			
12	Health-Related Services			
13	Home-Based Services			
14	Home-Delivered Meals			
15	Housing Services			
16	Independent/Transitional Living Services			
17	Information & Referral			
18	Legal Services			
	Pregnancy & Parenting			
	Prevention & Intervention			
21	Protective ServicesAdults			

22	Protective ServicesChildren			
23	Recreation Services			
24	Residential Treatment			
25	Special ServicesDisabled			
26	Special ServicesYouth at Risk			
27	Substance Abuse Services			
28	Transportation			
29	Other Services***			
30	SUM OF RECIPIENTS OF SERVICES			

3) SSBG의 성과평가

- □ SSBG 프로그램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대통령 승인 관리지 침(President's Management Agenda)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사정평가도구(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를 이용하여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2005년 PART 평가에서 SSBG는 "결과미제시(Results Not Demonstrated)"의 판정 을 받았음
 -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은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고 향상 내용을 드러 낼 수 있는 국가적인 성과측정 체계가 부재하며,
 -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한 사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한편, 연방정부는 SSBG의 운용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과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SSBG 관련 주정부 의 행정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정부의 SSBG 관련 행정비용은 40% 가까이 감 소하였음(2001년 \$233.8백만 → 2006년 \$141.1백만)
- 나. 아동보육·발달 포괄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 1) CCDBG의 개요
- □ CCDBG는 OBRA의 개정안인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OBRA 1990)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임의 재량 사업으로 시작되었음
 - 이후 1996년 이루어진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PRWORA(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를 근거로 기존의 아동보 육 및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보호사업 보조금이 CCDBG로 통 합되었음

- 기존 보육 및 보호사업에는 AFDC(Assistance for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보육관련 사업 및 위기아동 전환기 보호 사업(Transitional Child Care and At-risk Child Care) 등이 포함되었음
- 이에 따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418항에 근거한 수급권 보장조항 (entitlement)을 통해 확보된 연방정부의 의무보조금과 주정부의 매칭 편드는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로 지정되었음
- CCDBG는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아동보육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 접근성(accessibility), 지불능력(affordability)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정부와 지방정 부의 서비스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CDBG는 주정부가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 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는 데에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직업훈련/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지원함
 - CCDBG를 할당받은 주정부는 전체 보조금의 최소 4%는 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양육방식에 있어서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의 질(quality) 과 활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도록 지정하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취학준비 프로그램(School Readiness programs)에 CCDBG 가 지원될 경우, 전체 보조금의 4% 상한선을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CCDBG의 관리운영

□ CCDBG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방안의 일 환으로 활용되는데,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아동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활용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아울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영유아기 아동발달 프로그램과 방과 전, 방과 후 프로그램의 설립, 확장 및 실행을 목적으로 주정부에 보조금을 제공함
- 연방의 CCDF 기금을 보조금 방식, 계약방식(contracting-out), 그리고 증서 (certificates)를 통해서 주정부에 전달함
- 연방정부에서 CCDBG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세부 추진전략은 다음 과 같음
- 각 州의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아동보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 하는데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 가족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아동양육 방식에 대해 취업 중인 부모들이 자기 결정을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시키도록 함
- 부모들이 아동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정부들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주정부가 임시 현금지원 또는 기타 저소득 계층의 취업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모의 자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우, 이들 대상자에게 그들의 자녀 를 위한 양질의 아동 돌봄을 제공함(고용지원서비스와의 연계중요성 강조)
- 주정부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주 법률에 규정된 보육서비스 관련 건강, 안전, 자격, 그리고 등록 기준 등을 엄격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저소득 근로자 가정의 자녀에게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또는 주양 육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희망하는 적합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연방 보건복지부(DHHS) 산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의 운영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
- 최근에는 CCDF 기금을 통한 주정부의 서비스 제공 관련 재정적 지원에서 탈 피하여 ACF의 정책운영 목표에 따라 미래 인적자본 축적할 수 있도록 보육서 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 소비자 교육, 그리고 근거기반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평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2007년에도 CCDBG는 주정부에 대한 보육서비스 관련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영역에서 활용되었음
- 가족과 아동을 위한 성과 향상을 목표로 효과적인 성과관리 전략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 설계된 주 정부 차원의 아동보육 보조금 정책의 평가연구 사업
- 아동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들에 대한 종단적 다지역 연구 (longitudinal multi-site research)
- 보조금의 집행 및 사용관련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주정 부 역량 증진방안 마련
- 보육정책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웹 기반 보고서, 각종 행정서식, 브리핑, 현황 데이타, 그리고 다른 연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보육 및 유 아교육 연구연계 아카이브(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Research Connections)의 개발
- 연구, 정책, 그리고 실천을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연 구 파트너쉽의 증진
- 3) CCDBG의 성과평가
- □ CCDBG 사업은 2006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해 앞서 소개된 프로그램사정평가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에서 '대체로 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PART 평가보고서는 CCDBG 프로그램의 감독, 재정적 운영 및 파트너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강점으로 언급하였음
 - 보조금 관리운영 과정에서 지출 오류를 보정하고,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중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저소득 가정의 고용과 자립을 촉진하며,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 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들의 취학준비도(school readiness)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최근 몇 년간, CCDBG는 보조금을 받는 검증된 아동보육 서비스 공급자의 비율 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CCDBG 성과의 핵심적 척도로서 승인된(accredited)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의 65%가 CCDBG를 수급하도록 추진되었던 정책목표는, 인증시설 중 CCDBG 수급비율이 71%에 이르는 목표치의 초과달성을 이루었음
- 다. 요보호가족한시지원 포괄보조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Block Grant)
 - 1) TANF의 개요
- □ 1996년 단행된 복지개혁의 일환으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안(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를 근거로 TANF가 신설되었음
 - TANF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아동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에게 원조를 제공함
 - 직업 준비, 근로, 그리고 결혼을 촉진시킴으로서 빈곤가정 부모 및 주양육자의 복지의존성을 종결시키도록 함
 - 혼외 임신의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함
 - 양부모 가족의 형성과 유지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주정부의 유연성을 증진시킴

- 기존 AFDC의 범주적 보조금에 의해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자동적으로 수급 권리가 보장되는 entitlement 프로그램서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된 TANF는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강혜규 외, 2006)
-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제공하는 TANF 포괄보조금의 전체규모는 1994년 AFDC 매칭 보조금제도 하에서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지원규모인 165억 달러로 고정되었음
 - 이러한 보조금 규모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조정이 없는 동결조건 하에 이루어짐
 - 따라서 AFDC 당시 지출수준이 낮았던 주정부의 경우,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추가 지출수요가 발생하면서 관련 서비스의 적정공급을 위해 보충적 보조금(supplemental grants)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했음
- Deficit Reduction Act of 2005 (DRA), Public Law 109-171는 TANF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대통령 발의를 청원하였으며, 주요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TANF 프로그램 재승인, 그리고 주, 소수민족 및 영역(Territories)에 대한 Family Assistance Grants 프로그램 보조금 수준의 유지, 영역(Territories)에 대한 매칭 보조금, 소수민족(Tribes) 근로 프로그램들, Contingency Fund에 대한 접근성 허가함
- TANF 수급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조건을 강화함
- 안정적 결혼생활 및 책임감 있는 부권의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2008년에 Supplemental Grants for Population Increases 프로그램의 복귀를 명시함
- 저소득층 가족 및 아동지원에 있어서 성과가 양호한 주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및 성과가 저조한 주정부에 대한 징벌조항을 삭제함

2) TANF 관리운영

- □ 주정부의 가족지원 보조금의 재원은 우선적으로 주 가족지원 보조금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이는 매 년 16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주정부에 할당되는 보조금 의 수준은 과거의 복지 지출 수준에 기초하도록 함
 - 주정부들은 직업 참여와 노력의 유지에 대한 일정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TANF 보조금을 이용할 경우 취업지원, 개인 책임, 자립자족, 가정 강화 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에 유연성을 인정함
 - 아울러 주정부들은 그들의 수급자격 기준, 혜택 수준, 그리고 TANF 수급자에 게 제공되는 혜택과 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짐
 - 그러나, 주정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위한 주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해야만 하며, 최소 근로 참여율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함
 - 또한 TANF 하에서 5년 연속 연방 기금 지원을 받았던 가정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자격을 박탈하게 됨
 - 주 정부는 TANF 기금의 총 30%까지 CCDBG 또는 SSBG에 이전할 수 있고, SSBG에 대한 이전은 10%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3) TANF 성과평가

- □ TANF 사업은 2006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사정평가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에서 '대체로 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평가보고서에서 본 사업은 담당 사례수, 빈곤퇴치 및 수급가정의 복지의존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복지 수급자의 고용과 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음
 -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은 전략적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지표를 재평 가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

- 며, OMB 승인을 받은 효율성 척도를 개발하였음
- 연방 보건복지부(DHHS)의 아동가족청(ACF)에서 제시하고 있는 TANF 수급자의 취업 및 근로활동 유지에 있어 2006년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 TANF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률은 36%에 가까웠고,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하여 증가된 수치임
 - 아울러 취업상태 유지율은 65%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목표치인 61% 를 초과한 수준임
- 라. 가족안전·안정증진 포괄보조금(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 Block Grant)
 - 1) PSSF 포괄보조금의 개요
- □ PSSF 포괄보조금은 주정부가 가족생활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가족 지원 서비스, 한시적 재결합 서비스, 입양 촉진 및 지원 서비스의 조정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음
 - 기존의 가족지원 관련 각종 수급권 지정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과 임의 재량 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음
 - 연방정부가 밝히고 있는 PSSF 포괄보조금의 지원 사업의 영역은 다음과 같음
 - 가족생활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가족해체의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해 지원됨
 - 자신의 가정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것, 해체가정의 재결합 또는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의 지원 및 문화적으로 민감한 관점에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2년 관련 법의 개정에서 각 주가 영아 안전 피난처 프로그램 지원을 허가 하도록 사업의 정의가 수정되었음

- 가족지원 서비스는 가족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도록 부모의 양육능력(parenting skills)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의 예방적인 활동들을 강조함
-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들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됨
- 부모의 아동 양육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 회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의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통합적 접근을 제고함
- 아울러 안정적 가정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한 결혼생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함
- 한시적 재결합 서비스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위탁보호에 맡겨진 아동, 부 모, 또는 주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사업임
 - 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위탁보호에 들어간 날로부터 15개월 동안만 지원가능하며,
 - 이 기간에 가족내 문제를 해결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 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체가족에 대한 적시적 재결합을 촉진하는 사업임
- 입양 촉진 및 지원 서비스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될 때 위탁 보호 체계로부터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을 고무시키도록 지정된 사업임
 - 입양 절차를 진척시키고 입양 가정을 지지하는 입양 전, 입양 후 서비스를 포 함할 수 있음
- 2) PSSF 포괄보조금의 관리운영
- □ PSSF 포괄보조금은 푸드스탬프(Food Stemp) 수급인구 중에서 해당 주의 아동인 구 비율에 기초하여 배분되는 포뮬라 방식의 포괄보조금임
 -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된 주 계획 하의 활동비용으로 할당받은 보조금 의 75% 이하로 사용하게 되어있으며, 나머지 25%는 비연방 기금에서 지출되어 야만 함

주정부는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가족 당사자들과의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가 잘 조정되어 있고, 기금이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획입안 절차를 거쳐야 함

<표 3-6> PSSF의 의무보조금, 임의재량보조금 및 사전 승인된 연도별 예산규모

	의무보조금	임의재량 보조금	사전승인 예산 ¹⁾	 정 체
	Mandatory	Discretionary	Pre-Appropriated	신 세
2004	\$305,000,000	\$98,586,000	-	\$404,383,000
2005	\$305,000,000	\$98,586,000	-	\$403,586,000
2006	\$345,000,000	\$89,039,000	\$20,000,000	\$454,039,000
2007	\$345,000,000	\$89,100,000	\$20,000,000	\$454,100,000
2008	\$345,000,000	\$63,311,000	\$20,000,000	\$428,311,000

주: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Deficit Reduction Act에 근거하여, 관련정책의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의 수집, 법원과 아동복지 기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 그리고 아동복지 사건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다른 사법업무 담당자의 훈련을 위하여 할당됨

자료: www.dhhs.gov

- PSSF 보조금 중 4천만 달러가 사례관리자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부모나 돌봄자의 약물중독 및 남용에 의해 고통 받는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파트너쉽에 반드시 할당되어야 함
- 또한 1천만 달러는 위탁보호(forster care)와 입양과 관련된 법적 절차 업무를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 법원 향상 프로그램을 위하여 할당함
- 6백만 달러는 기타 PSSF 관련 평가, 연구, 그리고 관계자 교육·훈련을 위해 서, 이 중 2백만 달러는 신규로 활동하게 되는 아동복지사의 훈련 및 약물중 독 및 오남용과 관련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되어야 함
- 비연방 기금 25%에서 마련되어야 하는 주정부의 부가적인 임의재량 기금의 3.3% 또한 전술된 활동들에 반드시 할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 PSSF 포괄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
- □ PSSF 포괄보조금사업은 2006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프로그램사정 평가(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에서 '대체로 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평가보고서는 the Child and Family Service Review(CFSR)가 표적으로 하는 주정 부의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행 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특히 PSSF 포괄보조금사업은 각 주정부의 CFSR 프로그램 향상 계획(Program Improvement Plans, PIPs)의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개별 단위 프로그램의 향상 계획(Program Improvement Plans, PIPs)의 개발 에 따른 새로운 커리큘럼 사용을 위한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민간기관 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O PSSF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Child and Family Service Review(CFSR) 이외에 핵심적인 성과지표는 위탁가정 배치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후견인 또는 입양의 성사여부임
 - 연방 보건복지부(DHHS)의 아동가족청(ACF)은 요보호 아동이 입양 또는 후견 인에게 맡겨짐으로써 영구적인 보호를 획득한 비율을 2002년의 31%에서 2006 년까지 35%로 증가시키기를 목표로 제시해 왔음
 - PSSF 포괄보조금 사업을 통해 동 목표를 초과하여 2년 내에 영구적 보호를 획득한 아동의 비율은 2006년 39.7%로 나타났음
 - 한편 CFSR 과정에서 사용된 전체 주정부의 평가자료 프로파일은 사례관리 대 상의 종결사유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주별 재입소 통계와 연결된 이 자료는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위탁보호 아동의 영구적 보호 성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됨

- 아동가족청(ACF)은 PSSF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원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요보호 아동이 입양 또는 후견인에게 맡겨진 이후, 2년 이내에 영구적인 보호를 획득하는 비율을 2009년까지 목표치인 38%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제2절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실태

- □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관련 포괄보조금제도의 세부 운영실태를 주정부와 지방 정부(county government)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사례중심으로 논의하였음
- 주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는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이하 NC) 주정부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음
-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는 조지아주(Georgia, 이하 GA)에 위치한 Fulton County정부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분석을 시도하였음
-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사례분석은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일반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관련 정책여건을 파악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관점에서 연방정부와의 행정적 관계 및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주정부 및 서비스 공급자와의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사회서비스 관련 다양한 형태의 포괄보조금제도 중에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SBG)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을 미리 밝혀둠

- 1. North Carolina 주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 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지역특성
 - 1) 인구사회학적 배경
- □ 미국 센서스 자료의 2006년도 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NC주의 총 인구는 9.061,032명이며 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전체 주 인구의 6.9%, 65세 이상 노인 의 비율은 6.9%를 차지하고 있음
 - 확인 가능한 최근의 자료로서 2000년도 센서의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5세 이 상 장애인의 수는 1,540,365명이며, 5~20세 사이 인구 중 장애를 가진 비율은 전체 인구의 8.5% 수준이었음
 -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장애를 가진 비율은 45.7%였으며, 21~64세 사이 성인 장애인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은 57.9%였음
 - 2004년 조사에 따르면 빈곤선 아래에 해당되는 인구는 13.8%(1,247,292명)로 당 시 미국 전체의 빈곤인구 12.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인구는 1,550,340명임(사회보장청, 2006)
 - 사회보장 수급자들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자 25%, 기혼자 56.3%, 이혼자 9.0%, 사별 6.8%, 별거 3.0%였음
 - 또한 사회보장 수급자 중에서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613,366명이며 이 중 맞벌이 부부는 61.2%임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49.7%(79,810명)였으며, 빈곤인구는 NC 주의 북서부 지역과 남동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그림 3-5 참조)

Projected % Increase by Age Category 2000-2030 55% Total Age 65+ 128% 44% Age 18-64 Age 0-17 46% 0% 20% 40% 60% 80% 100% 120% 140% ■ % Increase 2000-2030

[그림 3-4] 노스캐롤라이나 연령대별 인구 추계 2000-2030

자료: DHHS Division of Aging, NC Data Center, 2007.

- 1990년 이후 NC의 인구는 6.6백만 명에서 8.5백만 명으로 22%나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백만 명 이상은 이민자였음
- 인구증가는 건설 및 하이테크 산업부문에서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NC주를 은퇴 후 삶을 위한 매력적인 지역으로 생각했던 노년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음
- 인구규모의 확대 및 인구구조의 변동은 대다수의 NC 주민의 과세표준과 특혜를 확장시켰지만, 동시에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관련 주정부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NC의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섬유, 가구, 그리고 담배산업의 중요성이 유지되는
 반면, 이러한 산업은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마주쳐 NC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 담배산업의 경우, 정부 규제, 집단소송,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등은 생산 인원의 대폭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림 3-5] 빈곤선 이하 인구가 많은 NC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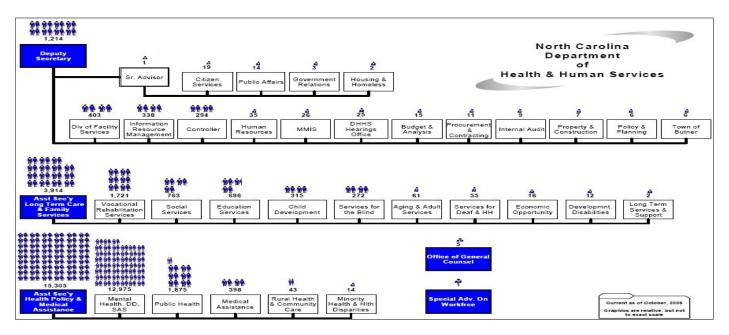
- 실직노동자들은 대부분 신산업 부문인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업, 컴퓨터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자, 관광과 같은 주 경제의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적합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취업훈련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근에 필요한 자원이 거의 없는 실직 노동자들 에게는 신산업 부문에 대한 지리적으로 접근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음
- □ 한부모 가정, 고등학교를 중퇴한 십대 청소년 인구, 영어구사에 어려움을 가진 이민가족 및 이들 자녀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약물남용, 특히 각성제 (methamphetamine) 사용 및 제조가 NC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NC 주의 인구구성 중 군인 인구가 특히 많은 특성 때문에, 걸프전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주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 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음

- NC 보건복지서비스부(DHHS)가 전략적 정책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06년도 부처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NC 주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인구고령화 및 영어소통이 어려운 히스패닉 중심의 이민인구 급증
-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수급 인구의 증가
- 주정부 예산의 삭감,
- 주경제의 주축을 이끌었던 산업의 침체에 따른 실업, 해고노동자 증가, 공장 폐업 등이 지적되었음
- NC DHHS에 소속된 사회서비스국(DSS) 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장 중 요한 사회복지 정책이슈는 빈곤률의 증가,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 실업률 증 가, 학교 중퇴 십대 청소년의 문제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이었음
- NC의 교육,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는 733,440 명으로 전체 산업인력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
- 2) 사회서비스 관련 NC 주정부의 행정체계
- □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복지부(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NC-DHHS)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단일 지정기관임
 - 주정부 회계연도(State Fiscal Year, SFY)를 기준으로 1980년대 초반(1980~1984 년까지)에 NC-DHHS는 하위 조직인 사회서비스국(Division of Social Services)에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관련 행정책임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국(DSS)에 위임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의 운영은 사회서비스국(DSS)의 기타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 정책기준과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SSBG를 적용 서비스의 정의,12)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비용의설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12) [}부록 3] SSBG Uniform Definition of Services 참고

- 사회서비스국(DSS)의 조직운영 목표는 주 전체 인구의 자급자족(self- sufficiency), 안전, 그리고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안녕을 성취하도록 최상의 가족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국(DSS)은 모든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가족중심의 실 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족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극히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NC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주정부의 감 독과 지방(county)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짐
-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프로그램 운영재정, 관련 정책의 집행 및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등을 제공하는 동안 모든 주정부들의 프로그램들을 인가 하며, 관련 사업규정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재정을 마련함
- 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급여의 실제적인 전달은 주 관할 내 100개의 지방 정부(county governments) 사회서비스 부서와 비영리 기관들에 의해 수행됨
- 사회서비스국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담당 자나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감독, 정책,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필요한 자문 을 제공함
-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 가정유지 및 지원 서비스(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 위탁보호 서비스(Foster Care Services) 및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 입양서비스(Adoption Services)
- 푸드 스탬프(Food Stamps)
- 저소득 가정 연료비 지원(Low Income Energy Assistance)
- 피난민 지원(Refugee Assistance)
- 고용지원서비스(Work First)
- 입양가정 아동양육비 집행 서비스(Child Support Services)

[그림 3-6] NC 주정부 보건복지부(N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조직도



- 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현황
-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연방정부가 50개 주별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하고 있으며, 1년에 4번에 걸쳐 분기별로 연방에 서 주정부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
 - 주정부는 연방보조금에 대한 매칭(matching)의 의무는 없고, 연방정부로부터 할 당받은 TANF기금의 총 30%까지 CCDBG 또는 SSBG에 이전할 수 있으며, SSBG 에 대한 이전은 10%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NC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각 회계연도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전예산보 고서(Pre-Expenditure Report)를 제출하며 이것이 곧 포괄보조금 신청서를 대신함
 - 사전예산보고서는 포괄보조금을 이용하여 제공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유형 과 서비스 대상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 NC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포괄보조금의 집행을 통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서 비스 공급과정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포괄보조금 운영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서(Post- Expenditure Report, 또는 Annual Report)를 제출해야 함¹³⁾
- NC 주정부는 연방 회계연도 2008/09년도에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으로 50,007 천 달러를 할당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약15,910천 달러가 TANF로부터 이전될 예정임
- 2006/07 연방 회계연도의 이월금 431천 달러를 포함하여 SSGB 총 규모는 66,347천 달러 규모가 될 예정임
 - 이는 2006/07 연방 회계연도의 총 SSBG 규모 62,545천 달러보다 3,802천 달러(전 년 대비 약 6%p) 증가한 수준임
 - 2008/09회계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포괄보조금의 총 규모는 875,837천 달러인데, 이 가운데 SSBG가 약 7.6%를 차지함

¹³⁾ 본 보고서의 [그림 3-3] SSBG 보고양식 OMB No. 0970-0234 (Post-expenditure Reporting Form) 참고

(단위: \$, %)

포괄보조금 분류	금액	비율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TANF)	378,018,805	43.2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Block Grant (CCDBG)	283,722,265	32.4
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66,347,353	7.6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Block Grant	48,702,674	5.6
Low energy Block Grant	46,882,504	5.4
Mental Health Services Block Grant	12,676,923	2.0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t	17,945,300	2.0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17,847,392	2.0
Preventive Health Services Block Grant	3,694,073	0.4
·····································	875,837,289	100.0

자료: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2008)

- □ NC 주정부는 SSBG에 의해 제공 가능한 29개 서비스 유형 중에서, 13개 서비스 에 대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방정부(county government)를 통해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13개 의무제공 서비스 유형 중에서 5개 서비스는 주정부 법에 의해 지방정부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성인 위탁보호 서비스(Forster Care Adult)
 - 아동 위탁보호 서비스(Forster Care Children)
 - 성인 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s)
 - 아동 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 입양 서비스(Adoption Services)
 - 기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

- NC 주에서는 최근 SSBG 가운데 많은 금액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아동 주간보 육서비스와 노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사용 되어왔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NC에서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의 확충은 1996년 PRWORA를 통한 복지개혁의 주요 목표인 수급 자에서 근로자로의 탈출과 고용 유지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SSBG는 아동 돌봄과 아동학대 또는 방임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가족 지원 자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 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늘어 나고 있는데, SSBG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재가서비스에 In-Home Aide Services(재가서비스 도우미), Adult Day Care(성인 주간보호), Preparation and Delivery of Meals(식사배달), 및 Housing and Home Improvement(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등이 포함됨

<표 3-8> 수급자격별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NC SSBG를 이용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기준 소득의 60%미만		기준 소득의 80~100%	소득 구분 없음
1. Adjustment Services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	Χ	Χ	Χ	Χ
2. Adoption Services **	Χ	Χ	Χ	Χ
3. Adult Placement Services *	Χ	Χ	Χ	Χ
4. Community Living Services	Χ	Χ	Χ	Χ
5. Day Care Services for Adults	Χ	Χ	Χ	Χ
6. Child Care Services *	Х	Χ	Х	Х
7. Children and Adults Needing Mental Heal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or Substance Abuse Services	X	X	Χ	Χ
8. Delinquency Prevention Services	Χ	Χ	Χ	Χ

9. Employment and Training Support Services	Χ	Χ	Χ	Χ
10. Family Planning Services *	Χ	Χ	Χ	Χ
11.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Х	Χ	Χ	Χ
12. Family Support Services	Χ	Χ	Χ	Χ
13. Foster Care Services for Adults **	Χ	Χ	Χ	Χ
14. Foster Care Services for Children **	Χ	Χ	Χ	Χ
15. Health Support Services * (sterilization component is optional)	Χ	Χ	Χ	Χ
16. Home Health Services includes Skilled Nursing, Physical Therapy, Speech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Medical Social Services, and Nutrition Care				Х
17. Housing and Home Improvement Services	Χ	Χ	Χ	Χ
18.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Services *	Χ	Χ	Χ	Χ
19. In-Home Aide Services *	Χ	Χ	Χ	Χ
20. In-Home Aide Services for the Blind *	Χ	Χ	Χ	Χ
21.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Х	Χ	Χ	Χ
22. Personal and Family Counseling	Χ	Χ	Χ	Χ
23. Preparation and Delivery of Meals	Χ	Χ	Χ	Χ
24. Problem Pregnancy Services	Χ	Χ	Χ	Χ
25. Protective Services for Adults **	Χ	Χ	Χ	Χ
26. Protective Services for Children **	Χ	Χ	Χ	Χ
27. Residential Treatment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Χ	Χ	Χ	Χ
28. Respite Care Services	Χ	Χ	Χ	Χ
29. Transportation Services	Χ			
30. Youth Services	Χ	Χ	Χ	Χ
30. Youth Services	Χ	Χ	Χ	Χ

주: *는 13개 의무제공 서비스유형에 포함되며, **의 경우 NC 주정부 법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서비스 제공의무가 규정된 서비스 유형임.

- 2.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사례
- □ 본 절에서는 조지아주(Georgia State, 이하 GA)의 Fulton County를 중심으로 지방 정부(county government) 단위에서의 보조금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조금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 고, 그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지침 등을 살펴보았음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보조금의 전달은 우선 지방정부(county department)가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Fulton County 해당 부처(department) 로 전달하고, 담당사업별 하위조직을 통해 서비스 공급 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에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Fulton County가 위치한 GA주의 보조금 운영·전달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음
- 가. 조지아 주정부의 연방보조금 규모
- □ 2007년 GA주정부에 지급된 전체 포괄보조금액은 100.827천 달러로 당해 연도 미국 전체 포괄보조금 4,451,444천 달러의 2.27%를 차지하는 규모였음
 - 한편, GA주정부에 전달된 2007년도 전체 연방보조금은 55,602,924천 달러로 당 해 연도 미국 전체 보조금의 2.3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연방보조금 이외 기 타 정부 보조금은 1,482천 달러로 미국 전체 정부보조금의 1.94%에 해당하였음
- GA주정부의 보조금 가운데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은 100,827천 달러로 전체 보조금의 0.18%를 차지하였음
- 주요 포괄보조금에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지역발전 포괄보조금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CDBG), 아동보육 및 발달지원서비스 포괄보조 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등이 포함됨(표 3-10 참조)

- 2007년 연방정부가 집행한 SSBG 1,956,006천 달러 중에서 GA주정부에 55,155
 천 달러가 전달되었으며, 이는 전체 SSBG의 2.82%를 차지하는 액수였음
 - 앞서 전술된 바와 같이, SSBG는 주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각 주정부에 할당되는데, 2007년 SSBG가 가장 많이 지급된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 207,165천 달러(전체 SSBG의 10.59%)를 지급 받았으며,
 - SSBG 규모가 가장 적은 알라스카 주는 2,906천 달러(전체 SSBG의 0.15%)를 지급받았음(US Department of Commerce, 2008)

<표 3-9> 2007년 Georgia 주 및 미국 보조금 종류 및 현황

(단위: 천 달러)

	ネ	총 보조금		연방보조금		기타 정부 보조금	
보조금 종류	2 TT-1		(Federal funding)		(Non-Federal Funding)		
	GA주	미국	GA주	미국	GA주	미국	
포괄 보조금 (Block Grant)	100,827	4,451,444	100,287	4,451,444	-	-	
표물라 보조금 (Formula Grant)	11,022,848	443,292,961	9,914,067	404,125,708	1,108,780	39,167,252	
사업보조금 (Project Grant)	2,178,115	97,900,633	1,990,198	86,859,252	187,918	11,041,382	
CO-OP Agreements ¹⁾	353,869	41,044,853	335,856	19,653130	18,013	21,391,723	
직접지원_특정보조금 (Direct Assistance_Specified Use)	2,234,708	131,203,648	2,230,502	130,973,169	4,206	230,477	
직접지원_일반보조금 (Direct Assistance_Urspecified Use)	17,986,950	678,935,310	17,984,964	678,801,412	1,985	133,898	
직접 대출 (Direct Loan)	522,687	15,143,510	512,687	9,320,504	10,000	127,006	
보증/비보험 대출 (Guaranteed/Uninsured Loans)	5,285,310	91,192,938	5,143,527	87,023,817	146,782	4,169,121	
보험 (Insurance)	15,917,664	856,703,006	15,913,555	856,607,153	4,109	95,854	
기타	488	75,201	406	71,437	82	3,814	
총 계	55,602,924	2,359,943,554	54,121,050	2,283,583,027	1,481,874	76,360,527	

주: 1) CO-OP Agreement란 수혜자에게 정부지원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federal agency)과 정부와의 계약을 의미. CO-OP Agreement를 맺은 기관은 정부의 지원이 구체적(contemplate)이지 않은 경우 보조금(grant)을 통해, 구체적(contemplated)인 경우 CO-OP Agreement를 통해 지원

자료: Federal Assistance Award Data System(2007),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 2006/07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의 총 CCDBG 2,062,081천 달러 가운데 GA주 정부에 \$75,707천 달러 (1.07%)가 지급되었음
- CCDBG 보조금은 연방정부의 의무 보조금(mandatory)14), 표물라(formula) 보조 금, 임의재량(discretionary)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표물라 방식에서 각 주에 배정되는 CCDBG는 주 전체 인구 중에서 13세 미만 아동인구 수에 비례해서 할당됨
- 2006/07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의 총 CSBG \$620,454천 달러 중에서 GA주정 부에 \$16,875천 달러(2.71%)가 지급되었음
- CSBG는 지역의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보조금을 이용 하여 지역사회에 고용지원, 교육, 소득보장, 주거지원, 영양지원, 건강 서비스 등 을 제공할 수 있음
- 2006/07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의 총 CDBG 규모는 10,898,801천 달러로 GA 주정부에는 \$116,990천 달러(1.07%)가 지급되었음
 - CDBG는 주전체 인구 중에서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이하 인구수 에 비례하여 각 주정부에 할당됨
 - CDBG가 가장 많이 지급된 주정부는 루이지애나 주로 \$4,519,032천 달러 (4.46%) 전달되었으며, 가장 적게 받은 주는 와이오밍 주로 \$8,567천 달러 (0.08%)가 지급되었음(US Department of Commerce, 2008)

¹⁴⁾ 의무(mandatory)는 기준연도 IV-A 아동 보호 연방 할당분에 따라 각 주에 지급될 금액이 정해진다. (http://www.acf.hhs.gov/programs/ccb/law/allocations/ccdf_calculations.htm)

<표 3-10> 연방보조금 대비 GA주정부의 SSBG, CCBG, CSBG, CCDBG 할당규모

(단위: \$, %)

(2006/07 회계연도 기준)	Georgia	전체 연방보조금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¹⁾ (Social Service Block Grant)	55,155,000 (2.82%)	1,956,006,000 (100.0%)
아동 보육서비스 관련 포괄보조금 ²⁾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75,706,524 (3.67%)	2,062,081,000 (100.0%)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³⁾ (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16,874,960 (2.71%)	620,453,900(100.0%)
지역발전 포괄보조금 ¹⁾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116,990,000 (1.07%)	10,898,801,000 (100.0%)

- 자료: 1) US Department of Commerce (2008), Federal Aid to States for Fiscal Year 2007
 -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07),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홈페이지, http://www.acf.hhs.gov/programs/ocs/csbg/allotmentsribes.html

나. Fulton County의 지역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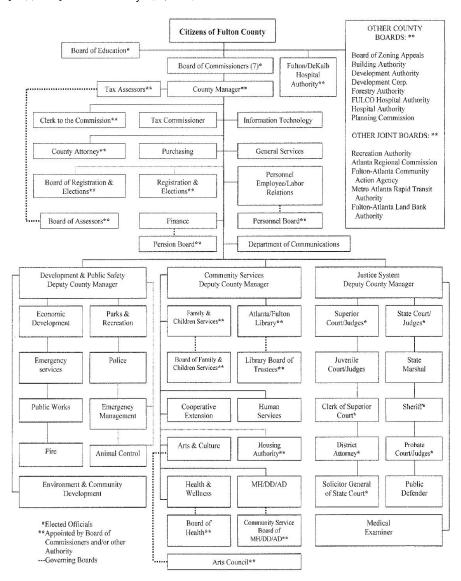
1) 인구사회학적 배경

- □ Fulton County는 GA주의 159개 지역(county) 중 하나로, 총 면적은 528.7mile²이며, 북부지역에 위치한 애틀랜타시(Atlanta City)가 Fulton County의 행정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07년도 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GA주의 총 인구는 9,544,750명으로 이 중 10.4%인 992,137명이 Fult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음
 - 연령별 인구비율은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7,730명(20.9%), 15세~64세 생산가 능인구가 706,419명(71.2%), 65세 노인 인구가 77,988명(7.9%)임

- 이 중 5세 이하 영유아 아동 인구는 71,865명 그리고 독거노인은 20,887명으로 집계되었음
- 인종별 인구비율은 백인이 481,129명(49.0%), 흑인이 423,97명(43.2%), 황인이 40,604(4.1%), 히스패닉이 80,928(8.2%)명임
- ─ 총 369,279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39,147가구로 이 중 한부모 남성가구 비율 은 14.6%, 한부모 여성가구 비율은 85.4%로 한부모 여성가구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음
- 2007년도 Fulton County의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0.7%를 차지하였고, 개인 빈곤율은 14.7%로 파악되었음
- 2007년도 미국의 평균 가구빈곤율이 9.8%, 개인빈곤율 13.3%와 비교하여 Fulton County의 빈곤율이 미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실정임
- 18세 이하 아동빈곤율은 20%,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11%로 집계되어 상대 적으로 아동빈곤율이 높고, 18세 이하 아동 양육가구의 빈곤율은 14.9%, 한부 모여성가구 빈곤율은 34.5%.로 집계되어 Fulton County의 경우 아동빈곤의 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총 369,279 가구 중 정부의 현금지원을 받는 수급가구는 4,553가구(전체 가구의 1.2%),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가구는 10,414가구(전체 가구의 2.8%)였음
- 지난 12개월 동안 Food Stamp를 받은 가구 수는 24,071(6.5%)로 집계됨
- 2005년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의하면 2005년 Fulton County 의 노숙자 수는 5,673명으로 파악되었고, 전체 노숙자 중 청소년 비율은 2.5%였음
- 2007년 US Census Bureau에 의하면 16세 이상 인구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 구는 총 535,856명으로 취업률은 69.6%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미국 평균 취업률 64.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Fulton County의 16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수는 39,242명으로 실업률은 7.3% 로 집계되었으며 여성 실업률은 7.4%였음

- 한편, 2006년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서비스청(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SAMHSA)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7월~2006년 2월 동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Fulton 지역주민은 총 3,796명이었음
- 2004년 Fulton County 아동방임 및 학대 신고 수는 총 7,199건으로 그 중 6,630 사례가 조사되었고, 학대의심 신고사례 중 3,048 사례가 아동방임 및 학대로 판 명되었음(Fulton County Demography Sketch, 2006)
- 지난 4년 동안 Fulton County 아동방임 및 학대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1~2004년 사이 신고사례수가 57% 증가하고, 아동방임 및 학대사례로 판명 된 건수는 63% 증가하였음
- 2) 사회서비스 관련 Fulton County 정부의 행정체계
- □ Fulton County의 지방정부는 총 7인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에서 지역의 정책, 예산, 발전계획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는데, 지역위원회 (Board of Commissioner)에서는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을 선출하여 지방정부 내의모든 부서(departments) 운영을 관장하고 있음(그림 3-7 참조)
-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 실에는 9개의 관할국(division)이 존재하며, 그 중 정부간협력행정국(Intergovernmental Affairs Division, IAD)에서 county 내 보조금 (grants)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Fulton County 정부의 각 부처(department)에서 Fulton County 중앙정부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역원장실의 정부간협력행정국(IAD)의 승 인을 최종 받아야 함

[그림 3-7] Fulton County 정부조직도



자료: Fulton County, Georgia(2006),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2006.

- 다. Fulton County 지방정부의 보조금 집행현황

1) GA 주정부에서 Fulton County 정부로의 포괄보조금 집행

Georgia State Government ⇒ Fulton County Government

- □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성격 및 지원가능 사업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각 주(state)정부의 사업담당 부처(department)에서 관리·운영함
 - SSBG, CCDBG, CSBG의 경우 Fulton County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에서, 그리고 CDBG의 경우 주택도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partment)에서 관리하고 있음
 - GA주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방정부 의 사업신청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전달함
 - 이 과정에서 주정부가 집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포괄보조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방보조금)은 합산되어 지방정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조금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
 - 즉, 주정부는 사업특성별 보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서, 포괄보조금의
 구분이 생략되고 "보조금(Grant)"라는 이름하에 집행·전달됨
 - 2007년 회계연도 기준, Fulton County가 지급받은 연방 보조금의 총액은
 \$3,578,847천 달러였음(US Census Bureau, Consolidated Federal Funds Report for Fiscal Year 2007)

○ GA주 관할의 모든 지방정부들은 Regional Assistance Program(RAP)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행정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에 보조금을 신청·접수해야 함

2) Fulton County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부(departments)로 보조금 집행 Fulton County Government ⇒ Fulton County Departments

- 사회서비스 제공을 일례로, 특정 사업과 관련된 county government의 해당부처 (department)는 지방 중앙정부(county government)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야 함
- 다음은 지방정부 해당 사업부처(department, 사회서비스의 경우 DHHS)에서 Fulton County 중앙정부에 보조금 신청과정 및 지급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 2003년 1월부터 연방 DHHS의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OMB)의 방침에 따라 모든 보조금 신청 부처(department)는 Dun and Bradstreet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DUNS) 번호를 부여받음
 - 동일한 사업부처(department)에서는 보조금 신청·지급·관리운영의 일관성 및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조회가 용이하도록 보조금을 신청 시 부여받은 DUNS 번호를 사용해야 함
 - 즉, DUNS는 개별 사업단위에서 보조금을 관리하게 하는 식별코드로 활용됨
- 신청서에는 보조금 사업의 필요성, 개입효과(통계), 목적, 사업방법, 사업평가,예산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됨
- 보조금 신청은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이 관장하는 Recess Agenda Meeting 마감 10일전에 Institute of Government Affaires(IGA)에 제출해야 함
- IGA에서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1차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지방 중앙정부 (county government)의 재정위원회(Finance Board)(그림 3-8 참조)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2차 심사를 실시함

- 이 과정에서 IGA와 Finance Board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 (department)는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필요한 내용을 수정해야 함
- IGA와 Fiance Board의 승인을 받은 보조금 신청서만이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의 Recess Agenda Meeting에 제출됨
-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의 승인을 받은 보조금 신청서는 지역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로 전달하여 최종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됨(그림 3-8 참조)
- 보조금 신청이 승인되고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지역위원장(County Manager) 내의 보조금 관리국(Grant Division)에서는 세부 예산서와 보조금 사용계약서를 비교 심사하여 그 결과를 10일 내에 신청부처(department)에 통보함
- 보조금 관리국(Grant Division)의 승인이 있은 후 사업부문별 예산 분석가 (budget analyst)는 3일 이내에 사업신청서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최초 제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 부처(department) 는 예산조정양식(Budget Adjustment Form)과 예산조정요구서를 보조금관리 국(Grant Division)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부서(department)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선 사용한 이후 보조금관리국(Grant Division)에 사업경비 상환을 요구함
 - county government에서 전달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경비 상환 형식(reimbursement)으로 지급됨
 - 상환요구는 보조금 지원계약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가능하며, 사업경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department)에서는 이를 보조금관리국(Grant Division)에 통보해야 함
-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부처(department)는 진행실적보고서(Programmatic Reports)를 보조금관리국(Grant Division)에 제출해야 함
 - 보조금 지급 만기일 60일 이전에 보조금관리국(Grant Division)은 해당 사업 부서(department)에 보조금 계약 만기 일정표를 발송함
 - 일정표에는 i) 이미 사용된 사업경비 주문서의 결제선 변경, ii) 진행 중인 송장(invoice)의 만기일, iii) charge-back 물품에 대한 제출 만기기간 등을 제

시하며, 보조금 지급 만기기간 이후의 보조금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상환하 지 않음

- 3) Fulton County 사업부처(department)에서 서비스 공급자에게로의 보조금 집행 Fulton County department ⇒ service providers(agencies)
- 보조금이 해당 사업부처(department)로 전달되면 각 사업부처(department)에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처 지급함
- Fulton County의 사회서비스부(Human Service Department, HSD)는 노인, 아동, 가족, 장애인, 노속인, 실업자,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6개의 국(office)으로 조직되어 있음
 - 노인국 (Office of Aging)
 - 아동·청소년국(Office of Children & Youth)
 - 장애인국 (Office of Disability Affairs)
 - 긴급지원 및 주거지원국 (Office of Emergency & Transitional Housing)
 - 고용지원국 (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
 - 계획수립 및 지역협력국 (Office of Planning and Community Partnership)
- Fulton County 사회서비스부(HSD)에서는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uman Service Grants Program)"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보조금을 전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uman Service Grants Program, HSGP)는 Fulton County에 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운영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SGP)의 4가지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음
 -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 보조금 지원을 위한 다층평가의 실시(Multi-level Evaluation)
 - 지역사회의 서비스 필요욕구의 우선순위에 근거 보조금 지급
 - 수립된(Established) 예산에 근거기반의 보조금 지급

-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SGP)은 Fulton County에서 노인, 청소년 및 가족, 장애인, 노숙자 및 주거개량, HIV/AIDS 관련 사업, 고용지원 등 총 6대 사업영역을 지원함
 - 다음 <표 3-11>은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SGP)이 지원하는 6대 사업영역별 지원되는 세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한 것임
- 회계연도 2007/08년에 총 140개 기관·단체가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SGP)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 대상영역별 HSGP 지원 기관 및 단체현황은 다음과 같음
 - 노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9개 기관 및 단체
 - 청소년 및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40개 기관 및 단체
 - 장애인 서비스 지원으로는 10개 기관 및 단체
 - 노숙 및 주거 서비스 지원으로는 50개 기관 및 단체
 - HIV/AIDS 서비스 지원으로는 11개 기관 및 단체
 - 고용 서비스 지원으로는 20개 기관 및 단체

<표 3-11> Human Service Grant Program 지원 사업영역

사업영역	사업목적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노인	55세 이상 지역 노인의 최적의 건강상태 및 독립적 생활 영위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대체 교통시설 (Transportation Alternative) 집안 보수 및 정원 손질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돌봄가족 지원 서비스
청소년 및 가족	출생부터 청년기까지 지역 젊음이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발달, 그들의 잠재적 능력 달성	 취업 준비 훈련 일자리 알선 직업 훈련 컴퓨터 교육 GED & 평생교육
장애인	지역 장애인들이 최적의 삶의 질을 누리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회의 접근성 보장	· 거주환경 개선 · 주거 기회 접근성 · 고용지원 · 법률지원 및 옹호(advocacy) · 사회통합 · 장애인의 특별 욕구(special needs) 지원 프로그램
노숙 및 주거	지역 주민이 자신이 영구 거주지를 소유·유지 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 습득	· 영구 가주지(permanent housing) 지원 · 임시 거주지(transitional housing) · 긴급 피난처(emergency shelter) · 지원 서비스 · 강제퇴거 방지
HIV/AIDS	HIV 감염 및 점염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이미 AIDS에 감염된 사람의 경우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감정적 및 의료적 지원	 HIV 예방 프로그램 ·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 주거 기회 (housing opportunity) · 약물치료 · 사례관리 · 대중인식 / 교육
고 용	자립을 위한 고용 기술 및 교육 제공	 취업 준비 훈련 일자리 알선 직업 훈련 컴퓨터 교육 GED & 평생교육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Grant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eorgia

○ 다음에서는 사회서비스보조금사업(HSGP)의 보조금 신청····>집행····>평가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i) 신청 자격요건

-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성격이 다음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자격이 없음
 - 해당 프로그램이 건설 관련 프로그램일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이 회원제로 운영될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 501(c) 3¹⁵⁾ 기금자(funder)일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 종교적 성격을 띨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 장학 사업일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이 적자 부족(deficit reduction)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

ii) 보조금의 신청

-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HSG)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보조금 지원경험이 있는 경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가 상이함
- <표 3-12>은 보조금 신청 시설의 특성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 Fulton County Human Service Grant의 신청 접수는 사회서비스부(Human Service Department)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신청 전자디스켓(Diskette)에 저장해서 제출함
 - 기존 보조금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 디스켓은 신규신청자와 달리 "서비스 제 공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 공급기관/단체의 주요 수입", "기관/단체 운영 비", "기관/단체 보조금" 등 최초 신청당시 파악된 문항들이 제외되어 있음

^{15) 501(}c)는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조항으로, 연방정부 수입을 면세 받는 28개 비영리기관 목록임.

<표 3-12>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신청시 제출 서류목록

 구분	제출 서류
	· 표지(cover page), 이력서, 확인서(Assurance), 예산서, 신청 문항, (그리고 만약 해당 사업이 개인 지원일 경우 직업설명서) 각 4부
	·표지(cover page)와 확인서(Assurance)는 서명 필 요구
공통	· 보조금 신청 디스켓 ²⁾
	· Georgia Security and Immigration Compliance Act Documents: (예) Declaration of Employee Number Categories, Georgia Security and Immigration Contractor Affidavit, (그리고 만약 해당된다면 Georgia Security and Immigration Subcontractor Affidavit)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 (c) 3에 의한 비영리 기관 및 면세를 입증하는 Internal Revenue Service로부터의 서찰
	· 기관 증명서(Certificate), Article of Incorporation, Secretary of State_Georgia로 부터의 Amendment · 최근 2년간 공인된 공공 회계원으로부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감사 증명서. 감사 증명서는 시설의 재정과 관련 독립 감사원을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 어야 함 ※독립 감사원이란 감사를 요구한 피요구 시설과 제 3자 관계인 감사원임
	· 가장 최근의 Board Meeting Minutes 사본과 해당시설이 Human Service Grant 계약이 가능한 등록 시설임을 입증해주는 현재 활동 중인 Board Members 목록
보조금 신규 신청의 경우	• 현재 다른 2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있는 서류 (예: Fulton County 지역이 아닌 후원자(funder)로부터의 후원 지급각서 도는 지급서 사본) • 시설 면허증/인증서/허가서
20101	·시설/프로그램 조직도
	·시설/프로그램 담당 조직원 이력서 ·프로그램 평가서 및 측정지표 사본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 Human Service Grant 보조금을 신청한 시설일 경우 "Bright from the Start: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 에서 공인하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①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으로부터의 인증서 ②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으로부터 인증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인증서가 면제된다는 증명서 ③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의 관할 대상이 아닌 사업

	여서 인증서 또는 면제서가 요구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보조금 지원 경험이 있는 경우 (기존지원의 경우)	·현재 Fulton County Basic Standard 인증서 사본
	·최근 2년간 공인된 공공 회계원으로부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감사 증명서. 감사 증명서는 시설의 재정과 관련 독립 감사원을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 어야 함 ※독립 감사원이란 감사를 요구한 피요구 시설과 제 3자 관계인 감사원임
	·현재 다른 2 곳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있는 서류 (예: Fulton County 지역이 아닌 후원자(funder)로부터의 후원 지급각서 도는 지급서 사본)
	·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 Human Service Grant 보조금을 신청한 시설일 경우 "Bright from the Start: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 에서 공인하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함 ①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으로부터의 인증서 ②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으로부터 인증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인증서가 면제된다는 증명서 ③ Georgia Department of Early Care and Learning의 관할 대상이 아닌 사업 여서 인증서 또는 면제서가 요구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주: 1) Human Service Grant 신청서는 전자 디스켓 형식으로 [부록 6] 참조.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Grant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eorgia

- <표 3-13>는 보조금 신청 디스켓의 내용을 재구분해서 정리한 것으로 보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임¹⁶

<표 3-13>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신청 디스켓 구성

구	분	상 세 내 용	
	∞ 시설 소개	· 기관명 · 기관의 목적 · 하청기관(Subcontractor agency) · 기관주소 · 제공하는 서비스 agency) 유무 및 하청기 · 기관 연락처 · 조직도 및 직원 규모 관 서비스 위탁율 %	
전반적인 시설	⇔ 시설 클라이언트 수 · 기관의 클라이언트 중 Fulton County 지역주민 수		
관련	∞ 시설의 주요 수입	·기관의 주요 수입원	
	∞ 시설 운영비	· 운영비	
	⇔ 시설 보조금(fund)	·보조금 종류 및 금액 ·보조금 삭감/중지 유무 및 금액	

¹⁶⁾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신청 디스켓의 원본은 [부록 6] 참조

		・보조금 원(Fund source) ・보조금 식감/중지를 충당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역량 구축 (Capacity Building)	· 직원 교육, 모금활동 등
		· 프로그램 이름 · 서비스 클라이언트 특성(성별, 연령, 인종 등) · 서비스 제공 지역 · 서비스 클라이언트 신청자격조건
	≫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및 증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
	∞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접근성	·(신체 및 정신질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교통 편의, 제도 지원 등 서비스 접근성 노력 ·프로그램 서비스 홍보
	∞ 투입 자원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할 자원 종류 및 수준(예: 자금, 직원, 자원봉사, 시간) ·파트너 기관
보조금을 신청한	∞ 기대효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클라이언트 수 ·기대 혜택 ·예상되는 비용 ·기대 혜택 수준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 예산	·프로그램 세입세출안 ·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향후 추가적 보조금 계획
시미그 원인		· 결과지표(Impart measure): 서비스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행동, 기술, 지식, 기능 등의 변화 측정 · 지역변화 지표(influence measure): 서비스가 지역의 환경, 제도, 정
		책 등에 가져온 변화 측정
	∞ 성과평가 지표	·지례효과 지표(Leverage measure): Human Service Grant에서 비롯 된 추가 보조금, 현물 지원, 자원봉사 시간 등
		전 구가 모조고, 연할 시원, 사원당사 시신 중 ※현물 지원 및 자원봉사 시간은 \$로 전환해서 계산.(예: Fulton County에
		서 3명의 자원봉사가 토요일 각각 3시간 보조교사로 자원봉사 했을 경우=
		\$ 81로 환산해서 계산. 보조교사 공식 시급 \$9/hour)
	∞ 성과평가의 설계	·성과평가 방법(성과 자료수집, 성과 관리, 성과 보고, 서베이 등) ※예: 프로그램 개입 사전 사후 검사 등
	⇔ 수정(amendment)	· Human Service Grant로 인해 혜택을 받는 클라이언트 수 · 보조금 신청 금액을 삭감됐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주: Fulton County Human Service Grant Application Diskette를 재구분해서 정리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Grant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eorgia

iii) 보조금 집행 일정표

- Fulton County government의 회계연도 2008/09년의 사회서비스보조금(HSG)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그 일정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1차 지급은 6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보조금 지급 송장(invoice) 서류가 사회서비스부(Human Service Department) 에서 전달되면 약 8주~10주 사이에 보조금이 제공자에게 지급됨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4 분기별로 분기성과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함¹⁷)
 - 분기별 성과보고서를 미제출 할 경우, 2차 보조금 지급 지연 및 보조금이 중단됨
- 사회서비스부(Human Service Department)의 담당자는 서비스 제공현장의 방문 및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시설/ 프로그램을 모리터닝 함
- Fulton County 정부는 매년 사회서비스보조금(HSG)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
 - Fulton County 재정부(Finance Department)는 사회서비스보조금(HSG) 지원 대 상자(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함

^{17) [}부록 7]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orm의 분기별 성과보고 양식 참조.

<표 3-14> 사회서비스보조금(Human Service Grant) 집행 일정

날짜	내용
2007.12. ~ 2008.1.	· 신청서가 각 시설로 발송됨. · 보조금 종류, 가이드라인, 신청 과정 등이 공고
2008.1.10. & 2008.1.17.	·신규 시설 및 기존 시설 Human Service Grant Workshop
2008.2.15.	·신청 접수 마감일, 3:00pm
2008.2.	· 신청서 심사 시작
2008.3.	· Human Service Department's Coordinating Committee(HSCC) 심사 및 Funding Allocation Protocol 심사
2008. 4.	· 추천 신청서가 Fulton County 지역위원회(Board Commissioner)의 최종 심사 및 승인을 위해 전달됨. 최종 선택된 시설은 전산 및 서 류로 통보
2008.4/5	·Fulton County Human Service Department와 서비스 시설간 계약 체결
2008.6.	・1차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총 2차례에 나누어서 지급됨. 1차 때 계약보조금액의 1/2를 지급되고 2차 때 나머지 1/2이 지급
2008.8.	·보조금 지급 시설 연차회의
2008.10.9.	·제 1분기 성과 보고서 ¹⁾ 제출 마감일
2009.1.9.	·제 2분기 성과 보고서 ¹⁾ 제출 마감일 ·2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2009.2.1.	・2차 보조금 지급 ※ 2차 보조금은 2009년 Fulton County 예산 승인 이후에 지급됨. 만약 보조금에 변경 이 있을 경우 해당시설에 이를 통보 해당시설의 수락이 있은 후 지급됨
2009.4.9	·제 3분기 성과 보고서 ¹⁾ 제출 마감일
2009.7.9	·제 4분기 성과 보고서 ¹⁾ 제출 마감일

주: 1) 분기별 성과 보고서 원본은 [부록 7] 참고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Grant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eorgia

iv) 사회서비스보조금(HSG) 신청서의 심사

- Human Service Grant는 총 6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걸침
- 1단계: 신청 자격 심사(eligibility review)
 - 계획 수립 및 지역 협력국(Office of Planning and Community Partnership)은 해당 신청서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심사
 - 신청 제출 요구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진 서류가 있으면 해당 신청서는 접수 에서 제외되어 다음 심사 단계로 전달되지 않음
- 2단계: Human Service Department의 6개 국(Office)장 심사
 - 신청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Human Service Department 내 6개 사업 국장 이 신청서를 심사
 - 해당 신청서가 노인 프로그램 사업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 Human Service Department 내 노인국 국장이 해당 신청서의 심사를 담당
 - 프로그램과 지역의 욕구에 해박한 Human Service Department 국장들이 심사 과정에 참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심사가 가능케 됨
 - 국장들은 신청서 심사 기준 지침서에 따라 신청서를 점수화18)
- 3 단계: Human Service Coordinating Committee(HSCC) 심사
 - HSCC는 사회서비스 쟁점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관심을 가진 Fulton County 지역 자원봉사 조직으로,
 - 외부 독립 조직의 심사참여는 잠재적 편견을 배제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가능케 함
 - HSCC는 6개 사업 영역에 따라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데 보조금 신청 사업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해당 그룹에서 신청서를 심사함
 - 국장 심사와 동일한 신청서 심사 기준 지침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점수화19

^{18) [}부록 8] 보조금 신청서 평가도구: Grant Proposal Scoring Tool 참고.

^{19) [}부록 8] 보조금 신청서 평가도구: Grant Proposal Scoring Tool 참고.

- 동일한 신청서를 Human Service Department 국장 단계에서 그리고 HSCC 단계에서 이중 심사하여 두 심사결과를 총합함
- 4 단계: Funding Allocation Protocol 심사
 - 국장 심사와 HSCC 심사 점수를 더한 총합점수를 가지고 "보조금 우선지급 쟁점(Priority Funding issues)" 및 6개 사업영역에 따라 총합점수를 내림순으 로 순위화
 - 보조금 우선지급 관련 쟁점사항(Priority Funding issues): 매년 사회서비스부 (HSD)는 당해 보조금 우선지급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설정하여,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우선 결정함
 - 2008/09년 보조금 우선지급 쟁점(Priority Funding issues)은 (i)빈곤감소 (ii)지속적이고(sustainable) 구입가능(affordable)한 주거마련, (iii)가족안정(family stability)의 증진 등이었음
 - Human Service Grant가 지원하는 6개 사업영역: 6개 사업영역 (i)노인 (ii)청소년 및 가족 (iii)장애인 (iv)노숙 및 주거 (v)HIV/AIDS (vi)고용에 따라 신청자들의 총합점수를 순위화
 - 보조금 배분 프로토콜 (Funding Allocation Protocol) 심사 단계에서는 보조금 신청 금액를 심사하는데, 해당 신청서가 신청 보조금 금액에 대한 적절하고 타당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금액이 삭감, 지급됨
- 5단계 Senior Management Team 심사
 - Senior Management Team에서는 6개 사업 영역에 따른 보조금 분배 현황 등을 심사, 최적 배분액 및 방법을 결정
- 6단계 Fulton County Board of Commissioner 심사: Human Service Grant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승인을 담당

v) 사회서비스보조금(HSG)의 집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 보조금이 지급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크게 ① 분기별 성과보고서 와 ② Human Service Grant Program 성취평가 지표를 통해서 이루어짐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총 4번의 분기별 성과보고서를 10월, 2월, 4월, 7월 에 제출해야 함²⁰)
 - 분기별 성과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표 3-15>의 확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함

<표 3-15> 사회서비스보조금(HSG) 사업의 분기별 보고서 확인사항

구분	문항
	· 결과지표(Impart measure): 서비스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행동, 기술, 지식, 기능 등의 변화 측정
성가평가지표	·지역변화 지표(influence measure): 서비스가 지역의 환경, 제도, 정책 등에 가져온 변화 측정
	·지례효과 지표(Leverage measure): Human Service Grant로 인해서 유발 된 추가적 보조금, 현물 지원, 자원봉사 시간 등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해당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한 클라이언트 수
보조금 삭감	·해당 기간 동안 보조금 삭감 유무 여부, 삭감 금액, 삭감 이유
달성되지 않은 욕구	·해당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한 욕구들(예: 서비스 대기 인원 수, 거절당한 사람수, 재신청 사람 수 등)
행정상의 변동	·행정상의 중요 변동 사항 (예: 시설 주소, 직원, 클라이언트 수, 사건 등)
경비지출	·해당 기간 동안 경비지출 내역 ·Human Service Grant 보조금 경비지출 경과
주목할 만한 성취	·해당 기간 동안의 주목할 만한 성취 (예: 상 수여, 새로운 파트너 체결, 새로 운 협력기간 체결 등)
	· Human Service Department의 Research and Program Information Depot(RAPID) 참고 여부 및 도움 여부
피드백(feedback)	※RAPID는 Fulton County Human Service Department에서 운영하는 지식관리 사업으로 Human Service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연구자료 및 현황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Human Service Grant Program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Department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ulton County, Georgia 재정

²⁰⁾ 분기별 성과보고서는 [부록 7]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orm의 양식 참조.

리

- Fulton County의 사회서비스부(HSD)는 사회서비스보조금(HSG)이 지원하는 6개 사업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과평가 지표를 지원대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표 3-16> 사회서비스보조금(HSG) 6개 사업영역별 성과평가 지표

서비스 영역	프로그램 성취 평가 지표
노인	• 55세 이상 Fulton County 지역 노인 중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 • 55세 이상 Fulton County 지역 노인 중 돌봄인력(caregiver)과 거주하는 비율 • 55세 이상 Fulton County 지역 노인 중 요양원(nursing home)에 거주하는 비율 • 55세 이상 Fulton County 지역 노인 중 교통 이동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 • 55세 이상 Fulton County 지역 노인 중 ADL을 경험하는 비율
청소년 및 가족	· 상당한 수준의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수 · 0~17세 사이 아동 중 성장발달 저해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 · 5~12세 아동 중 방과 후 보호자 및 돌보자에 의해 돌봄을 받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 · 고등학교 졸업 비율 · 고등학교 자퇴 비율
장애인	·SSI 수급자 수 ·특수교육을 받고 있거나 욕구가 있는 장애아동 수 ·일반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 비율 ·성인 장애인의 취업률 ·성인 장애인 중 생계유지 가능 소득(living wage)을 얻는 장애인의 비율 ·빈곤선 아래에 있는 장애인 수
노숙 및 주거	- 일반 지표 • Fulton County 노숙자 수 •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가구원 수 • 지난 12개월 동안 노숙경험이 있는 동행이 없는 개인 수 • 지난 12개월 동안 "집 없음(homelessness)"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져야 했던 아동의 수 - 의료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과 관련 지표 •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의료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 대기자 수 •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 치료 대기자 수 • 지난 12개월 동안 정신병원(psychiatric institution)에 입원한 수 • 지난 12개월 동안 정신병원(psychiatric institution)에서 퇴원한 사람 수

	- 노숙 관련 지표 • 빈곤인구 • 건강보험이 없는 성인 인구 • 지난 12개월 동안 저당채무자(foreclosure) 수 • 지난 12개월 강제퇴출 당한 개인 및 가구원 수
HIV/AIDS	 · Fulton County 인구 중 HIV 신규 발견자 비율 · HIV 보유자 수 · AIDS 감염자 수 · AIDS 감염자 중 안전하고 안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는 비율
고용	· Fulton County 실업률 · 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도 아니고 취업 상태도 아닌 청년(청소년) 비율 · 실업급여 수급률

자료: 2008~2009 Human Services Grant Application Instruction Manual, Fulton County, Georgia

제4장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개편의 과제

제1절 한국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쟁점

- □ 2005년 국고보조금사업 정리 차원에서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복지부 문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새로운 복지수요 및 제도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이 200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재 정의 문제는 사회복지부문, 지방재정부문 각각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논의되 고 있음
- 본 절에서는 미국의 포괄보조금 운영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서비 스혁신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에 전제가 되는 검토 의 과정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체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고,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진행된 제도 변화의 내용과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함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새로운 역할관계를 모색케 하는 사업방식으로서, 중앙정부의 책임 유지와 지자체의 기획·사업운 영 역량, 자율성·재량권의 확대라는 다차원적인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재정방식,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사업관리방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간 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쟁점이 고려되어야 함
- 무엇보다, 재정의 정부간 분담과 운영방식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는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몇 년간 매우 복잡다기하게 전개된 사회복

- 지부문의 서비스 예산 현황과 함께 지방예산의 구조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제도의 변화와 분권화, 지방화를 통한 재정분권제도의 변화라
 는 두 축에 대한 이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구조
- 가. 지방재정의 구조와 사회복지재정 현황
-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현황
 - 2008년 현재 국가예산은 195조, 지방예산은 124조로서, 중앙정부예산 : 지자체예산 : 지방교육예산 비율은 54.5 : 34.9 : 10.6 (행정안전부, 2008)
 - 지방예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지방세의 비중이 약 8:2인 점을 감안할 때, 지방의 자체재원의 증가는 현안과제가 되고 있음
 - 지방예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자체수입재원과 의존수입재원은 전체 지방 예산 124조9,666억원(2008) 중 각각 58.9%, 38.3%를 차지함
 - 자체수입의 증가는 2006년 6.3%, 2007년 8.6%, 2008년 11.7%, 의존수입의 증가는 15.0%, 14.0%, 12.3%로서 의존수입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 특히, 의존수입 중 보조금은 2006년 18.0%, 2007년 17.3%, 2008년 11.9%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표 4-1> 중앙정부와 지방예산의 변화 추이

(단위: 억원)

구분	'03예산	'04예산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중앙정부예산	1,556,659	1,594,343	1,673,186	1,753,882	1,767,561	1,951,003
(비중)	59.9	57.8	57.6	57.0	54.8	54.5
 지방예산	781,425	872,840	923,673	1,013,522	1,119,864	1,249,666
(비중)	30.1	31.7	31.8	32.9	34.8	34.9
지방교육예산	258,541	290,578	306,370	311,484	336,309	378,524
(비중)	10.0	10.5	10.6	10.1	10.4	10.6

자료: 행정안전부, 2008.

<표 4-2> 세입재원별·연도별 지방예산 규모(2008)

(단위: 억원, %)

구분	2004	건년 대비	2005	전년 대비	2006	전년 대비	2007	전년 대비	2008	전년 대비
<u>———</u> 계	872,840	11.7	923,673	5.8	1,013,522	9.7	1,119,864	10.5	1,249,666	11.6
Al	988,924	1.4	1,070,625	8.3	1,154,723	7.9	1,280,366	10.9	-	-
 자체수입	552,119	13.0	570,721	3.4	606,733	6.3	659,241	8.6	736,501	11.7
사세구입	637,510	5.6	666,536	4.6	696,350	4.5	780,526	12.1	-	_
-1 HL 11	319,834	11.0	336,952	5.4	352,751	4.7	380,732	7.9	435,497	14.4
지방세	333,656	9.0	350,048	4.9	380,712	8.8	407,054	6.9	-	_
게이스이	232,284	16.0	233,769	0.6	253,982	8.6	278,509	9.7	301,004	8.1
세외수입	303,854	2.1	316,488	4.2	315,638	△0.3	373,472	18.3	-	-
かるとの	294,031	8.8	324,860	10.5	373,557	15.0	425,673	14.0	478,195	12.3
의존수입	319,302	△6.9	368,277	15.3	420,282	14.1	464,493	10.5	-	-
크레크 H 제	126,939	10.2	172,047	35.5	193,177	12.3	214,083	10.8	241,296	12.7
지방교부세	144,769	△3.2	196,541	35.8	209,278	6.5	245,341	17.2	-	-
기비아시기	48,546	0.1	-	-	-	-	-	-	-	-
지방양여금	37,432	△27.3	-	-	-	-	-	-	-	_
11 7 7	118,546	11.1	152,813	28.9	180,380	18.0	211,590	17.3	236,899	11.9
보조금	137,102	3.4	171,736	25.3	211,004	22.9	219,152	3.9	-	-
-기내-기	26,690	17.9	28,092	4.7	33,232	18.3	34,950	5.2	34,970	0.05
지방채	32,111	13.3	35,813	11.5	28,090	6.4	35,347	△7.2		-

주: 상단은 당초예산, 하단은 최종예산

자료: 행정안전부, 2008.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이전 금액은 의존재원 2008년 53조 9,144억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 재원은 28조 9,567억원 (53.7%), 국고보조금은 24조 9,577억원(46.3%) 차지 (지자체의 2008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
-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는 4.5%가량

<표 4-3> 지방교부세 내역

(단위: 억원, %)

	합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2007	245,134	206,921	8,268	11,053	18,892
2007	100.0	84.4	3.4	4.5	7.7
2008(안)	291,367	235,430	9,456	12,579	33,902
2006(원)	100.0	80.8	3.2	4.3	11.6

자료: 행정안전부, 2008.10 자료로 재구성

- □ 지방 세출예산과 사회복지세출
 - 지자체 세출예산(124조 9,66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21조 6,658억원)은 17.3%로 서, 사회복지예산 중 보조사업은 86.1%, 자체사업 13.4%를 차지, 전체 세출예산 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2%, 46.1%
 - 사회복지예산 21조 6,658억원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이 8조3,193억원으로 38.4%를 차지
 - 지자체 세출예산(124조 9,66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21조 6,658억원)은 17.3%로서,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49.8%, 시도비 30.4%, 시군구비 19.7% 등으로 구성
 - 총예산은 국비 18.9%, 시도비 37.1%, 시군구비 42.6%
 - 최근 5년간의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2003년 11.1%에서 2007년에는 15.4%로 증가하였음

- 시, 군, 구를 비교해 볼 때, 군 지역에 비해서 자치구와 시 지역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4> 지방세출예산의 세입구조 현황(2008)

(단위: 억원)

분야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1,249,666	235,796	463,575	532,808	17,487
일반공공행정	109,648	1,148	57,025	51,472	3
공공질서및안정	19,810	4,017	10,681	5,112	0
교육	69,551	155	63,859	5,537	-
문화및관광	60,465	7,936	23,781	28,747	1
환경보호	136,795	20,644	43,469	72,681	0
사회복지	216,651	107,961	65,917	42,709	64
보건	18,951	5,591	6,708	6,650	2
농림해양수산	80,570	35,184	13,653	31,701	32
산업중소기업	25,798	5,349	11,749	8 <i>,</i> 700	0
수송및교통	163,051	31,810	69,533	61,655	52
국토및지역개발	129,097	14,962	42,041	72,093	0
과학기술	7,053	163	6,803	87	-
예비비	22,529	96	7,001	15,432	-
기타	172,380	780	41,355	130,234	12
(세출유보)	17,319				17,319

자료: 행정안전부, 2008.

<표 4-5> 연도별 지자체 사회복지비 비중 추이('03~'07)

(단위: %)

	전국평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2003	11.1	13.0	14.1	12.7	11.2	25.1
2004	11.3	13.0	14.3	13.3	11.1	25.4
2005	12.1	13.6	14.6	14.5	11.6	27.3
2006	13.8	16.3	15.6	16.6	12.5	31.6
2007	15.4	18.2	18.2	19.0	13.9	35.2

주: 1) 품목예산에서 노동, 주택부문이, 사업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 2008.

-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비(일반회계) 비중은 평균 17.5%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자 체별 편차가 다음과 같이 매우 큼
- 서울·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40% 이 상인 구가 34개, 30~40%인 구가 26개로서, 대부분의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1/3을 넘고 있음
- 군의 경우는 78개 군이 10~20%미만에 해당하였으며, 시(도 소재)의 경우는 20~30%미만이 43개, 10~20%미만이 29개 지자체였음

<표 4-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의 지자체별 분포

(단위: 단체수, %)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
	246	100	16	75	86	69
10%미만	1	-	-	-	1	-
10~20%미만	114	46	6	29	78	1
20~30%미만	68	18	10	43	7	8
30~40%미만	29	12	-	3	_	26
40~60%미만	34	14	-	-	_	34
60%이상	-	-	-	-	-	-

주: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구간별로 해당하는 지자체의 수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2008.

- 지방 사회복지세출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재량적 복지사 업 수행이 곤란함을 시사하고 있음
- 지자체 세출예산(124조9,66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21조6,658억원)은 17.3%를차지 (노동, 보훈, 주택을 제외하면 16.4%)

- 사회복지예산(노동, 보훈, 주택) 중 보조사업은 89.9%, 자체사업은 9.7%로서, 지자체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 은 실정임
 - 전체 지방 세출예산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2%, 46.1%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이 8조3,193억원으로 38.4%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직적 예산소요가 매우 큼

<표 4-7> 지방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재원 구성(2008)

(단위: 단체수, %)

	-1ì	정책	사업	케 ㅁ 젊. ㄷ	행정운영
	계	보조사업	자체사업	재무활동	경비
합계	1,249,666	427,411	575,691	63,392	183,172
사회복지	216,658	186,517	28,998	1,068	75
사회복지(노동, 보훈, 주택 제외)	205,372	184,689	19,885	749	49
기초생활보장	83,193	79,918	3,116	159	-
취약계층지원	28,631	23,432	5,089	105	5
보육·가족·여성	41,137	37,390	3,508	197	42
노인·청소년	49,480	41,966	7,303	210	1
노동	2,591	1,350	1,227	14	0
보훈	537	112	424	1	-
주택 주택	8,158	366	7,462	304	26
사회복지일반	2,929	1,983	869	77	-

자료: 행정안전부, 2008.

- 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 현황
-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 2002~2008년간 보건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2.5%로서, 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8.2%)을 상회하고 있음

<표 4-8> 보건복지예산의 증가율 및 정부예산대비 비중 추이

(조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투자규모(조원)	7.7	8.5	9.2	8.9	9.7	11.5	15.6
보건복지예산증가율(%)	3.9	9.7	8.6	△3.5	9.0	18.8	34.9
정부예산대비 비중(%)	7.07	7.20	7.68	6.59	6.70	7.36	8.89

주: 1) '08년은 정부조직개편 반영(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청소년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주요업무안내』.

- 사회서비스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서 '02년 2,722억에서 '07년 12,945억으로 연평균 36.6%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보육 예산의 경우 '02년 2,461억에 서 '07년 13,366억으로 연평균 40.5%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사업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경우, 2005 년 지방이양된 6,000억원의 예산,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보육예산²¹⁾의 감소분을 포함하다고 할 때, 2005년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비중은 17.7%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음
- 2007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07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11.0%, 여성가족부 이관 서비스예산이 포함된 2008년의 경우 28.4%로 사회복 지서비스 예산의 증가 폭은 상당히 큰 규모임
-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대인서비스 성격의 예산을 구분해보면, 2007

²¹⁾ 여성가족부 2005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2005년 보육사업 예산은 6,001억원('04년 4,050억원), 2006년 7,913억원, 2007년 1조 446억원이었다.

년의 경우, 1조2,697억원 중 현금급여 성격의 경로연금 2,175억원, 장애수당 3,130억원, 장애아동부양수당 279억원의 예산을 제외하고 7,113억원에 불과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정책 이슈로 하여 추진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은 다음 <표 4-10>에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중 대인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2007년 7,563억원, 2008년 1조 504억원으로서, 2008년의 경우 보건복 지일반회계 예산 중 6.8%에 해당함
 - 이들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시설지원 방식의 사회복 지서비스사업들이 분권교부세 지원 범주로 포함되고, 새롭게 중앙정부 주도 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로서,
 - 이들 사업과 2005년 지방이양사업을 합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서비 스예산의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9> 최근 5년간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억원, %)

그님	2004		2005		2006)	2007	,	2008	
구분	예산	비중								
[정부예산-일반]	1,201,394		1,355,256		1,448,076		1,565,177		1,749,852	
[복지예산비율]		7.7		6.4		6.7		7.4		8.9
[일반회계 계]	92,322	100	86,479	100	97,063	100	115,292	100	155,556	100
<인건비>	1,647	1.9	1,718	2.0	1,467	1.5	1,621	1.4	1,745	1.1
<기본사업비>	386	0.4	389	0.4	245	0.3	118	0.1	166	0.1
<주요사업비>	90,289	97.8	84,372	97.6	95,351	98.2	113,553	98.5	153,645	98.8
□ 사회복지	53,186	57.6	49,088	56.8	60,165	67.6	78,456	68.0	112,685	72.4
○ 기초생활보장	39,126	42.4	43,561	50.4	53,370	59.9	65,759	57.0	68,505	44.0
- 기초급여	17,424	18.9	19,880	23.0	23,412	26.3	26,697	23.2	29,995	19.3
- 의료보장	18,810	20.4	21,325	24.7	26,623	29.9	35,771	31.0	35,161	22.6
- 자활지원 등	2,892	3.1	2,356	2.7	3,335	3.7	3,291	2.9	3,349	2.2
O 사회복지서비스	14,060	15.2	5,527	6.4	6,795	7.6	12.697	11.0	44,180	28.4
- 노인복지	5,005	5.4	3,302	3.8	3,928	4.4	5,692	4.9	20,619	13.3
- 장애인복지	3,057	3.3	1,494	1.7	1,945	2.2	4,579	4.0	5,231	3.4
- 보육·여성	4,038	4.4	-	0.0	-	0.0	-	0.0	14,178	9.1
- 아동·청소년	1,012	1.1	137	0.2	217	0.2	703	0.6	1,087	0.7
- 모부자복지	178	0.2	227	0.3	262	0.3	315	0.3	791	0.5
- 기타사회복지	770	0.8	367	0.4	443	0.5	1,408	1.2	2,274	1.5
□ 보건의료	4,639	5.0	3,179	3.7	1,887	2.1	2,611	2.3	5,472	3.5
□ 건강보험	32,464	35.2	32,105	37.1	33,299	37.4	32,486	38.2	35,488	22.8
○ 건강보험지원	28,566	30.9	27,695	32.0	28,698	32.2	27,047	23.5	30,719	19.7
○ 공교국가보험료	3,013	3.3	3,426	4.0	3,550	4.0	4,064	3.5	4,580	2.9
○ 국민연금	885	1.0	984	1.1	1,051	1.2	1,375	1.2	189	0.1
※사업비 계	90,675	98.2	84,761	98.0	95,596	98.5	113,671	98.6	153,811	98.9

<표 4-10> 사회서비스 예산 현황(일자리 창출사업 중심)

	'074	 년도	'081	도
사 업 명	예 산	인 원	예 산	인 원
	(백만원)	(명)	(백만원)	(명)
합 계 	756,315	147,173	1,050,423	167,827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사업	2,691	799	6,658	2,049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2,334	192	-	-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서비스	3,843	508	18,152	2,320
(결혼이민자가정아동양육지원)	1,920	208	11,040	1,280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1,923	300	7,112	1,040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7,158	43,935	299,383	49,079
민간시설 영아반 인건비	132,729	36,674	229,763	48,811
노인돌봄서비스	55,717	11,883	65,995	10,679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3,556	7,200	38,355	6,600
(노인돌보미 바우처)	32,161	4,683	27,640	4,07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5,082	1,418	27,078	2,419
지역아동센터 운영	36,633	4,540	51,118	4,827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20,610	1,800	26,158	2,087
(아동복지 교사)	16,023	2,740	24,960	2,740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사업	2,607	352	3,737	49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29,577	11,000	74,978	12,500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77,133	17,400	67,241	8,575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	-	47,712	7,000
지역자활센터 기능 활성화	27,014	1,340	27,809	1,340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15,476	2,000	23,726	2,300
가사간병도우미	73,900	10,833	59,583	10,653
의료급여관리(사례관리사)	6,034	439	8,584	499
정신보건센터 운영	8800	560	10350	670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4,980	2,000	10,260	2,0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73	446	3215	470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아카데미)	12,034	924	15,081	1,140

2.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변화

- □ 사회복지서비스부문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큰 변화는 2005년 시행된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었음
-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지나며 사회복지부문에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 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 보건복지부문에서는 67개 사업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에 따라 분권교부 세제도를 통한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됨
- 국고보조금 전체 총 533개 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이양, 126개 사업(3.6조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사업으로 이관하고, 233개 사업 (7.9조원)은 보조사업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보건복지부의 지방이양 사업은 총 67개 사업(5,959억원)이고, 보조사업 유지는 71개 사업(4조 3,409억원)으로 대상업무 중 절반이 포함됨
- 외형상으로는 지방이양사업이 적지만, 실제 포괄적 보조사업 중 국민기초생활 급여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중 거의 절반이상 지방이양사업이 된 것임
- 사회복지부문 67개 사업(5,959억원)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함에 따라, 시군구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중앙정부의 부담은 축소되었음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예산의 중앙-광역-기초단체간 분담 실태를 보면, 지방이 양 이전인 '04년에 비해 시군구 부담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04년 18.4%, '05년 30.2%, '06년 29.9%)
 - 67개 지방이양사업예산의 '00~'04년의 평균증가율(20.5%)보다 '04~'05년 증가율(18.9%) 감소('06년은 분권교부세율 증가분 1,200억원 추가 배분)

<표 4-1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04~'06)

(단위: 억원, %)

								•	
	정부	부간 분담규	모		분담액의 증가율				
연도	계	분권 교부세	시도	시군구	연도	총예산	분권 교부세	시도	시군구
'04 예산	12,952 (100.0)	6,107 (47.2)	4,467 (34.5)	2,378 (18.4)	-	-	-	-	-
'05 예산	15,400 (100.0)	5,499 (35.7)	5,245 (34.1)	4,655 (30.2)	′04~′05	18.9	- 9.9	17.4	95.8
'06 예산	19,379 (100.0)	6,863 (35.4)	6,715 (34.7)	5,799 (29.9)	′05~′06	25.8	24.8	28.0	24.6

주: 1) 2004년의 경우 분권교부세 항목은 국고보조금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후 지방자치단체 복지비용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했으나, 복지수요 증가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시군구 단체장의 의지, 지방재정력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별 예산배정 감소 및 지자체별 복지수준 편차 확대가 우려되는 실정임
- "신규시설 설치 기피 등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차질 발생, 시군구에서 운영비 부담과중으로 신규시설 유치 기피, 노인생활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에 다른 지 역거주자 입소 거부" (행자부 2006.3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간 지방비 부담기준 권고」)
- □ 분권교부세제도 도입(2005년) 이후 주요 제도 개편 내용
 -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36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추가 지원 하고, 2006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담배소비세 분으로 전가한 몫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0.11%p 증가시켜 0.94%로 상향 조정
 -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3개 사업은 현재의 분권교부제도하에서 재원조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권교부세 재원

0.83% 중 0.21%가 이 사업들의 재원 비중이라고 보고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 되 그 안에서 별도로 재원을 배분토록 함. 또한 2006년부터 분권교부세율 인상 에 따라 확보되는 1,180억원 전액을 이들 3개 사업 등에 지원토록 함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이 같은 특별·광역시는 분권교부세를 본청으로 일괄 교부하여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도록 함
- 그리고 기초단체가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운영에 대 해서는 도(道)의 경우에도 분권교부세를 도본청으로 일괄교부하고,
- 시·도비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시·도비를 확보토록 함. 또한 이들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내에 별도의 사업항목을 신설하여 재원의 일정분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함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복지 재정 부담의 증 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제도와 부동산교부세제도 등의 개편 노력도 함께 전개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사회복지비 비중의 지속적 확대 (2005년 10.6% → 2006년 12.4% → 2007년 19.4% → 22.1%)하였고,
- 사회복지비 관련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7년에 사회 복지균형수요보정 항목을 도입하였으며,
- 2008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2008년의 경우 사회복지균형수요액 비중이 전 체 기준재정수요액의 1.9%를 점하고 있음
-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인센티브 항목의 하나로 "사회문화·복지분 야 예산운영" 항목을 신설하였음22)
 - 이 제도는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동종의 자치단체의 평균 비중보

²²⁾ 산정기준: [해당 자치단체의 전년도 일반회계 사회문화・복지분야 일반재원 예산비중 - 동종 자치단체 평균 사회문화 · 복지분야 예산비중)×해당자치단체 사회문화 · 복지분야 예산액] ×10%

다 큰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화 · 복지분야 지출예산 확대 편성 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종합부동산세 수입으로 재산세 세수감소분 보전 후 남은 잔여재원(균형재원) 의 25%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교부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2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업무의 지방분권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부터는 이 제도가 지방자 치단체 합동평가제도로 통합될 예정임

구 분	개편 내용
재원	• 내국세의 0.83%(2005) → 내국세의 0.94%(2006)
규모(법정율)	• 인상분(0.11%) 전액 사회복지 수요에 배정
수요산정	• 경상적 수요 : 74(05)→77(06)→80(07)→92(08)
대상사업	• 비경상적수요(일반수요) : 39(05)→41(06)→45(07)→35(08)
유형 분류	• 비경상적수요(특정수요) : 36(05)→31(06)→24(07)→22(08)
수요산정 항목	• 사회복지: 3개 항목(2005) → 4개 항목(2006)
구분	• 문화관광: 2개 항목(2005) → 3개 항목(2006)
수요산정 방법	 수요산정기준: 사업별 국고보조금 5년 평균→전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액(2006) 교부액 조정: 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조정율 폐지 및 재정력지수 반영 도입 (2006) 경상적 수요 배분기준: 재정수요액 기준 70%, 재정력 기준 30% (2006) 비경상적 수요(일반수요): 광역 20%, 기초 80%→특・광역시 30%, 도 70%(본청 14%, 시군 56%)(2006)→도 70%(본청 3.5%, 시군 66.5%)(2006)→도 70%(본청 5%, 시군 65%)(2008)/총인구, 수산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재정력 등 분야별 배분비율 조정(2006, 2008)
재원 교부체계	 당해 자치단체 직접교부(시도, 시군구)→특별・광역시 본청 일괄교부, 도 본 청과 시군으로 교부(2006)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 본청으로 교부(2006)

²³⁾ 배분액 결정 기준: 세출예산 사회보장비 비율의 비중 13%, 자치단체별 인구수 중 노령인구 수의 비중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의 비중 3%, 장애인 수의 비중 3%, 전국 노인요양시설 정원 중 해당 자치단 체 정원 비중 2%

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관련 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은 국고보조와 지방 자치단체 재정의 매칭을 통해서,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 음. 이는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결국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 졌고, 이는 '보편적'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재정방식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사업은 일부 지방재원이 매칭되는 공급자지원 방식, 바우처사업을 통한이용자지원 방식,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다기화 되었음
- 이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결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을 담당해 갈 것인가 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 기존 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이양되어, 사업 운영의 권한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부여되었으며,
- 새롭게 도입된 바우처사업은 지자체의 일부 부담이 강제되고 있으나, 중앙정 부가 바우처 유통과 예산을 관리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 이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바우처사업의 성격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배분 방식으로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서비스사업을 개발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었음

< ₹ 4–12>	하국의	사회복지서비스	└ 재정워저

재정		주요사업예산
중앙 정부 사업	공급자지원	• 아동, 노인, 장애인, 저출산, 부랑인복지 (대인)서비스예산 5,035억원
	이용자지원	 위의 예산 중 4대 바우처사업 1,800억원('07예산, 국비) 3대돌보미사업 831억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969억원
지방사업		 67개 지방이양사업 1조9천억원('06예산 기준) 분권교부세 6,863억원, 광역부담 6,715억원, 기초부담 5,799억월
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3,071억원

주: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08년 중등증 이상(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 연구원 추계결과(노인인구의 3.1%) 적용 시 158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 이 중 보험료는 4,477억원, 본인부담 854억원, 정부지원 3,071억원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자료, 2007. 5) 자료: 정부사업은 보건복지부 자료, 민간자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여 정리

-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 축소 우려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 증대 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안에 의해 '12년 23조 2,080억원 감소 예 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됨(국회예산정책처, 2008)
 -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규모의 감소 우려
-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 의 증가세 예상 (조세연구원, 2007; 기획재정부, '08. 9.23)
- 그러나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고 있으 며, '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큰 폭의 예산이 소요 되는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9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조2,524억원, 기초노령연금 2조4,697억원으로 각각 8.3%, 54.8%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도 확대되었음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지방부담도 증 가 예상됨

<표 4-13> 주요 사회복지급여의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2007		2008		2009		'08대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09증가율
기초생활보장급여	26,725	7,983	30,021	8,967	32,524	9,714	8.3%
기초노령연금	-	-	15,948	4,764	24,697	7,377	54.8%
노인장기요양보험	-	-	1,530	-	3,284	-	-

- 주: 1) 지방비 부담분은 평균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중앙 77%, 지방 23% 부담하는 경우의 예산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방예산은 보험수급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므로, 위에 제시된 국고 부담분에 대한 매칭은 이루어지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전체 지방세입예산의 19%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사회복지사업의 위축을 예고하는 바, 지방 복지재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실현될 경우 사회복지수요는 많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곧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큰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지방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간의 사회복지 재정분담 구조
-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보전 방안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 축소 방안
- 분권교부세의 일반교부세 편입(2010년)에 따른 현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곽채기 외b, 2008)
 - * 1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 * 2안: 67개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포괄보조금 제도도입
 - * 3안: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교부금의 틀을 유지하며, 내국세 비율의 1.06%로 조성)
- 특히, 분권교부세제도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른 우려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 항을 포함하고 있음(곽채기 외b, 2008)
 - 타 지출 분야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가 지출의 경합성 확대로 인해 사회복 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축소
 -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산정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출로 할당된 몫이 타 용도로 전환되는 문제(fusibility 문제)
 -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약하거나 지원 대상자가 소수인 사회복지서비스 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부문간 불평등 문제
 -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지출 격차를 초래하는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지역 및 자치단체간, 그리고 서비스 부문간 격차를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
 -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이양에 상응한 재원이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됨
- '05년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되었으나, 이후 신규 국고보 조사업의 실시, 각종 바우처서비스사업의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및 재정분담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심 층적으로 분석·파악되어야 할 것임

제2절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향

-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정착과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주지하다시피 2006년 후반부터 구상된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의 4대 사업 중 하나로 준비되었으나, 돌봄서비스의 확대와 비용지불 방식의 변화로 추진된 3개 돌봄서비스 사업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변화, 사업개발 및 추진방식의 변화, 이용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도의 기존 운영방식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한 새로운 형식의 실험이었음
 - 이는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의의는 "중앙주도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등이 복지서비스를 발굴·선택하고, 중앙이 이를 선정·지원하여, '시장 형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종래 공급자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안내, 2008)
 - 기존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이 잔여적인 기초수급자 중심의 대상집단을 갖고 있었다면, 이를 보편적으로 넓히고(평균소득 이하 집단),
 - 자산조사 중심의 선정기준을 욕구평가(need assessment) 중심으로 전환하고,
 - 가격구조를 정부지원 중심에서 정부지원과 본인부담으로 다양화하고,
 - 서비스개발의 주체를 정부 또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 가격 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 품질관리는 사전규제에서 자율경쟁으로,
 - 국고보조 방식을 개별보조에서 포괄보조로 바꾼다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

업의 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이는 특정 유형의 사업을 중앙정부가 기획하여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지 역에서 일정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기획이 가능하여 예산 운용이 비교 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범주적 보조금을 벗어난 "포괄보조금"의 맹아적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는 포괄보조금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또한 상당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들이 지방이양되어 2010년부터 관련 재 원이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명실상부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고,
- 2006년 이후 신설된 상당부분의 바우처 서비스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들 이 혼재된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에 대한 일정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며,
- 분권화·지방화 추세에 조응하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방식의 탐색과정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그러나 앞서 미국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결과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탐색이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어떤 범위의 사업을 포괄범위로 할 것이며, 어떻게 범주를 구분할 것인가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사회서비스 부문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할 것인가
-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일정을 가져야 할 것인가
- □ 다음은 미국의 포괄보조금제도 세부적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포 괄보조금을 한국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재원확보의 한 수단으로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 미국 포괄보조금제도의 행정관리 체계(Preexpenditure Report→Postexpenditure Report)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성과중심의 전략적 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로 연계되는 포괄보조금 재원배분 구조에서 개별적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결과를 검토하는데 필요이상의 장시간이소요될 수 있음
 - 포괄보조금의 재원배분 관련 행정관리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경우, 과도한 행정부담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 이는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원전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임
-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해 급증하는 지역사회의 욕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의 신청이후 배분이 결정되어 실제 재원이 배정되는 기간을 최대 한 단축해야 할 것임
- 즉 포괄보조금제도를 통한 재원배분의 의사결정 단계 및 관련행정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대할수 있어야 함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정자립도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의 확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포괄 보조금제도가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감축의 명분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수준, 사서비스 제공수준의 격차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의 차원에서 포괄 보조금의 제도적 기능을 착안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서비스 공급관련 명확한 책임소재가 제시되어
 야 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연계를 위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가시화 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분권화 및 서비스 관리·운영에 있어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즉, 포괄보조금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선호가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는 명분으로 복지지출 삭감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문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결여시킨다는 의견도 간 과할 수 없으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분권화 및 지방화와 더불어 강화되고 있는 정부 간 관계와 하위 정부의 역할 제고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대한 반응성, 유연성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 고 수혜자의 급여권과 수급 형평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포괄보조금은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백한 행정적·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교부되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일정정도 개입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국 포괄보조금제도 도입단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 회서비스 공급과 관련 범주형 보조금을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지방정부(county government)의 포괄보조금 운영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사회서비스를 사업유형별로 묶고 동일한 대상 또는 프로그램의 사업예산 에 대해 주정부를 거쳐 전달된 다양한 보조금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음
 - 단, 보조금의 최종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간 재워이동의 재량범위를 포괄적으로 완전한 전용재량을 부여할 경우, 서비스 부문별 투자 편중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원전용을 허용할 수 있는 분 야를 구분해야 할 것임

- 포괄보조금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보조금 집행정보 및 사업추진 정보 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성과평가제도와의 연계가 핵심이 되 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포괄보조금 관리·운
 영의 비효율성과 불건정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조 직화되고 제도화된 재정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 보조금 지원, 전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 정보의 관리 가 담당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산정보관리시스템 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책성 과에 대한 객관적·지속적 평가 및 성과관리를 추진해야 함
 - 포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며,
 - 포괄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및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여 기존 정책집행의 한계 를 탈피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super-waiver 등의 조치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포괄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지원에 대한 규제가 급감하는 반면, 프로그램 수행관련 정보가 관리 ·축적되지 않아서,
 - 모니터링이나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임
- 포괄보조금제도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에 근거한 협력적 역할수행이 강조되는 바, 중앙-지방간 포괄보조금을 이 용한 성과관리체계가 공고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성과관리 체계는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연간성과 추진계획, 정책집행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의 기본 구조를 갖춰야 함

- 성과목표는 지역단위에서 포괄보조금을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의 집행계획을 고려한 광역단위의 계획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때 사회서 비스 국가 최저기준은 물론 지역복지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함
-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국가최 저 기준(national minimum) 및 지역사위 단위의 최저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 람직함
 - 중앙정부는 포괄보조대상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 사회복지 부문에서 갖는 정 책적 가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를 단위로 달성해 야 하는 성과를 규명하도록 함
 - 이에 따른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량지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상 되어야 하며, 성과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포괄보조 금제도의 시행 이후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확인된 주 정부는. 시 행 이전에 이미 행정적·재정적 관리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주 정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또한 중앙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정지원 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업/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지식, 사업수행 역량 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감안해야 함
-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별사업이 개발·결정되고 지방 자치단체에 하달되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하향식 체제에 고착되어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유 인책이 필요함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욕구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수요에 기반 하는 공급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민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포괄보조금 방식을 이용하여 성과중심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됨
- 포괄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전달의 수단적 요소이지, 동 제도의 시행만으로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님
- 따라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복지정 책 추진역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기획이 필요하며,
-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부문 포괄보조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2008.
- 강혜규·최현수·엄기욱·안혜영·김보영,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곽채기·강혜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a.
- 곽채기·김보현·이형우·강혜규·정종화, 『사회복지지방이양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2008b. 10.30.
- 김재훈·이재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08.
- 남유진,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집문당, 2005.
- 닐 길버트·폴 테렐 지음, 남찬섭·유태균 번역, 『사회복지 정책론』, 나눔의 집, 2007.
- 박세경·강혜규·김형용·엄기욱·심창학·최은영,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환경 연구: 주요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정경희·이현주·박세경·김영순·최은영·이윤경·최현수·방효정, 『한국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정병열, 『재정학 연습』, H&book, 2000.
- 최은영, 「사회서비스 공급과 재정지원 유형」,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 개발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pp. 141-182.
- 행정자치부,「지방이양백서」, 2007.
- 행정안전부,「지방예산연감」, 각년도.

- Butler, Y. J., "The dilemma of devolution and decentralization in federal grants: A case study of the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7(9), 2007.
- Collins, B. K., Gerber, B. J., "Redistributive Policy and Devolution: Is State Administration a Road Block (Grant) to Equitable Access to Federal Fund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4), 2006, pp.613-632.
- Conlan, Timothy & Paul Posner (eds.),. *Intergovernmental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 Day, Phyllis J., A New History of Social Welfare, Allyn & Bacon. 1997.
-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NC Division of Social Services NC Division of Child Development and NC Division of Services for the Blind. Requiremen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County Departments of Social Services Division of Aging and Adult Services Manual, 2008.
- Federal Assistance Award Data System,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2007.
- Finegold, K., Wherry L., and Schardin S., "Block Grants: Historical Overview and Lessons Learned", *Urban Institute*. No. A-63 in Series New Federalism: Issues and Options for States, 2004.
- Fulton County Department of Human Service, 2008-2009 Human Service Grant Application Manual, 2008
- _____2008-2009 Human Service Department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2008
- Galster, G., Walker, C., Hayes, C., Boxall, P., Johnson, J., "Measuring the Impact of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Spending on Urban Neighborhoods", Housing Policy Debate, 15(4), 2004, pp.903-934.

- Golden, O.,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Eight Years Later", *Urban Institute Program to Assess Changing Social Policies*, 2005.
- Herzik, E. B., Pelissero, J. P., "Decentralization, Redistribu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 Reassessment of the Small Cities CDBG Progra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1), 2986, pp.31-37.
- Jansson, Bruce S., The Reluctant Welfare State, Thomson, 2005.
- King, R. F., "Welfare reform: Block grants, expenditure caps, and the paradox of the food stamp progra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4(3),2999, pp.359-386.
- Lambright, K. T., Allard, S. W., "Making Tradeoffs in Federal Block Grant Programs: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SSBG and TANF", *Publius*, 34(3), 2004, pp.131-157.
- Lambrew, J. M., "Making Medicaid a Block Grant Program: An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Past Proposals", *Milbank Quarterly*, 83(1), 2005, pp.41-63.
- Milam, D. M., "Evaluating the Outcomes of Redistributive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Funds at the Federal and Local Levels of Government",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4(6), 2003.
- Nathan, Richard P. (1992). "Defining Modern Federalism", Harry Scheiber (ed.) North American and Comparative Federalism Essays for the 1990s,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Press.
-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2008). THE SOCIAL SERVICES BLOCK GRANT PLAN(Pre-Expenditure Report) Fiscal Year 2008-09.

- NC DHHS Division of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The Office of Policy and Planning,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NC DHHS) Business Plan, 2006.
- North Carolina General Assembly., *House Bill 2436 / S.L. 2008-107 "Modify Appropriations Act of 2007"*. 2008.
- _____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Public Spending, OECD Network on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2006.
- Posner, P. S. & Wrightson, M. T., "Block grants: A perennial, but unstable, tool of government", *Publius*, 26(3), 1996, pp.87-107.
- Powers, E. T., "Block Granting Welfare: Fiscal Impact on the State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4), 2000, pp.323-339.
- Salamon. L.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Singh, N., Thomas, R., "Matching Grants Versus Block Gran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National Tax Journal*, 42(2), 1989, pp.191-203.
- Stenberg, C. W., "The Community Development Balancing Act: Reconciling Expectations For A Hybrid Block Grant", *Journal of Public Budgeting, Accounting & Financial Management*, 20(1), 2008, pp.87-107.
- Sosin, M. (1990). "Decentralizing the Social Service System", Social Service Review, Dec. 1990., pp. 617-636.
- Tax Policy Center, Tot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enues 1997~2005, 2005.
- US General Accountability Office,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HHS Should Improve Oversight by Focusing Monitoring and Assistance Efforts on Areas of High Risk, United States, 2006.

- US Department of Commerce, Federal Aid to States for Fiscal Year 2007, 2008.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2007.
- ____Social Services Block Grant, 2008.
- Walker, D., "New Federalism III",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4(1), 2001, pp.51-75.
- Waller, M., *Block Grants: Flexibility vs. Stability in Social Services*, The Brookings Institution Policy Brief, 2005.

부록

- [부록 1] DHHS의 50대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 목록
- [부록 2]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의 결산보고 작성 지침 SSBG Instruction for Reporting Form
- [부록 3]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SBG) 적용 서비스 유형의 사업정의 SSBG Uniform Definition of Services
- [부록 4] North Carolina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계약서 Social Service Block Grant Contract
- [부록 5] North Carolina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회계감사 자료수집 양식 Form SF-SAC: Data Collection Form for Reporting on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Fulton County Human Service Grant Application Diskette
- [부록 7]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분기별 성과보고 양식
 Fulton County Human Service Department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orm
- [부록 8]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서 평가도구 Fulton County: Grant Proposal Scoring Tool

[부록 1] DHHS의 50대 주요 보조금 프로그램 목록

연 번	CFDA	사업/프로그램명	보조금 액수
1	93.778	Medical Assistance Program (Medicaid)	\$188,210,222,698
2	93.558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16,954,699,376
3	93.600	Head Start	\$6,677,154,512
4	93.596	Child Care Mandatory and Matching Funds of 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4,955,537,111
5	93.658	Foster Care: Title IV-E	\$4,584,642,798
6	93.563	Child Support Enforcement (CSE)	\$3,188,614,057
7	93.767	State Children's Insurance Program (SCHIP)	\$3,005,276,559
8	93.855	Allergy, Immunology and Transplantation Research	\$2,449,321,310
9	93.568	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LIHEAP)	\$2,160,873,000
10	93.659	Adoption Assistance	\$1,933,197,634
11	93.859	Pharmacology, Physiology, and Biological Chemistry Research	\$1,824,198,099
12	93.224	Community Health Centers	\$1,784,175,227
13	93.667	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	\$1,700,000,000
14	93.959	Block Grant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bstance Abuse	\$1,670,661,450
15	93.837	Heart and Vascular Diseases Research	\$1,370,998,316
16	93.853	Extramural Research Programs in the Neurosciences and Neurological Disorders	\$1,291,333,550
17	93.917	HIV Care Formula Grants	\$1,126,775,747
18	93.389	Research Infrastructure	\$1,163,558,166
19	93.045	Special Programs for the Aging Title III, Part C Nutrition Services	\$1,111,097,013
20	93.242	Mental Health Research Grants	\$1,014,486,073
21	93.069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885,082,759

연 번	CFDA	사업/프로그램명	보조금 액수
22	93.865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xtramural Research	\$858,390,124
23	93.28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vestigations and Technical Assistance	\$845,651,299
24	93.866	Aging Research	\$845,587,886
25	93.395	Cancer Treatment Research	\$793,677,084
26	93.279	Drug Abuse Research Programs	\$749,336,993
27	93.393	Cancer Cause and Prevention Research	\$648,248,713
28	93.847	Diabetes,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Research	\$676,837,906
29	93.569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CSBG)	\$624,113,209
30	93.914	HIV Emergency Relief Project Grants	\$575,980,041
31	93.994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558,973,893
32	93.867	Vision Research	\$544,547,111
33	93.838	Lung Diseases Research	\$529,046,485
34	93.396	Cancer Biology Research	\$522,346,740
35	93.243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Projects of Regional and National Significance	\$469,745,764
36	93.779	CMS Research, Demonstrations and Evaluations	\$463,426,165
37	93.889	Preparedness Program	\$457,620,217
38	93.846	Arthritis,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Research	\$422,858,722
39	93.172	Human Genome Research	\$421,939,808
40	93.848	Digestive Diseases and Nutrition Research	\$421,515,609
41	93.958	Block Grant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406,843,470
42	93.839	Blood Diseases and Resources Research	\$401,375,444
43	93.397	Cancer Centers Support Grants	\$389,941,663
44	93.849	Kidney Diseases, Urology and Hematology Research	\$386,761,170
45	93.556	Biolog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373,410,201
46	93.113	Biological Response to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335,959,768
47	93.399	Cancer Control	\$326,322,056
48	93.173	Research Related to Deafness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16,321,914
48	93.940	HIV Prevention Program	\$311,823,296
50	93.273	Alcohol Research Programs	\$300,576,103

부록 143

[부록 2]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결과보고 작성 지침

Social Service Block Grant Instruction for Reporting Form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ub. L. 104 - 13)**.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average 110 hours per response, including the time for reviewing instructions, gathering and maintaining the data needed, and reviewing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Respondents may direct comments concerning this estimate to: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370 L'Enfant Promenade, SW, Washington, DC 20447.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Overview:

States must use this form as the reporting instrume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45CFR 96.74(a) (1) through (4).

States are to report on their expenditures for and recipients of services within 29 service areas that are defined in the Uniform Definitions of Services (see attached). If the State's definition of a service differs from the Uniform Definitions, the State should clearly explain this in the pre-expenditure report.

State: Enter the name of the State submitting the form.

Fiscal Year:

Enter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form is being submitted. States can report on either the State or Federal fiscal year. The report is due either 6 months after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r at the time that the State submits the preexpenditure report for the reporting period beginning after that 6-month period. For example, if the report covers the State fiscal year, which ends on June 30, 2004, the FY 2004 report must be submitted either on or before December 31, 2004 or with submission of the 2006 preexpenditure report. If the report covers the Federal fiscal year, which ends on September 30, 2004, the FY 2004 report must be submitted either on or before March 31, 2005 or with submission of the 2006 preexpenditure report.

Report Period:

Enter the month and year of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fiscal year -e.g., 07/04 to 06/05.

Contact Person:

Enter the name of the contact person who can answer questions about the data.

Title: Enter the title for the contact person.

Agency: Enter the agency of the contact person.

Phone Number: Enter the telephone number of the contact person.

E-mail Address: Enter the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Submission Date: Enter the date the report is being submitted.

Part A. Expenditures and Provision Method

States are required to submit expenditure data for each service that is supported in whole or in part by SSBG Expenditures. A State reports on the total of expended funds as of the close of the reporting year. This amount may include funds appropriated in previous years.

For each service that is supported with SSBG Expenditures in the State, States are to report on the Total Expenditures from all sources of funds for that service. A State reports the amount of SSBG Allocation, the amount of Funds Transferred into SSBG, and the combined amount of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spent for that service. By reporting on expenditures of all sources of funds for each service, States can provide an accurate picture of the role that SSBG Expenditures plays in supporting services.

Column: Service Supported with SSBG Expenditures

In cases where no fit is possible between the State-defined services and the Uniform Definitions of Services, use item 29, "other services." Please sum all expenditures for these "other services" and enter the amounts in item 29. In the space below the table, indicate the types of services included in "other services."

Any expenditures that cannot be attributed to service recipients should be entered in item 31, "Administrative Costs," not as expenditures for "other services." "Administrative Costs" should include all other non-service uses of SSBG Expenditures (e.g., training, administrative support, or overhead costs).

The sum of all expenditures for services should be entered in the row after item 29.

Column: SSBG Expenditures. Enter the SSBG Expenditures for each service.

Subcolumn: SSBG Allocation. Expenditures may include dollars from the current year and the previous year's allocation. The total of this column may differ from the total amount of the annual SSBG Allocation if the full amount of the allocation was not expended during the fiscal year during which it was allocated, or if a portion of the SSBG Allocation from the previous year was expended during the reporting year.

Subcolumn: Funds Transferred into SSBG. Enter any funds expended that were transferred from other block grants into SSBG. The total of this column may differ from the total amount of the transfer if the full transfer was not expended during the fiscal year during which it was transferred or if funds transferred during an earlier year were expended during this year.

In the space below the table, indicate the block grant(s) from which these funds were transferred.

Column: Expenditures of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Enter all funds expended for each service from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sources. In the space below the table, indicate the sources of these funds. If SSBG Expenditures are not reported for a particular service, do not report Expenditures of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for the service.

Column: Total Expenditures.

In this column, enter the Total Expenditures for each service. This amount should equal the sum of the three columns across the table (i.e., SSBG Allocation; Funds Transferred into SSBG; and Expenditures of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If SSBG Expenditures are not reported for a particular service, do not report Total Expenditures for the service.

Column: Provision Method.

If the service was provided by a public agency, put an "X" in the column marked Public. If the service was provided by a private agency, put an "X" in the column marked Private. Both columns may be marked if the service was provided by both public and private agencies.

Part B. Recipients

States are required to submit recipient data (actual or estimated) for each service for which SSBG Expenditures are reported in Part A. The total number of recipients is all recipients of services supported by the Total Expenditures, which includes SSBG Expenditures (including Funds Transferred into SSBG) and All Other Federal, State, and Local Funds.

States should, if possible, provide unduplicated counts of service recipients. That is, if an individual received a servic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n discontinued the service, and then received the service again, the individual should only be counted once. Recipients are reported in four age categories—Children, Adults Age 59 Years and Younger, Adults Age 60 Years and Older, and Adults of Unknown Age. The numbers of Total Adults and Total recipients are reported as well.

The sum of recipients of all service categories should be entered in the row after item 29.

Column: Children.

For each service, enter the actual or estimated number of children who have received the service.

Column: Adults.

For each service, enter the actual or estimated number of adults who have received the service. The sum of the three subcolumns should equal the total number of adults who have received each service (indicated in the Total Adults column).

Subcolumn: Adults Age 59 Years and Younger. Enter the actual or estimated number of adults age 59 years and younger who have received each service.

Subcolumn: Adults Age 60 Years and Older. Enter the actual or estimated number of adults age 60 years and older who have received each service.

Subcolumn: Adults of Unknown Age. Enter the actual or estimated number of adults of unknown age who have received each service.

Column: Total Adults.

For each service, enter the total number of adult recipients. The amount in this column should be the sum of the three adult sub-columns—Adults Age 59 Years and Younger, Adults Age 60 Years and Older, and Adults of Unknown Age.

Column: Total.

For each service, enter the total number of recipients. This should be the sum of the adults and children reported in the Children and Total Adults columns.

Electronic Report Submission

States are encouraged to submit these data electronically in addition to the paper copy form.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form, in Microsoft Excel form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SSBG Web site at: http://www.acf.hhs.gov/programs/ocs/ssbg.

Reports may be submitted via e-mail to Marsha Werner at mwerner@acf.hhs.gov.

The mailing address is:

Marsha Werner, SSBG Program Specialist
Office of 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370 L'Enfant Promenade, SW
Washington, DC 20447

[부록 3] SSBG 적용 서비스 유형의 사업정의

Social Service Block Grant Uniform Definition of Services

1. Adoption Services

Adoption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to assist in bringing about the adoption of a child.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unseling the biological parent(s), recruitment of adoptive homes, and pre- and postplacement training and/or counseling.

2. Case Management Services

Case management services are services or activities for the arrangement,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individual service plan development; counseling; monitoring, developing, securing, and coordinating services; monitoring and evaluating client progress; and assuring that clients' rights are protected.

3. Congregate Meals

Congregate meal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epare and serve one or more meals a day to individuals in central dining areas in order to prevent institutionalization, malnutrition, and feelings of isolation.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the cost of personnel, equipment, and food; assessment of nutritional and dietary needs; nutritional education and counseling; socialization; and other servic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referral.

4. Counseling Services

Counseling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that apply therapeutic processes to personal, family, situational, or occupational problems in order to bring about a positive resolution of the problem or improved individual or family functioning or circumstances. Problem areas may include family and marital relationships, parent-child problems, or drug abuse.

5. Day Care Services—Adults

Day care services for adult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to adults who require care and supervision in a protective setting for a portion of a 24-hour day.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opportunity for social interaction, companionship, and self-education; health support or assistance in obtaining health services; counseling; recreation and general leisure time activities; meals; personal care services; plan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6. Day Care Services—Children

Day care services for children (including infants, preschoolers, and school age children) ar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in a setting that meets applicable standards of State and local law, in a center or in a home, for a portion of a 24-hour day.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set of appropriate developmental activities for children, recreation, meals and snacks, transportation, health support services, social service counseling for parents, plan development, and licensing and monitoring of child care homes and facilities.

7.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are those services provided to improve knowledge or daily living skills and to enhance cultural opportunities. Services may include instruction or training in, but are not limited to, such issues as consumer education, health education, community protection and safety education, literacy educatio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G.E.D.).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screening, assessment, and testing; individual or group instruction; tutoring; provision of books, supplies, and instructional material; counseling; transportation; and referral to community resources.

8. Employment Services

Employment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to assist individuals in securing employment or acquiring or learning skills that promot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employment screening, assessment, or testing; structured job skills and job seeking skills; specialized therapy (occupational, speech, physical); special training and tutoring, including literacy training and pre-vocational training; provision of books, supplies, and instructional material; counseling; transportation; and referral to community resources.

9. Family Planning Services

Family planning services are those educational, comprehensive medical, or social services or activities that enable individuals, including minors, to determine freely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select the means by which this may be achieved. These services and activities include a broad range of acceptable and effective methods and services to limit or enhance fertility, including contraceptive methods (including natural family planning and abstinence), and the management of infertility (including referral to adoption). Specific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preconceptional counseling, education, and general reproductive health care, inclu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ctions that threaten reproductive capability. Family planning services do not include pregnancy care (including obstetric or prenatal care).

10. Foster Care Services — Adults

Foster care services for adult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that assess the need and arrange for the substitute care and alternate living situation of adults in a setting suitable to the individual's needs. Individuals may need such services because of social,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or as a consequence of abuse or neglect. Care may be provided in a community-based setting, or such services may arrange for institutionalization when necessary.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include assessment of the individual's needs; case planning and case management to assure that the individual receives proper care in the placement; counseling to help with personal problems and adjusting to new situations; assistance in obtaining other necessary supportive services; determining, through periodic reviews, the continued appropriateness of and need for placement; and recruitment and licensing of foster care homes and facilities.

11. Foster Care Services—Children

Foster care services for children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an alternative family life experience for abused, neglected, or dependent children, between birth and the age of majority, on the basis of a court commitment or a voluntary placement agreement signed by the parents or guardians. Services may be provided to children in foster family homes, foster homes of relatives, group homes, emergency shelters, residential facilities, child care institutions, pre-adoptive homes, or a supervised independent living situation.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assessment of the child's needs; case planning and case management to assure that the child receives proper care in the placement; medical care as an integral but subordinate part of the service; counseling of the child, the child's parents, and the foster parents; referral and assistance in obtaining other necessary supportive services; periodical reviews to determine the continued appropriateness and need for placement; and recruitment and licensing of foster homes and child care institutions.

12. Health-Related and Home Health Services

Health-related and home health services are those in-home or out-of-hom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assist individuals and families to attain and maintain a favorable condition of health.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providing an analysis or assessment of an individual's health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of a treatment plan; assisting individuals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ir health needs; assisting individuals to locate, provide, or secure and utilize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preventive medical care, and health maintenance services, including in-home health service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providing followup services as needed.

13. Home-Based Services

Home-based services are those in-hom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to individuals or families to assist with household or personal care activities that improve or maintain adequate family well-being. These services may be provided for reasons of illness, incapacity, frailty, absence of a caretaker relative, or to prevent abuse and neglect of a child or adult. Major service components include homemaker services, chore services, home maintenance services, and household management services.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protective supervision of adults and/or children to help prevent abuse, temporary nonmedical personal care, house-cleaning, essential shopping, simple household repairs, yard maintenance, teaching of homemaking skills, training in self-help and self-care skills, assistance with meal planning and preparation, sanitation, budgeting, and general household management.

14. Home-Delivered Meals

Home-delivered meal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epare and deliver one or more meals a day to an individual's residence in order to prevent institutionalization, malnutrition, and feelings of isolation.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the cost of personnel, equipment, and food; assessment of nutritional and dietary needs; nutritional education and counseling; socialization services; and information and referral.

15. Housing Services

Housing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assist individuals or families in locating, obtaining, or retaining suitable housing.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tenant counseling; helping individuals and families to identify and correc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on behalf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o are unabl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and assisting individuals and families to understand leases, secure utilities, and make moving arrangements and minor renovations.

16. Independent and Transitional Living Services

Independent and transitional living services are those services and activities designed to help older youth in foster care or homeless youth make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living, or to help adults make the transition from an institution, or from homelessness, to independent living.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educational and employment assistance, training in daily living skills, and housing assistance. Specific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supervised practice living and post-foster care services.

17.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service providers and a brief assessment of client needs (but not diagnosis and evaluation) to facilitate appropriate referral to these community resources.

18. Legal Services

Legal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provided by a lawyer or other person(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awyer to assist individuals in seeking or obtaining legal help in civil matters such as housing, divorce, child support, guardianship, paternity, and legal separation.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receiving and preparing cases for trial, provision of legal advice, representation at hearings, and counseling.

19. Pregnancy and Parenting Services for Young Parents

Pregnancy and parenting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for married or unmarried adolescent parents and their families designed to assist young parents in coping with the social, emotional, and economic problems related to pregnancy and in planning for the future.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securing necessary health care and living arrangements; obtaining legal services; and providing counseling, child care education, and training in and development of parenting skills.

20.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ovide early identification and/or timely intervention to support families and prevent or ameliorate the consequences of abuse, neglect, or family violence, or to assist in making arrangement for alternate placements or living arrangements where necessary. Such services may also be provided to prevent the removal of a child or adult from the home.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investigation; assessment and/or evaluation of the extent of the problem; counseling, including mental health counseling or therapy as needed; developmental and parenting skills training; respite care;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supervision, case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21. Protective Services—Adults

Protective services for adult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event or remedy abuse, neglect, or exploitation of adults who are unable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Examples of situations that may require protective services are injury due to maltreatment or family violence; lack of adequate food, clothing, or shelter; lack of essential medical treatment 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lack of necessary financial or other resources.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investigation; immediate interven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ergency shelter; developing case plans; initiation of legal action (if needed); counseling for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assessment/evaluation of family circumstances; making alternative or improved living arrangements; preparing for foster placement, if needed; and case management and referral to service providers.

22. Protective Services—Children

Protective services for children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event or remedy abuse, neglect, or exploitation of children who may be harmed through physical or mental injury,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and negligent treatment or maltreatment, including failure to be provided with adequate food, clothing, shelter, or medical care.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immediate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ergency shelter; developing case plans; initiation of legal action (if needed); counseling for the child and the family; assessment/evaluation of family circumstances; arranging alternative living arrangements; preparing for foster placement, if needed; and case management and referral to service providers.

23. Recreational Services

Recreational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designed to provide or assist individuals to take advantage of individual or group activities directed towards promoting physical, cultural, and/or social development.

24. Residential Treatment Services

Residential treatment services provide short-term residential care and comprehensive treatment and services for children or adults whose problems are so severe or are such that they cannot be added "who" cared for at home or in foster care and who need the specialized services provided by specialized facilities. Component services and activities may include diagnosis and psychological evaluation; alcohol and drug detoxification services; individual, family, and group therapy and counseling; remedial education and GED preparation; vocational or pre-vocational training; training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pervised recreational and social activities; case management; transportation; and referral to and utilization of other services.

25. Spec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or Persons With Visual or Auditory Impairments

Speci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or persons with visual or auditory impairments, are services or activities to maximize the potentia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p alleviate the effects of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disabilities; and to enable these persons to live i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ossible.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personal and family counseling; respite care; family support; recreation; transportation; aid to assist with independent functioning in the community; and training in mobility, communication skills, the use of special aids and appliances, and self-sufficiency skills. Residential and medical services may be included only as an integral but subordinate part of the services.

26. Special Services for Youth Involved in or at Risk of Involvement with Criminal Activity

Special services for youth involved in or at risk of involvement with criminal activity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for youth who are, or who may become, involved with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for their families.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are designed to enhance family functioning and/or modify the youth's behavior with the goal of developing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and may include counseling, intervention therapy, and residential and medical services if included as an integral but subordinate part of the service.

27. Substance Abuse Services

Substance abuse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that are primarily designed to deter, reduce, or eliminate substance abuse or chemical dependence. Except for initial detoxification services, medical and residential services may be included but only as an integral but subordinate part of the service. Component substance abuse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a comprehensive range of personal and family counseling methods, methadone treatment for opiate abusers, or detoxification treatment for alcohol abusers. Services may be provided in alternative living arrangements such as institutional settings and community-based halfway houses.

28. Transportation Services

Transportation services are those services or activities that provide or arrange for the travel, including travel costs, of individuals in order to access services, or obtain medical care or employment. Component services or activities may include special travel arrangements such as special modes of transportation and personnel to accompany or assist individuals or families to utilize transportation.

29. Other Services

Other Services are service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definitions of the preceding 28 services. The definition used by the State for each of these services should appear elsewhere in the annual report.

[부록 4] North Carolina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계약서

Social Service Block Grant Contract

PROGRAM: Social Services	
PERIOD: October 1, 2008 - S	eptember 30, 2009
The undersigned certifies, to the best of his or her knowledge and be	elief, that:
(1) No Federal appropriated funds have been paid or will be paid by any person for influencing or attempting to influence an officer or er of Congress, an officer or employee of Congress, or an employee of connection with the awarding of any Federal contract, continuation, modification of any Federal contract, grant, loan, or cooperative agr	mployee of any agency, a Member a Member of Congress in renewal, amendment, or
(2) If any funds other than Federal appropriated funds have been painfluencing or attempting to influence an officer or employee of any officer or employee of Congress, or an employee to a Member of Confederal contract, grant, loan, or cooperative agreement, the undersig Standard Form LLL, "Disclosure Form to Report Lobbying," in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the confederal contract of the confede	agency, a Member of Congress, an ongress in connection with this med shall complete and submit
(3) The undersigned shall require that the language of this certificat document for subawards at all tiers (including subcontracts, subgran and cooperative agreements) and that all subrecipients shall certify a	its, and contracts under grants, loans,
This certification is a material representation of fact upon which relitransaction was made or entered into. Submission of this certification entering into this transaction imposed by Section 1352, Title 31, U.S. file the required certification shall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of no than \$100,000 for each such failure.	on is a prerequisite for making or S. Code. Any person who fails to
Signature	Secretary Title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 Organization	Date
an Samuel Control of the Control	

[부록 5] North Carolina 포괄보조금 회계감사 자료수집 양식

Form SF-SAC: Data Collection Form for Reporting on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 Profit Organizations

	OMB No. 0348-0057
FORM SF-SAC (5-0004)	U.S. DEPT, OF COMM.—Scop, and Stat. Admin.—U.S. CENSUS BUREAU ACTING AS COLLECTING AGENT FOR OFFICE OF MANAGEMENT AND SUGGET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	rm for Reporting on 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tes in 2004, 2005, or 2006
Complete this form, as required by OMB Circular A-133, "Audits of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Federal Audit Clearinghouse 1201 E.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2
PART GENERAL INFORMATION (To be d	completed by auditee, except for Items 4 and 7)
Fiscal period ending date for this submission	2. Type of Circular A-133 audit
Month Day Year / Fiscal Period End Dates Must Be In 2004, 2005, or 2008	1 ☐ Single audit 2 ☐ Program-specific audit
3. Audit period covered 1 Annual 2 Biennial 3 Other - Month	4. FEDERAL Date received by GOVERNMENT USE ONLY
Auditee Identification Numbers Primary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b. Are multiple EINs covered in this report? 1 Yes 2 N o. If Part I, kem 5b - Yes, complete Part I, Item 5c on the continuation sheet on Page 4.
d.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DUNS) Number	e. Are multiple DUNS covered in this report? 1 Yes 2 N f. If Part I, Item 5e = "Yes," complete Part I, Item 5f on the continuation sheet on Page 4.
AUDITEE INFORMATION	7. AUDITOR INFORMATION (To be completed by auditor)
a . Auditee name	a . Auditor name
b. Auditee address (Number and street)	b. Auditor address (Number and street)
City	Сну
State ZIP + 4 Code	State ZIP + 4 Code
o . Auditee contact Name	e . Auditor contact Name
Title	Title
d. Auditee contact telephone () —	d. Auditor contact telephone () —
e. Auditee contact FAX	e. Auditor contact FAX
f. Auditee contact E-mail	f. Auditor contact E-mail
g. AUDITEE CERTIFICATION STATEMENT - This is to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browledge and befet the auditee has (1) engaged an auditor to perform an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OMB Circular A-133 for the period described in Part I, Items 1 and 3; (2) the auditer has completed such audit and presented a signed audit report which states that the audit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rcular; and, (3) the information included in Parts I, II, and III of this data collection form is accurate and complete. I declare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Signature of certifying official Date Month Day Year	9- AUDITOR STATEMENT — The data elements and information included in this form are limited to those prescribed by OMB Circular A-139. The information included in Parts II and III of the form, except for Part IIII, items 7, 8, and 9 a-64, was transferred from the auditor's report(s) for the period described in Part I, items 1 and 3, and is not a substitute for such reports. The auditor has not performed any auditing procedures since the date of the auditor's report(s). A copy of the reporting package required by OMB Circular A-139, which includes the complete auditor's report(s), is available in its entirety from the audited at the address provided in Part I of this form. As required by OMB Circular A-139, the information in Parts III and III of this form was entered in this form by the auditor has not performed any additional auditing procedures in connec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is form.
Printed Title of certifying official	Signature of auditor Date Month Day Year

		Primary EIN:
PART II FINANCIA	L STATEMENTS (To be comple	eted by auditor)
	qualified opinion OR	4 ☐ Disclaimer of opinion
2. Is a "going concern" explanato	ry paragraph included in the audit repor	1? 1
3. Is a reportable condition disclo	sed?	1 ☐ Yes 2 ☐ No - SKIP to liter
1. Is any reportable condition rep	orted as a material weakness?	1□Yes 2□No
i. Is a material noncompliance d		1 ☐ Yes 2 ☐ No
PART III FEDERAL	PROGRAMS (To be completed	by auditor)
statements include department expending \$500,000 or more it	de a statement that the auditee's financi ts, agencies, or other organizational unit n Federal awards that have separate A- in this audit? (AICPA <u>Audit Guide</u> , Chap	is 1333
2. What is the dollar threshold to (OMB Circular A-133 §52	distinguish Type A and Type B program 0(b))	s? s
). Did the auditee quality as a lo	w-risk auditee? (§590)	1□Yes z□No
. Is a reportable condition disclo	sed for any major program? (§510	((a)(1)) 1 Yes 2 No -SKIP to Item
Vit		100
 Is any reportable condition rep 	orted as a material weakness? (§	510(a)(1)) 1 ☐ Yes z ☐ No
3. Are any known questioned co	its reported? (§510(a)(3) or (4))	1 ☐ Yes 』 ☐ No
 Were Prior Audit Findings rela Prior Audit Findings? (§31 	ted to direct funding shown in the Sum 5(b))	mary Schedule of
 Indicate which Federal agen- in the Summary Schedule of F 	cy(ies) have current year audit findings r nor Audit Findings related to direct fur	elated to direct funding or prior audit findings shown iding. (Mark (X) all that apply or None)
ss U.S. Agency for Inter- national Development	s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43 National Aeronautics and se Social Security Space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10 Agriculture	39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ss National Archives and 19 U.S. Department
23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93 Health and Human Services 97 Homeland Security	cs National Endowment for 20 Transportation
11 Commerce	14 Housing and Urban	the Arts 21 Treasury
24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Development co Institute of Museum and	the Humanities Information Agen
12 Defense	Library Services	47 ☐ National Science 64 ☐ Veterans Affairs
84 Education	ns Interior	oz Office of National Drug
at C Energy	16 Justice	_ Control Policy Other - Spearly:
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7 ☐ Labor cs ☐ Legal Services Corporation	s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Each agency identified is requ	ired to receive a copy of the reporting pa	ickage.
In addition, one copy each of t	he reporting package is required for:	
• the Federal Audit Clea	ringhouse archives	⊠
	ve, the Federal cognizant agency	
Count total number of be	oxes marked above and submit this num	ber of reporting packages
ge 2		FORM SF-SAC (

[부록 5] North Carolina 포괄보조금 회계감사 자료수집 양식

PART III	2.00		AMS - Continued					- 3				
		Research	IG FISCAL YEAR			Major pr	· common	10. AUDIT FINE	DINGS			
CFDA Number aderal gency Extension 2 (a) (b)		and develop- ment (c)	Name of Federal program (5)	Ar ext	Amount expended		Major program	If yes, type of audit report 3 (h)	Type (s) of compliance requirement(s) ⁴ (a)	Audit findin reference numbe r(s)		
.		ı □ Yes ₂□ No		\$.00	ı □ Yes ₂ □ No	1 Yes					
.		ı □ Yes ₂□ No		\$.00	1 Yes ₂ No	1 Yes					
.		ı □ Yes ₂□ No		\$.00	1 Yes 2 No	1 Yes					
1 .		ı ☐ Yes ₂ ☐ No		\$.00	1 Yes 2 No	1 Yes 2 No					
11.		1 ☐ Yes 2 ☐ No		3	.00	1□ Yes 2□ No	1 Yes					
.		1 ☐ Yes 2 ☐ No		\$.00	1 Yes 2 No	1 Yes					
1 .		1 ☐ Yes 2 ☐ No		\$.00	1 Yes 2 No	1 Yes					
		1 ☐ Yes 2 ☐ No		3	.00	1 Yes 2 No	1 Yes					
1 1.		1 ☐ Yes 2 ☐ No		3	.00	1 Yes 2 No	1 Yes					
1		1 ☐ Yes 2 ☐ No		\$.00	1 Yes 2 No	1 Yes					
TOTAL FEDERAL AWARDS EXPENDED					IF ADDITIONAL LINES ARE NEEDED, PLEASE PHOTOCOPY THIS PAGE, AT TACH ADDITIONAL PAGES TO THE FORM, AND SEE INSTRUCTIONS							
2 Or other 3 If major type of a 4 Enter the costs, fra A. A. B. A.	Identifying numberogram is ma udif report in the letter(s) of all ud, and other ctivities allow	mber when the Cata riced "Yes," enter or the adjacent box. If it itype(s) of complian itlems reported undo wed or unallowed the cost principles	teral Agency two-digit profitoes. go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CFDA) not by one letter (U = Unquatified opinion, 0 = map / program is marked "No," leave the type of the profit o	atted opinion, A faudit report box e., noncompliance am.	- Adverse opti blank	tion, 10 - Disc notitions (Inclu- ent and susp nont	iding material ension	L. Repo M. Subre	es), questioned	ion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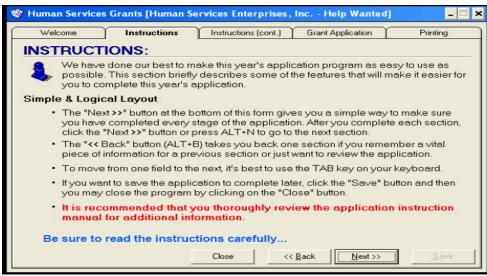
Page 3

PA	RTI	Item 5	Continuati	on Sheet										
e. List the multiple Employer I dentification Numbers (EINs) covered in this report.						f. l	f. List the multiple DUNS covered in the report.							
1	- 0		21		41	_	1	_	-	21	_		Ш	
2	- 0		22	_	42	_	2		_	22	_	-	Ш	
3	- 0.1		23	_	43		3			23			П	
4	- 0		24	-	44	-	4	-	-	24	-	-	П	
5	_		25		45		5			25	_		П	
6	- 2		26	_	46		6	-	+	26		-	П	
7			27	-	47		7			27	-	-	П	
8	-		28	-	48		8	-	-	28	i see	-	П	
9			29	_	49	_	9	_	_	29			П	
10	_		30	-	50	_	10	-	-	30	_	_	П	
11	_		31	_	51		11			31	-		П	
12	_		32		52	_	12	-	+	32	_	-	П	
13			33	_	53	_	13	_	_	33			П	
14	_		34	-	54	_	14	-	+	34	-		П	
15	_		35	_	55	-	15	_		35	-		П	
16	_		36	_	56	_	16	-	-	36		-	П	
7	_		37	_	57	_	17		_	37		-	П	
18	_		38	-	58	_	18	-	-	38	-	-	П	
19			39	_	59		19			39			П	
20			40	_	60		20	2		40	200	100	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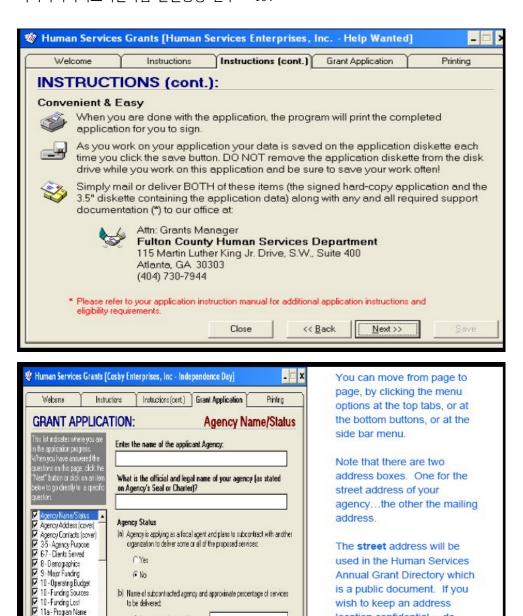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Fulton County Human Service Grant Application Diskett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Next>>

Save

Subcontractor Agency Name:

K Back

% of Service Delivery:

Close

11b - Delivery Sites

□ 13 - Desired Results
 □ 14 - Population Result

been started or completed.

12 - Client Demo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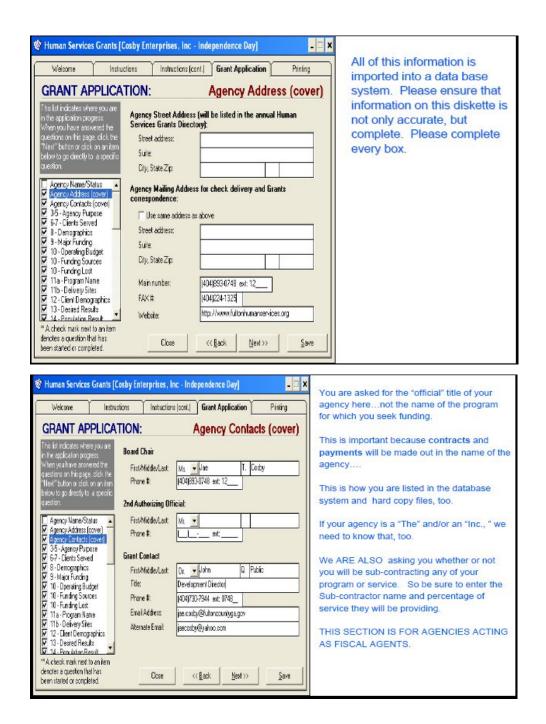
A check mark next to an item.

location confidential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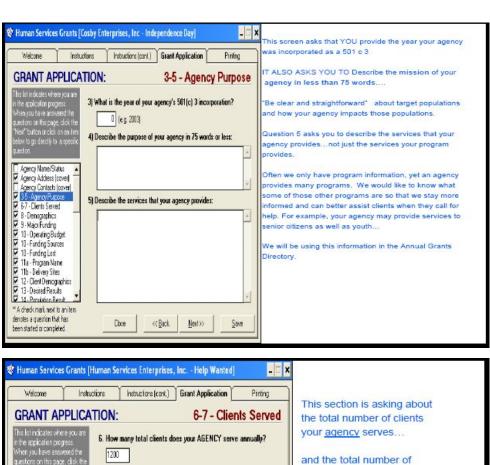
The mailing address is f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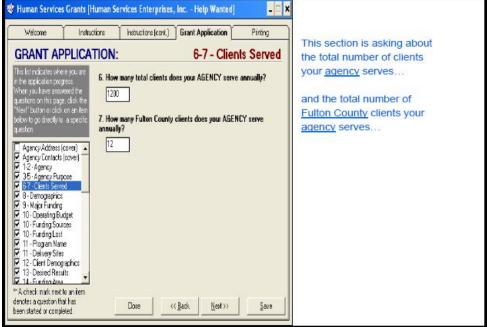
correspondence, payments,

not list it in thi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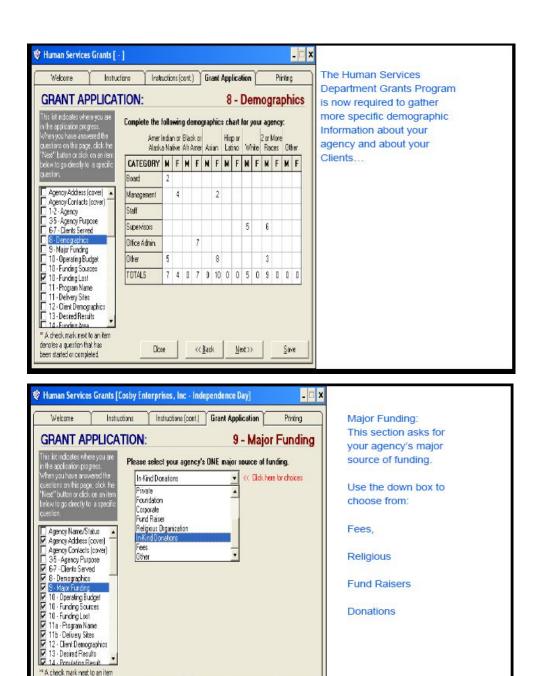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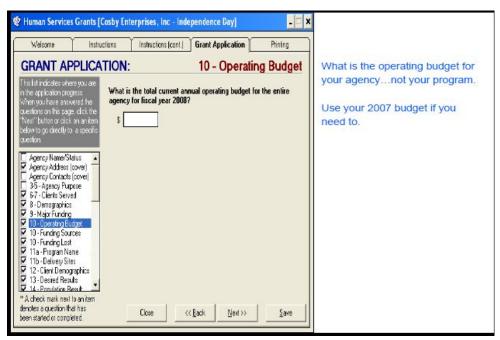
S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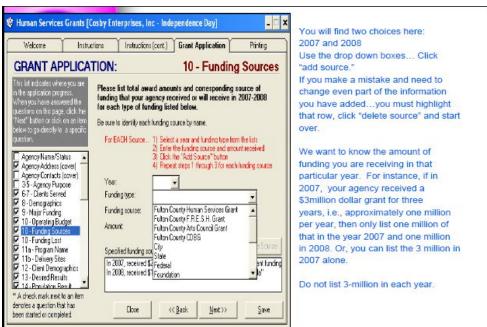
** A check mark next to an item denotes a question that has

been started or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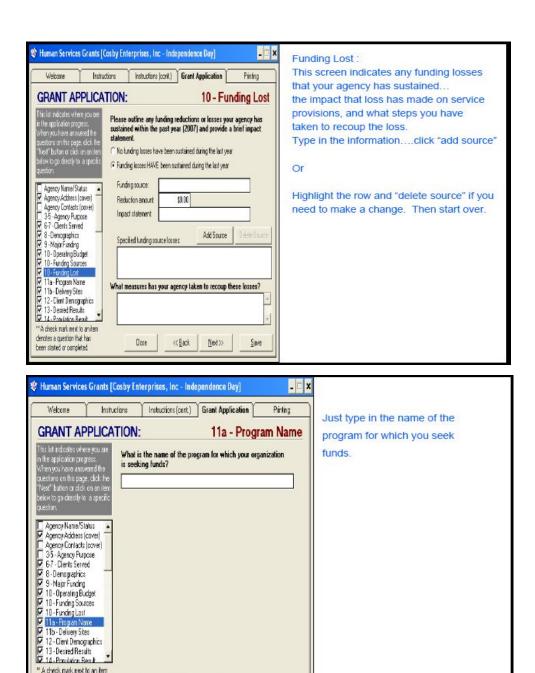
Close

<< <u>B</u>ack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Next >>

Save

" A check mark next to an item denotes a question that has

been started or completed

Close

<< Back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Black or African-American Asian Hispanic or Latino White Two or More Races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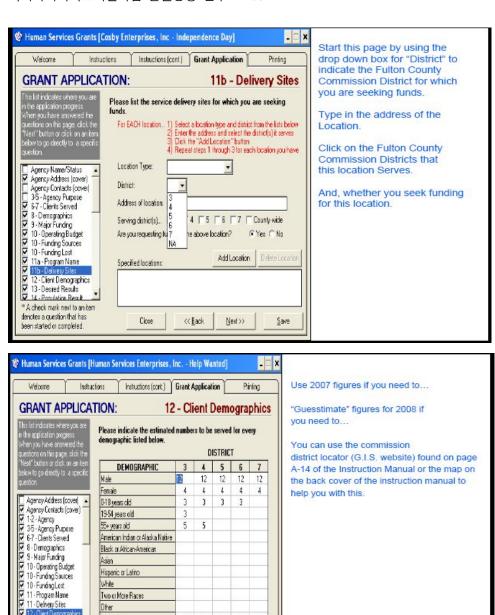
((Back

Oher TOTALS

11 - Delivery Sites

13 · Desired Results "A check mark next to an item denotes a question that has

been started or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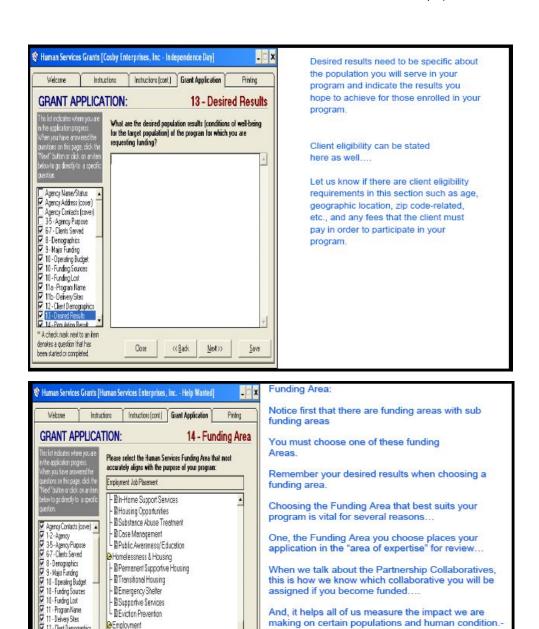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Save

24 19 19 16

Next >>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Save

Net>>

≪<u>B</u>ack

12 - Client Demographics 13 - Desired Results

15 . houte 3 deti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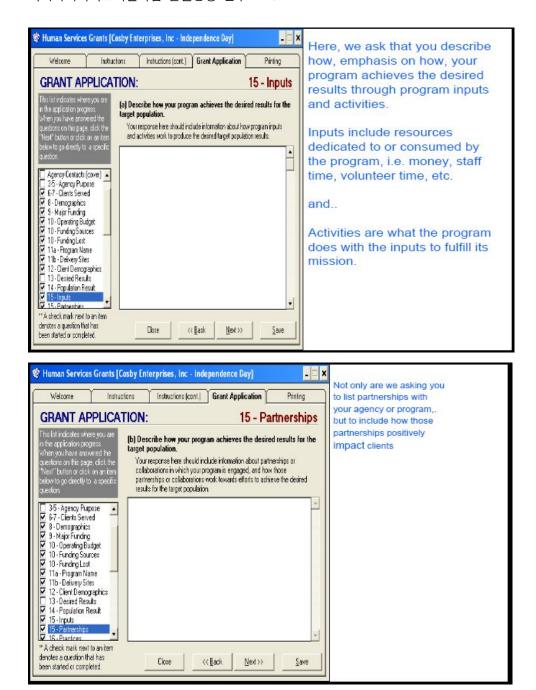
'A check mark neut to an tem

been started or comple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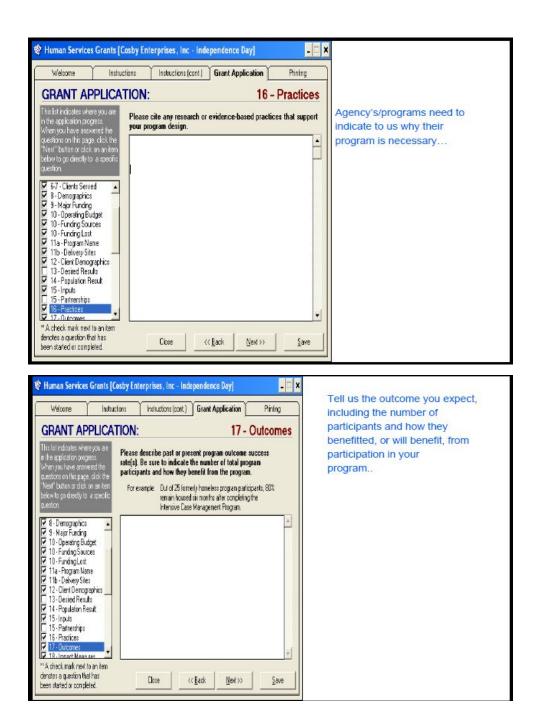
- 🖺 Job Readiness Training - 🖺 Job Placement

Phylocetinnal 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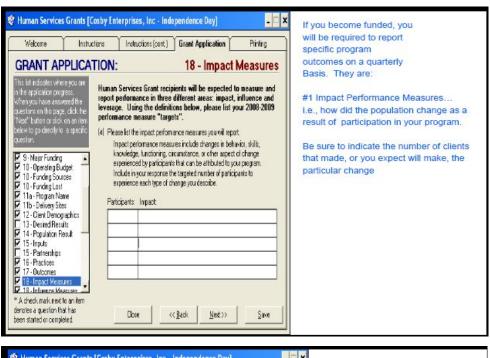
Cl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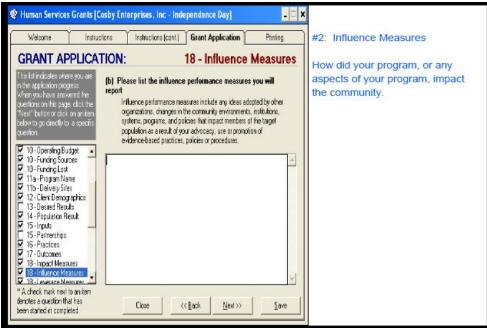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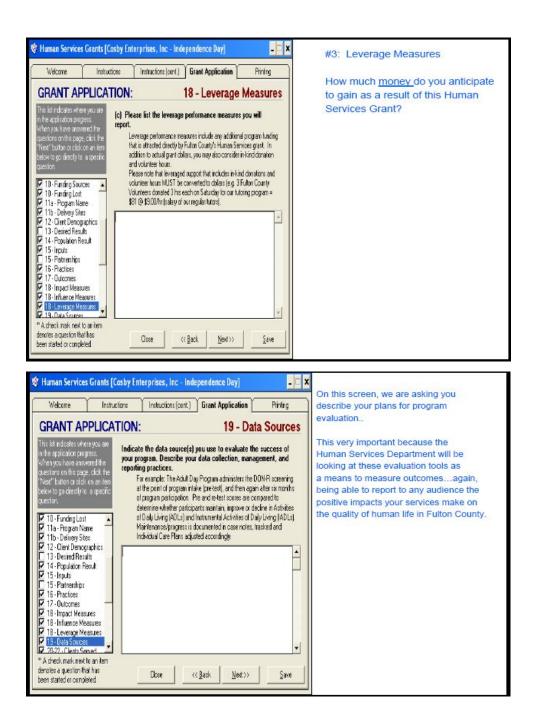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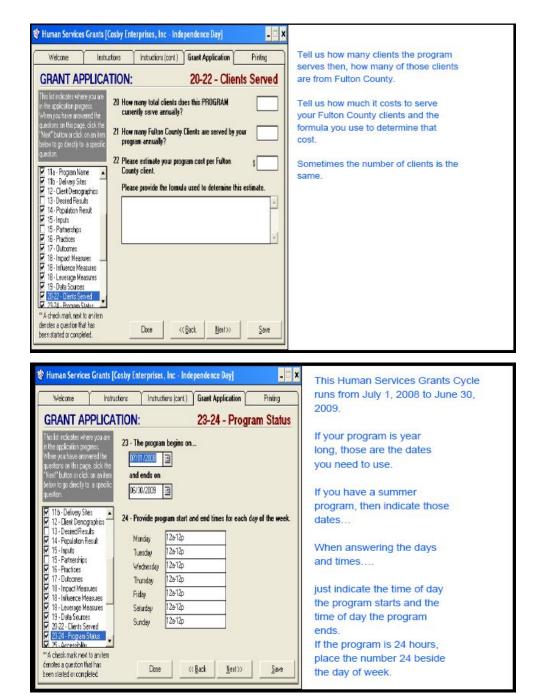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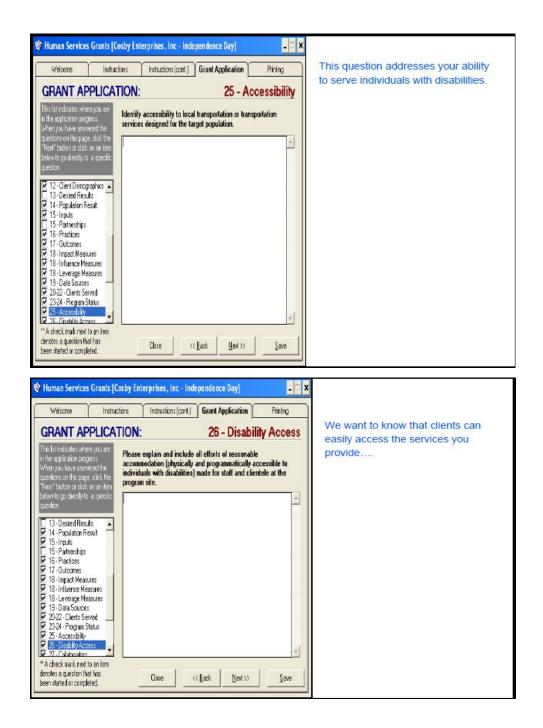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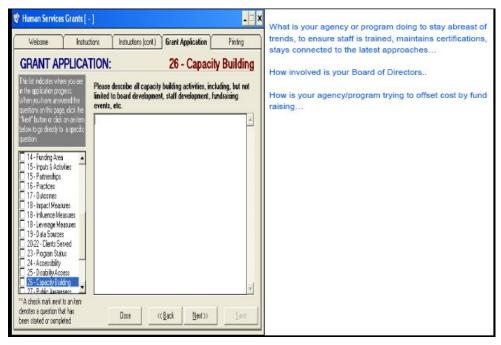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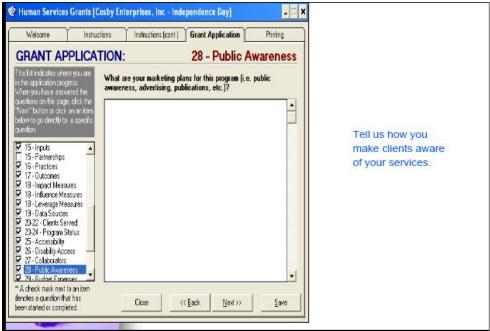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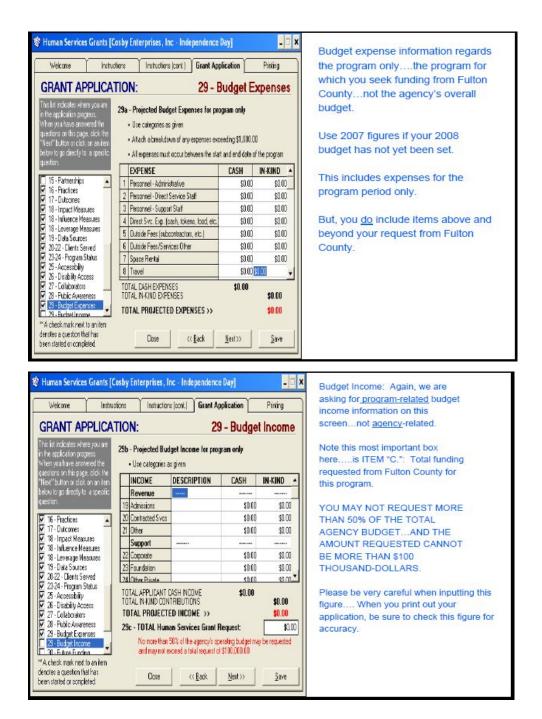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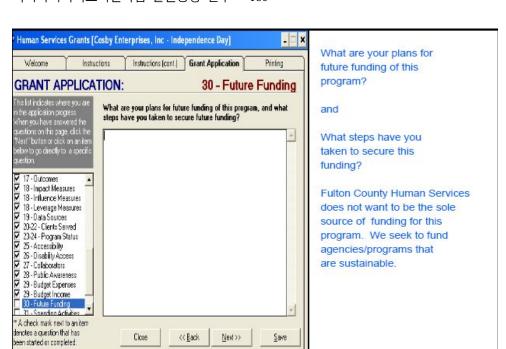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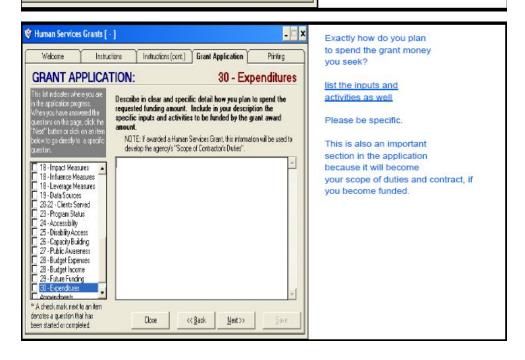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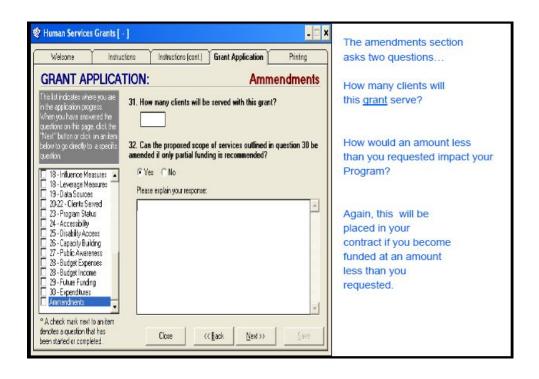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6]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보조금 신청디스켓



[부록 7]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분기별 성과보고 양식

Human Service Department Quarterly Performance Report Form

page 1~page 7

[부록 8] Fulton County, GA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서 평가도구

Fulton County Grant Proposal Scoring Tool

page 1~page 9